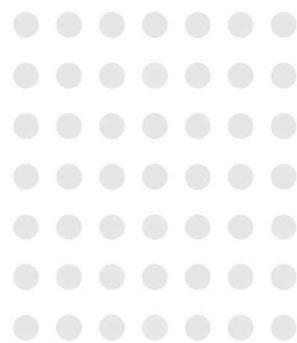

2023년도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가이드라인

2023. 2.

KhIDI 한국보건산업진흥원

CONTENTS



「2023년도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가이드라인」

목차

1. 개관	01
2. 기획	10
3. 선정 및 협약	62
4. 연구시설·장비	104
5. 연구개발비 집행·관리	120
6. 과제 평가·관리	127
7. 연구개발성과	152
8. 연구윤리 및 제재처분	188
9. 연구개발사업단	236

**「2023년도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가이드라인」**

1. 개 관

1.1

제정 배경

- 「舊.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35조에 따라 전문기관(한국보산업진흥원)에서 다수 세부지침* 제정·시행
 - * (예시) ① 연구개발사업 평가지침, ② 연구개발비 관리지침, ③ 시설·장비 관리지침, ④ 기술료 관리지침, ⑤ 연구윤리규정, ⑥ 제재조치평가단 운영규정, ⑦ 사업단 운영관리지침, ⑧ 연구사업관리조직 운영규정, ⑨ 사업관리전문가제도 운영규정 등
- 분절된 세부지침에 대한 사업담당자나 연구자의 접근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전문기관 내 여러 부서에서 분산·관리되면서 각 세부지침 간 체계적 정합성이 맞지 않다는 지적 발생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21.1월)으로 이미 폐지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제정된 「舊.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및 세부지침 전면 개정 필요
 - 이에 새롭게 마련된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22.1월 시행)에 따라 기존 세부지침을 대체하는 가이드라인 제정을 추진하게 된 것임

<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22.1.1 시행)」의 관련 규정 >

제24조(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가이드라인) ① 전문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1항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을 마련할 수 있다. ② 가이드라인은 법·영·규칙 그 밖에 관계 법령 및 이 고시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마련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부칙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②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35조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제정·시행하는 세부지침은 폐지한다. 다만, 제24조에 따라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때까지 종전의 세부지침을 적용할 수 있다.

부칙 제9조(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가이드라인에 관한 적용례) 전문기관의 장은 이 고시를 시행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24조에 따라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1.2

근거 및 목적

가. 근거 법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

1. 개관

-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22.1.1 시행)

나. 목 적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이하 “진흥법”)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수행하는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운영·관리 필요
- 보건의료 R&D 사업 수행 시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리된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 마련
- 전문기관 관리자 및 연구자 등의 편의성 제고 및 공정성·전문성 강화

1.3 적용대상 및 활용

가. 적용대상

-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이하 “운영·관리규정”) 제3조에 적용되는 보건복지부 소관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22.1.1 시행)」의 관련 규정 >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의 보건복지부 소관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된다.

1. 법 제5조에 따른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2. 「암관리법」제9조에 따른 암연구사업(이하 "암연구사업"이라 한다)
3. 「한의약 육성법」제10조에 따른 한의약 연구·개발사업
4. 「건강검진기본법」 제20조에 따른 건강검진 조사·연구를 위한 사업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6호에 따른 감염병 조사·연구를 위한 사업
6. 「치매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치매연구사업
7.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 제3조의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계획에 따른 사업
8.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위한 사업
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의 국가계획 또는 지역계획에 따른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연구·개발,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국가트라우마센터의 트라우마 연구,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국립정신건강연구기관의 뇌(腦) 신경 과학, 정신질환 치료 및 재활을 위한 중개(仲介)·임상연구 등을 위한 사업
10.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
11. 「희귀질환관리법」 제9조에 따른 희귀질환연구사업
12. 「뇌연구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뇌연구사업
13.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25조에 따른 의료기기산업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14.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제약기업의 연구개발에 관한 투자확대를 위한 사업
15.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5호에 따른 의료연구개발을 위한 사업
1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이 고시에 따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

1. 개관

나. 본 가이드라인 활용

- 보건복지부 소관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사항은 본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절차를 참고
- 단, 사업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본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기준과 절차를 탄력적으로 적용 가능(사업별 시행계획 등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사항 등)

1.4 관련 법령 및 용어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연구개발과제"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10조에 따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선정하는 과제를 말한다.
3. "연구개발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단체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 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 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사.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 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4. "전문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제9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31조 제3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2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기관으로서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
5. "연구개발성과"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에서 또는 그 결과로 인하여 창출 또는 파생되는 제품, 시설·장비, 지식재산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무형의 성과를 말한다.
6. "연구개발정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 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연구개발과제 등 연구개발 수행에 관한 정보
 - 나. 연구개발기관·연구자 등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주체에 관한 정보
 - 다. 연구개발성과의 명칭·종류·소유기관 등 연구개발성과에 관한 정보
 - 라.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7. "연구지원"이란 연구개발기관이 소속 연구자가 연구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과제의 신청·수행 및 성과 활용 등에 필요한 인력, 시설·장비, 전산시스템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8. "국가연구개발활동"이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연구지원 및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 가. 제9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에 대한 수요를 제출하는 행위
 - 나. 제9조제3항에 따른 사전 기획에 참여하는 행위
 - 다. 제9조제4항에 따른 공모에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신청하는 행위

1. 개관

- 라. 제14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에 참여하는 행위
- 마. 제14조제4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행위
- 바. 제33조제1항에 따른 제재처분평가단에 참여하는 행위
- 사. 제33조제4항에 따른 위원회에 참여하는 행위
- 9. "기술료"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제17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

제2조(연구개발기관) ①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를 말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 ② 연구개발기관의 종류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2.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과의 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3. 위탁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위탁을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제3조(연구개발성과) 법 제2조제5호에서 "제품, 시설·장비, 지식재산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무형의 성과"란 다음 각 호의 성과를 말한다.

1. 제품
2. 시설·장비
3. 논문
4. 특허 등 지식재산권
5. 법 제1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차보고서, 단계보고서, 최종보고서 또는 성과활용보고서의 원문
6. 연구개발과제에서 창출 또는 파생된 기술의 요약정보
7. 생명자원
8. 소프트웨어
9. 화합물(化合物)
10. 신물질
11. 표준
12.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서 규정한 성과에 준하는 유형·무형의 성과

제4조(연구개발정보) 법 제2조제6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국내외 과학적·기술적·사회적·경제적 동향에 관한 정보
2. 국가연구개발활동의 수행에 관한 정보
3.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했던 자에 관한 정보
4.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에 관한 정보
5.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통계에 관한 정보
6.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1. 개관

가. 국가연구개발사업

-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의미함
- 실무적으로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을 재원으로 하며, 예산 편성 시 연구개발사업(R&D사업)으로 분류되는 사업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해당

[(참고)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p.29, 기획재정부]

6. 연구개발(R&D)사업

1. 적용대상

- 연구개발 활동 수행, 연구개발을 위한 장비·시설구축,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 지원 등에 소요되는 예산
- '23년 신규사업의 연구개발사업 포함여부는 「OECD 권고기준」 및 「연구개발사업 분류 및 통계처리 기준」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일차적으로 판단하되, 예산 배분·조정 및 편성과정에서 기획재정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조정

나. 연구개발과제

- 연구개발과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0조에 따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선정하는 과제”를 의미함
- 연구개발과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로,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연구개발과제와 관련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연구개발과제의 선정·협약·평가(제9조~제15조), 성과관리 및 기술료(제16조~제18조), 보안(제21조), 연구윤리 및 제재처분(제31조~제32조),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전념(제35조) 등의 조항 등에 근거함

다. 연구개발기관

- 연구개발기관은 아래의 기관·단체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를 의미함
 -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 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1. 개관

- 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사.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 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자.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속인 연구기관을 의미하며, 출연연구기관 등 법인은 해당되지 않음
- 해외에 소재한 기관·단체는 혁신법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에 해당되지 않으나, 국제공동연구는 운영·관리규정 제26조(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에 관한 특례)에 따라 수행 가능함
-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은 아래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
- 가. 주관연구개발기관 :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 나. 공동연구개발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과의 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 다. 위탁연구개발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위탁을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 협약체결은 연구개발기관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므로, 연구개발기관은 하나의 과제에서 주관/공동/위탁 중 하나의 유형으로만 수행할 수 있음
- 다만, 여러 개의 연구개발과제가 연관되어 추진되는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들은 해당 과제들을 총괄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이하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음.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을 지정하고,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음(운영·관리규정 제8조)
- 연구개발기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주체로서 연구개발과제의 선정·협약의 대상이며(혁신법 제9조~제11조), 연구개발비 사용·관리와 연구개발성과 소유의 주체이고(동법 제13조, 제16조), 보안대책 수립과 연구지원체계 확립(대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한정) 의무가 있음(동법 제21조, 제24조)

라. 전문기관

- 전문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혁신법 제9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31조제3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2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기관으로서 동법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을 의미하며,
- 전문기관의 지정 요건, 평가, 실태조사·분석 등은 동법 제22조와 제23조에서 규정하고 있음

마. 연구개발성과

- 연구개발성과는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에서 또는 그 결과로 인하여 창출 또는 파생

1. 개관

되는 유형·무형의 성과”를 의미하며, 그 유형은 아래와 같음

1. 제품
 2. 시설·장비
 3. 논문
 4. 특허 등 지식재산권
 5.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차보고서, 단계보고서, 최종보고서 또는 성과활용보고서의 원문
 6. 연구개발과제에서 창출 또는 파생된 기술의 요약정보
 7. 생명자원
 8. 소프트웨어
 9. 화합물(化合物)
 10. 신품종
 11. 표준
 12.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서 규정한 성과에 준하는 유형·무형의 성과
- 연구개발성과는 연구개발과제의 결과로서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혁신법 제16조제1항),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은 연구개발성과 활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동법 제17조제1항), 실시를 허락하는 경우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함(동법 제18조제1항)

바. 연구개발정보

- 연구개발정보는 아래의 정보를 의미함
- 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연구개발과제 등 연구개발 수행에 관한 정보
 - 나. 연구개발기관·연구자 등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주체에 관한 정보
 - 다. 연구개발성과의 명칭·종류·소유기관 등 연구개발성과에 관한 정보
 - 라. 국내외 과학적·기술적·사회적·경제적 동향에 관한 정보
 - 마. 국가연구개발활동의 수행에 관한 정보
 - 바.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했던 자에 관한 정보
 - 사. 혁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에 관한 정보
 - 아.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통계에 관한 정보
 - 자.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 연구개발정보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연구개발기관, 연구자, 연구지원인력 및 연구지원조직이 처리하여야 하는 대상(혁신법 제19조제1항)이며, 연구개발정보의 처리는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목적(동법 제20조제1항)

1. 개관

- 연구개발정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과기부 고시)에서 규정

사. 연구지원

- 연구지원은 “연구개발기관이 소속 연구자가 연구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과제의 신청·수행 및 성과 활용 등에 필요한 인력, 시설·장비, 전산시스템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의미함
- 연구지원은 혁신법 제24조(연구지원체계의 확립)과 제25조(연구지원체계평가)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대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기관은 연구지원체계를 갖추어야 하며(동법 제24조제2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지원기준을 정하고 매년 연구지원체계평가를 실시하여 간접비 계상기준에 반영함(동법 제25조제2,3항)
 - 또한 연구지원은 참여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동법 제32조), 참여제한을 받은 연구자 등도 연구지원 활동을 할 수 있음

아. 국가연구개발활동

- 국가연구개발활동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연구지원 및 아래의 행위를 의미함
 - 가. 혁신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에 대한 수요를 제출하는 행위
 - 나. 혁신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사전 기획에 참여하는 행위
 - 다. 혁신법 제9조제4항에 따른 공모에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신청하는 행위
 - 라. 혁신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에 참여하는 행위
 - 마. 혁신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행위
 - 바. 혁신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제재처분평가단에 참여하는 행위
 - 사. 혁신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위원회에 참여하는 행위
- 국가연구개발활동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연구지원 뿐 아니라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직·간접적인 활동들을 포함하며, 참여제한 처분을 받는 경우 연구지원을 제외한 모든 국가연구개발활동에 참여할 수 없음

자. 기술료 및 정부납부기술료

- 기술료는 “연구개발성과를 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혁신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을 의미함(혁신법 제2조제9호 및 제18조 참조)
 - 기술료는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으로, 혁신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정부에 납부하는 기술료 또는 수익의

1. 개관

일부(통상 정부납부기술료)와는 상이한 개념

- 정부납부기술료는 기술료 등 납부의무기관(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비를 지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술료의 일부 또는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납부하는 것(혁신법 시행령 제38조 참조)

2. 기 획

2.1 개 요

1. 목적 및 관련근거

가. 주요목적

- 정부는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과학기술을 혁신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경제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인류사회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매년 연구개발 분야에 대규모 투자 중임
-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을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며, 5년 단위로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민의 건강증진, 지속가능한 미래 의료시스템 구축과 미래형 신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음
- 인구의 고령화, 신·변종 감염병 출현 등 환경 변화 대응, 새로운 진단·치료법 개발과 연구개발을 통한 의료시스템 고도화 등 미래 신산업 육성과 건강한 삶을 위해 보건의료 기술의 육성과 개발은 중요한 분야임. 또한 보건의료분야의 단기 현안 해결과 중장기 난제 극복을 위해 지속적인 혁신이 필요
- 본 가이드라인은 보건의료분야 유망 기술의 발굴과 지속적 혁신을 위해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 사업의 기획 아이템 발굴·선정, 사업기획, 사업계획 수립(신규사업의 경우), 과제제안요청서(RFP) 개발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함

나. 법적근거

1)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6조, 제7조)

제6조(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① 보건의료기술 진흥을 위한 시책의 수립 등 보건의료기술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건의료기술 진흥을 위한 주요 정책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중장기 보건의료기술 개발전략의 수립
 3.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과제의 우선순위 결정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의료기술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

제7조(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의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나 보건의료 분야의 기관·단체를 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2)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조)

2. 기획

제10조(심의) 법 제6조 제2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의료기술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과제의 선정·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 신규과제의 발굴 및 기획에 관한 사항
2의2.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통합 및 조정 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건의료기술진흥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6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에는 전문적인 연구·심의 및 연구개발과제의 발굴·기획·평가·관리 등을 위하여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둔다.

3)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

제2조(연구과제) ①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제2항에 따른 연구과제는 공모과제와 지정과제로 구분하여 선정한다. ② 공모과제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정하며, 지정과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발굴·기획하되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해당 연구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거나 공개모집하여 발굴·기획된 지정과제를 수행하게 한다.

4)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10조)

제10조(전문위원회에 대한 위임사항) 위원회가 분야별 전문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분야별 연구개발 사업 및 과제의 발굴·기획
2. 분야별 기술수요조사를 통하여 도출된 과제에 대한 우선순위 등 검토
3. 분야별 기술적·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사전조사 또는 기획연구에 관한 사항
4. 분야별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 과제의 선정·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중형 이상의 과제(연간 지원액이 2억원 이상인 과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선정평가점수가 70점 이상 75점 미만이면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재공모 실시를 결정할 수 있고, 계속과제의 중간평가점수가 60점 이상 65점 미만이면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재평가 실시를 결정할 수 있다. (하략)

5)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7조 ~ 제9조)

제7조(연구개발에 대한 수요조사)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수요조사에는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 및 내용
2. 동향 및 파급효과
3. 수행기간
4. 정부지원 규모 및 형태 보

제8조(연구개발과제 발굴을 위한 사전 기획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발굴을 위한 사전 기획을 하려면 미리 다음 각 호의 세부 내용을 그 사전 기획에 포함해야 한다.

1. 사전 기획 관련 연구 분야에 대한 지원 필요성
2. 논문 또는 특허 등 연구개발 동향
3. 기대효과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발굴을 위한 사전 기획을 하는 경우에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제 45제제1항제1호나 같은 항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야한다.

제9조(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의 공모 절차)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을 공모를 통하여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30일 이상 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 공고해야 한다.(후략)

2. 기획

2. 추진체계

주체	회의체	역할 · 구성	비고
보건복지부 (장관)	보건의료기술 정책심의위원회 (이하, 보정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정심 및 전문위 심의사항 최종 결정 ○ 보건의료분야 주요 계획, 투자방향 등 심의 ○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보정심 운영세칙
	분야별 전문위원회* (이하, 전문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정심 위임사항 등 분야별 기획연구 주제 발굴, 기획, 평가, 관리 등 ○ 분야별 사업·과제의 발굴·기획, 기술수요조사 도출 과제 우선순위 검토 등 ○ 7개 분야, 분야별 해당 전문가 10명 내외 구성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암관리법, 보건의료기술정책심 의위원회 운영세칙
보건복지부 (소관과)	기획실무협의체 (이하, 협의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 총괄조정 - 기획주제 발굴, 사업기획, 사업계획 추진, RFP 확정 등 기획 전반 조정 ○ 담당과장, 담당공무원 등 ○ 수요조사 사전선별, 기획방식 및 담당부서 결정 등 실무협의 ○ 보건복지부 및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기획관계자, PM/PD/연구위원 등으로 구성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연구사업관리전문가 (PM, PD, 연구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평가 등 업무 지원 ○ 기획주제 발굴 및 사업기획 등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지원 ※ 연구사업관리전문가 제도 운영규정
	기획위원회 (기획과제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별 사업기획 ○ 기획과제별 구성된 외부전문가로 구성 	

* 보정심 분야별 전문위원회

-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9조(전문위원회의 구성)에 따라 보정심에서 위임한 사항 등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심의 및 연구개발과제의 발굴·기획·평가·관리 등을 위하여 복지부는 7개 분야별 전문위원회(제약·의료기기, 디지털의료, 보건위기대응, 보건의료인프라, 질환연구, 암, 융합기획)를 구성·운영

2. 기획

3. 용어정의

용어	설명	비고
1 보건의료기술정책 심의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의료기술진흥을 위한 중장기 계획, 과제 우선순위 설정, 연구개발사업 지원자금의 배분 등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를 말함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6조
2		
3 기획실무협의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 관련사항을 효율적으로 검토·협의·조정하기 위해 구성된 협의체 ○ 보건복지부(보건의료기술개발과 총괄)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연구개발혁신본부 단장, PD 등)으로 구성 	
4 기획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주제별 사업기획 추진을 위해 기획과제 내에서 주제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5 연구관리전문기관 (전문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관리전문기관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말하며, 진흥원은 기획, 관리 및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을 운영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7조, 동법 시행규칙 제5조
6 연구사업관리 전문가 (PM, PD, 연구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기획·관리하기 위해 임용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연구개발혁신본부 내 기획 관련 전문가 	연구사업관리전문가 운영 규정
7 기획(기술) 수요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사업공고 및 기획을 위해 수행되는 기술수요조사를 포함하여, 기획연구가 필요한 수요를 조사하는 것을 의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8 사업기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개발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기 위해 예산 편성 전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등에 대한 사전조사와 사업의 세부내용을 구체적으로 기획하는 것을 말함 	
9 과제제안요청서 (RF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개발사업 수행기관을 공개적으로 모집하기 위하여 추진목적, 사업내용, 기간, 자격, 일정 등 내용이 포함되어 작성된 문서를 말함 	
10 과제제안요청서 (RFP) 사전공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제안요청서(RFP)가 심의·확정되기 전에 연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공시하는 것을 말함 	

2. 기획

4. 보건의료 R&D 기획 단계 구분

□ 단계별 주요 추진사항 및 일정

단계	단계별 추진 내용	결과물	일정	비고	
① 기획(기술) 수요조사선정	①-1 기획(기술) 수요조사	○ 보건의료분야 미래유망 분야에 대해 수시·정기 수요조사 실시	보건의료분야 기획(기술) 수요	연중 상시 /	보정심 전문위원회
	①-2 기획(기술)수요 우선순위 확정	○ 조사된 수요에 대한 우선순위 검토 ○ 기획 규모, 방식 등 신규 추진계획 수립	기획연구 추진 후보 주제	11월	기획실무 협의체
② 사업기획	②-1 기획연구 수행	○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목표 설정, 세부 추진내용 설계, 기술기획연구 추진	사업기획 보고서 (과기·기재부 제출)	5월 /7월	보건복지부 소관과/기획위원회/기획용역기관
③ 차년도 예산 확보	③-1 과기부 예산 대응	○ 과기부 예산요구 대응	차년도 예산 (과기부(안))	(Y-1) 6월	보건복지부 소관과
	③-2 기재부 예산 대응	○ 기재부 예산요구 대응	차년도 예산 (정부(안))	(Y-1) 8월	보건복지부 소관과
	③-3 국회 예산 대응	○ 국회 예산요구 대응	차년도 예산 (정부(안))	(Y-1) 12월	보건복지부 소관과
(필요시) ② 사업기획	②-2 사업계획 수립 (필요시)	○ 부처 내 사업 추진 계획을 구체화하고, 정책 부합성 등을 최종 검토하여, 기획된 사업 추진의 완결성 제고	사업계획(안)	10월	보건복지부 소관과
④ 과제제안서 개발·검증·확정	④-1 RFP 개발·검토	○ 연구 제안을 위한 요구사항 정의 및 표준형식에 따른 RFP 초안 마련 ○ 부처 소관과의 최종검토	RFP(안)	(Y-1) 10-11월	기획위원회
	④-2 RFP 공사·검증	○ 연구자 대상 의견수렴 및 신규과제 예측 공고 ○ 전문위, 연구자 의견을 토대로 보완	RFP(안)의 자문·공시 의견 조정(안)	(Y-1) 11월	
	④-3 RFP 심의·확정	○ 전문위 및 보정심을 통해 심의·확정	차년도 사업계획 및 RFP 확정	(Y-1) 12월	보정심

2. 기획

2.2 기획(기술)수요 조사·선정

1. 개요

① ‘기획(기술)수요 조사·선정’ 단계는 2단계로 구성

- ①-1 기획(기술)수요 조사 단계 : 보건의료분야 미래 유망기술 탐색을 위해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기획(기술)수요를 조사
- ①-2 기획(기술)수요 우선순위 확정 단계 : 수집된 기획(기술)수요의 우선순위를 검토하고 기획연구 추진을 위한 기획 투입자원 및 추진 방식 등 신규 기획 추진계획을 수립

단계		단계별 추진 내용	비고
① 기획(기술) 수요 조사·선정	①-1 기획(기술) 수요 조사	○ 보건의료분야 미래유망 분야에 대해 수요조사 실시	
	①-2 기획(기술)수요 우선순위 확정	○ 조사된 수요에 대한 우선순위 검토 ○ 기획 규모, 방식 등 신규 기획 추진계획 수립	○ 보정심 전문위원회 ○ 기획실무협의체

□ 관련 규정

-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10조(전문위원회에 대한 위임사항)

제10조(전문위원회에 대한 위임사항) 위원회가 분야별 전문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분야별 연구개발 사업 및 과제의 발굴·기획
2. 분야별 기술수요조사를 통하여 도출된 과제에 대한 우선순위 등 검토
3. 분야별 기술적·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사전조사 또는 기획연구에 관한 사항

2. 세부 단계별 추진내용

①-1 기획(기술) 수요조사

단계	세부단계	
①-1 기획(기술) 수요조사	가. 기획(기술) 수요조사 (정기)	나. 기획(기술) 수요조사 (비정기)
	○ 보건복지부, 연구자 등 대상	○ 시급성, 중요성 등에 따라 제안

- 목적 : 유망분야의 예산확보 및 사업 추진을 위해 보건의료분야 연구개발 기획 주제 발굴

2. 기획

- 주관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R&D정책전략단)(*R&D사업기획단 협조)
- 일정(시기)
 - 정기 수요조사 : 상시 진행
 - 비정기(수시) 수요조사 : 정해진 일정은 없으며, 시급하거나, 전략적으로 필요한 기획수요를 조사
- 대상
 - 보건복지부(유관부서·기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내부), 유관기관·단체·학회, 산·학·연·병 연구자 및 국민 등
 - * 질병관리청, 국립암센터, 국립재활원 등
- 방법
 - 온라인 조사 :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 (<https://www.htdream.kr>) - 사업참여
 - 기획수요조사
 - 기획수요조사
 - 오프라인 조사 : 대면 방식 등으로 기획(기술) 수요를 직접 수집

2. 기획

1-1-가 기획(기술) 수요조사(정기)

단계	세부단계			
1-1 기획(기술) 수요조사	가. 기획(기술) 수요조사 (정기)	나. 기획(기술) 수요조사 (비정기)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기획(기술)수요 제출자	비고
	① 기획(기술)수요 조사 추진계획 마련	① 기획(기술)수요 조사 추진계획 마련		매년 2회
		② 기획(기술)수요 조사 추진 (온오프라인)		
			③ 기획(기술)수요조사 제출	www.htdream.kr
		④ 기획(기술)수요 조사 접수		

- 목적 : 유망분야의 예산확보 및 사업 추진을 위해 보건의료분야 연구개발 기획 주제 발굴
- 주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R&D정책전략단)(*R&D사업기획단 협조)
- 세부내용
 - 매년 2차례 진행하며, 1차 2~3월, 2차 8~9월에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온라인 조사 형태로 진행되며, 보건의료 종합연구개발시스템(www.htdream.kr)을 통해 접수
 - 사업·과제 특성과 기획 유형에 따라 제안 상세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별첨 1-1)
- 기획 유형

유형	세부내용
① 정책기획	중장기 계획, 주요 전략 수립, 성과분석 등 주요 정책방향 수립을 위한 기획
② 사업기획	기술개발 로드맵 수립, 투자방향 개발 등 특정분야에 대한 세부사업 기획
③ 과제기획	특정 기술개발이나 제품화 목표를 가진 기술개발 연구 등 세부과제 기획

- 기획(기술) 수요조사 서식 (*필요시 조정 가능)

2. 기획

순서	목차	세부내용
1	제안하는 기술의 분류	최종 성과물의 과학기술표준분류, 보건의료기술분류 등
2	기획(기술)의 필요성	배경과 필요성, 문제점,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 등
3	기획 목표 및 내용	최종 목표 및 세부내용 등
4	연구동향 및 파급효과	제안 기획(기술)의 최신 연구동향 및 파급효과 등
5	기획(기술)의 시장 현황	제안 기획(기술)의 시장 동향 및 규모 등
6	개발기간, 정부지원 규모·형태	제안 기획(기술) 연구의 기간, 정부지원 규모, 기획개발 주체 등
7	연구개발 추진체계	제안 기획(기술)의 추진체계 등
8	제안 기획(기술)의 평가주안점	제안 기획(기술)의 선정이나 결과물의 평가시 핵심사항 등
9	기타 별도로 정하는 조사항목	제안 기획(기술) 연구에 추가로 필요한 조사항목

2. 기획

별첨 1-1 기획(기술)수요 조사서 양식(안) (* 별도양식 대체 가능)

1. 제안자	성명		소속기관명	
2. 기획(기술) 과제명			유형	정책·사업기획 등
3. 기획 필요성	<input type="checkbox"/> 배경 및 필요성(국내외 연구산업·정책 동향) <input type="radio"/> - <input type="checkbox"/> 문제점 (국내 R&D지원 현황 및 문제점) <input type="radio"/> -			
4. 기획 목표 및 내용	<input type="checkbox"/> 목적 및 목표 <input type="radio"/> - <input type="checkbox"/> 연구동향 및 파급효과 <input type="radio"/> - <input type="checkbox"/> 주요 기획 내용 <input type="radio"/> -			
5. 기획 시급성 및 중요성	<input type="checkbox"/> 시급성 <input type="radio"/> - <input type="checkbox"/> 중요성 <input type="radio"/> -			
6. 연구개발 규모	기간	소요비용	추진방식	
	개월	백만원 이내	외부공모(지정)/ 자체기획	
7. 추진체계 및 평가의 주안점	<input type="checkbox"/> 추진체계 <input type="radio"/> - <input type="checkbox"/> 평가 주안점 <input type="radio"/> -			

2. 기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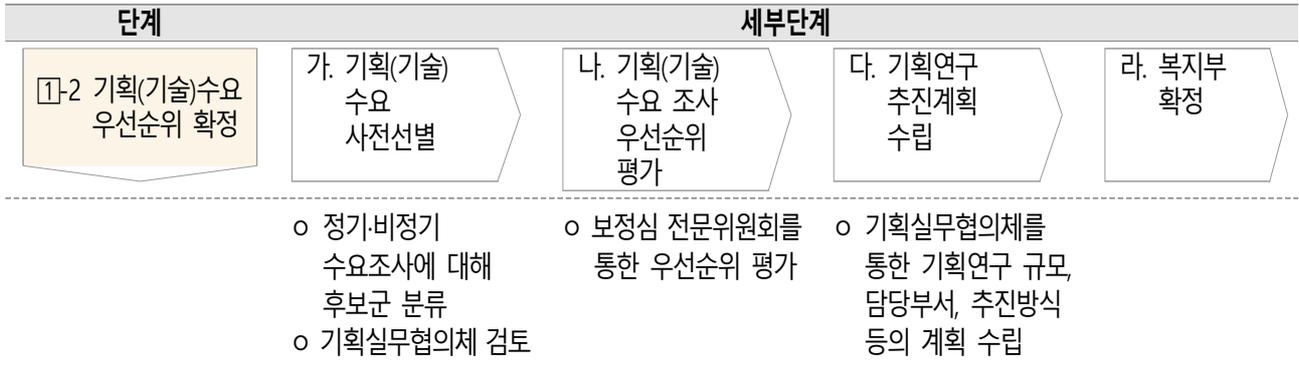
1-1-나 기획(기술) 수요조사(비정기)

단계		세부단계			
1-1 기획(기술) 수요조사	가. 기획(기술) 수요조사 (정기)	나. 기획(기술) 수요조사 (비정기)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기획(기술)수요 제출자	
		① 기획(기술)수요 조사 추진계획 마련	① 기획(기술)수요 조사 추진계획 마련		비고
			② 기획(기술)수요 조사 추진 (온오프라인)		수시
				③ 기획(기술)수요조사 제출	www.htdream.kr /or 서면양식
			④ 기획(기술)수요 조사 접수		

- 목적 : 유망분야의 예산확보 및 사업 추진을 위해 보건의료분야 기획 주제 조사·발굴
- 주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R&D정책전략단)(*R&D사업기획단 협조)
- 세부내용
 - 시급하거나 전략성이 필요한 주제를 필요시 비정기적으로 수집
 - 온라인 조사(www.htdream.kr), 또는 오프라인 형태로 서식(별첨1-1)에 따라 제출·수집
 - 필요시, 보정심 전문위를 통해 각 분야별 주요 현안과 미충족 기술 관련 기획(기술) 수요 확보
- 기타
 - 기획유형 설정 및 수요조사 서식은 정기 수요조사와 동일

2. 기획

1-2 기획(기술) 우선순위 확정 (*참고사항)



- 목적 : 정기·비정기적으로 조사된 기획(기술) 수요에 대해 시급성·전략성 등 우선순위를 확정하여 기획연구에 대한 추진계획 수립
- 주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R&D정책전략단)(*R&D사업기획단 협조)
- 세부내용
 - 정기·비정기 수요를 수집하여, 11월에 확정(※일정 변경 가능)
 - 기획(기술) 수요는 우선순위 확정을 위해 기획실무협의체를 통해 사전선별 하고, 보정심 전문위원회의 우선순위 평가(※향후 기능조정 가능)를 거쳐, 보건복지부에서 확정
 - 기획실무협의체에서 기획연구 규모, 담당 부서/PD/연구위원, 추진방식 등을 포함한 추진계획 수립

2. 기획

1-2-가 기획(기술)수요 사전선별

단계	세부단계			
1-2 기획(기술)수요 우선순위 확정	가. 기획(기술) 수요 사전선별	나. 우선순위 평가	다. 기획연구 추진계획 수립	라. 복지부 확정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기획실무협의체	비고
		① 기획(기술)수요 조사 수집		
		② 기획(기술)수요별 사전검토 항목 검토		
		③ 기획(기술)수요별 사전검토 결과 도출		사전선별 의견

○ 목적

- 제안·수집된 기획(기술)수요에 대해 중요성·전략성·시급성 등을 판단 할 수 있도록 사전 검토

○ 주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사업기획단)

○ 세부내용

- 제안된 기술에 대한 사전검토 항목에 대해 기획과제 관리 실무부서에서 관련 내용 정리 및 안전화
- 사전선별을 위한 항목 (*필요시 조정 가능)

사전검토 항목	세부내용	비고
①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의 담당부서가 지정되어 있는가?	
② 시급성	○ 기획연구 결과를 활용에 연관된 이슈가 있는가? (예, 예타 신청 등)	기획실무협의체
③ 제안 경로 구분	○ 제안 경로 구분(부처 지정주제, 연구자 제안, 전문위 제안 등)	안전 상정 시
④ 기타	○ 기획(기술) 수요 제안서의 특이사항 등	검토내용으로 활용

- 기획실무협의체에서 검토될 수 있도록 사전 선별항목을 내용을 준비하여 실무협의체에 제공

- 사전선별 검토결과 제시

사전검토 분류	세부내용	비고
A	기획(기술) 수요 내용 추진 가능	
B	재검토 필요	
C	추진 불가(탈락)	

2. 기획

1-2-나 우선순위 평가

단계	세부단계			
1-2 기획(기술)수요 우선순위 확정	가. 기획(기술) 수요 사전선별	나. 우선순위 평가	다. 기획연구 추진계획 수립	라. 복지부 확정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기획실무협의체	보정심 전문위
		① 기획(기술)수요 조사 우선순위평가계획수립		
(검토사항 제안)			② 기획(기술)수요별 우선순위 검토	
				③ 기획실무협의체가 검토한 우선순위에 대해 평가
		④ 기획(기술)수요 우선순위 결과 도출 및 기획과제 확정	④ 기획(기술)수요 우선순위 결과 도출 및 기획과제 확정	

○ 목적

- 제안·수집된 기획(기술)수요에 대해 중요성·시급성·전략성 등을 판단하여 우선순위 평가

○ 주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R&D정책전략단)(*R&D사업기획단 협조)

○ 평가주체 : 보정심 전문위원회(평가) → 기획실무협의체(확정)

○ 세부내용

- 기획(기술)수요의 우선순위 평가를 위해 사전선별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계획 수립
- 기획실무협의체가 제안된 기술에 대해 검토 (*별도의 사전검토 항목으로 가/부 결정)
- 사전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보정심 전문위원회 위원이 우선순위 평가(*기능조정 가능)
- 기획실무협의체는 우선순위 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 등을 고려하여 기획과제를 확정 (별첨1-2의 우선순위 평가표를 참고)

평가항목	세부내용	가중치	비고
① 신규(차별)성	○ 기존 기획연구와 차별화되어 신규성이 있는가?		
② 시급성	○ 추진을 위해 시기적으로 시급하거나, 적절한가?		가중치에 따른 점수부여 (5점만점)
③ 목표 적절성	○ 문제/이슈의 도출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목표가 적절한가?		
④ 정책적 부합성	○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추진할 정책적 근거가 타당한가?		
⑤ 추진 전략성	○ 기획목적을 달성하기에 추진내용(기간, 예산 등)이 적절한가?		
⑥ 특이사항	○ 기획연구 추진의 중대한 특이사항이 있는가?		

- 기획연구 추진방식(예타/비예타, 내부/외주 등), 소요예산, 담당부서 등에 대한 초안 구성

○ 기획실무협의체(안)

2. 기획

- 역할 : 기획(기술)수요 조사에 대한 후보군 조정, 우선순위 검토, 결과도출 및 기획과제 확정 등
- 구성 : 보건의료기술개발과 및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연구개발혁신본부 사업기획 담당자 10명 내외

순번	구분	소속 및 직위	인원	비고
1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 기획연구과제 총괄	필요인원	
2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연구개발혁신본부 단장 (5개 부서 단장) (*22.5월 현재)	5	
3		* R&D정책전략단, R&D사업기획단, 3개 사업부서 연구사업관리전문가 (PD)		

2. 기획

별첨 1-2 기획(기술)수요 우선순위 평가표(안)

□ 기획(기술) 수요 우선순위 평가표 (*필요에 따라 조정)

1. 제안과제명	○○○을 위한 기획			
2. 유형/기간/예산규모	정책기획/23.01-12/100백만원			
3. 우선순위 평가표				
◇ 평가항목		가중치	점수	비고
① 신규(차별)성	○ 기존 기획연구와 차별화되어 신규성이 있는가?			
② 시급성	○ 추진을 위해 시기적으로 시급하거나, 적절한가?			
③ 목표 적절성	○ 문제/이슈의 도출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목표가 적절한가?			
④ 정책적 부합성	○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추진할 정책적 근거가 타당한가?			
⑤ 추진 전략성	○ 기획목적달성하기에 추진내용(기간, 예산 등)이 적절한가?			
⑥ 특이사항	○ 기획연구 추진의 중대한 특이사항이 있는가?			
총점				
4. 기타의견				

- ****에 따라 긴급한 추진이 필요함
- ****를 검토할 때, 상반기 발표 계획과 부내 *** 사업과 연계 필요

5.추진방식 및 조정의견	추진방식	예산규모 및 기간	부서
	외주용역/자체기획	(규모) 원안유지/증액/삭감 (기간) 원안유지/축소/확대	000단 / 000 PD
6. 평가자 서명	(소속, 직위, 성명, 서명)		

2. 기획

1-2-다 기획연구 추진계획 수립

단계	세부단계			
1-2 기획(기술)수요 우선순위 확정	가. 기획(기술) 수요 사전선별	나. 우선순위 평가	다. 기획연구 추진계획 수립	라. 복지부 확정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기획실무협의체	비고
		① 확정된 기획과제에 대한 기획연구 추진계획 수립		매년 2회 (또는 수시)
	② 기획과제 추진에 대한 예산 조정 및 추진계획 승인			부내 의사결정
		③ 기획과제 선정 공고		

○ 목적

- 평가된 우선순위에 결과에 따라 당해연도 기획연구 추진계획(안) 수립

○ 주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사업기획단)(*각 수요부서 협조) → 보건복지부

○ 세부내용

- 우선순위가 평가 결과(별첨 1-3)와 추진계획, 가용예산 편성 등을 고려하여 기획연구 추진내용을 마련

- 보건의료기술개발과 주관으로 부처·한국보건산업진흥원 내부의 최종 의견 조회를 통해 공고대상 기획연구과제 확정 및 추진계획(안) 마련

2. 기획

별첨 1-3 기획(기술)수요 우선순위 평가 결과

□ 2020년 1차 기획(기술) 수요 우선순위 평가 결과

구분	유형	과제명	보건복지부 담당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담당부서	수행방식	소요예산 (백만원)	평가점수	특이사항
1	정책 기획	****기획	○○과	○○단 ○○○팀 ○○○ PD	용역 (공모)	00		
2	사업 기획	***기획 (예타기획)	○○과	○○단 ○○○팀 ○○○ PD	용역 (공모)	00		
3	사업 기획	사업기획	○○과	○○단 ○○○팀 ○○○ PD	자체기획	00		
4								
5								
소요예산 합계						000백만원 (외부공고 000백만원, 자체기획 0020백만원)		
2020년 기획연구 예산 대비 비중(%)						2020년 예산 000백만원 1차 기획(기술) 수요 : 000백만원 (00%)		

※ 기타 고려사항 ###

2. 기획

1-2-라 복지부 확정

단계	세부단계			
1-2 기획(기술)수요 우선순위 확정	가. 기획(기술) 수요 사전선별	나. 우선순위 평가	다. 기획연구 추진계획 수립	가. 복지부 확정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복지부	비고
	① 기획연구 추진계획(안) 안건 상정	① 기획연구 추진계획(안) 안건 작성 지원		
			② 추진계획(안) 검토	기획과제 추진에 대한 의견 추가
	③ 검토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			
		④ 후속조치 수행		

○ 목적

- 당해연도 차수별 기획연구 추진계획(안) 심의·확정

○ 주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R&D정책전략단)(*R&D사업기획단 협조), 보건복지부

○ 세부내용

- 보건의료기술개발과 주관으로 추진계획(안)에 대해 보건복지부(보건의료기술개발과) 확정
- 최종 우선순위 평가 결과를 수용하되, 추진시 보완해야 하는 사항 등의 의견 수렴하여 기획연구시 보완
- 승인된 기획연구 과제를 연구자 및 외부 대상 공고 준비

2. 기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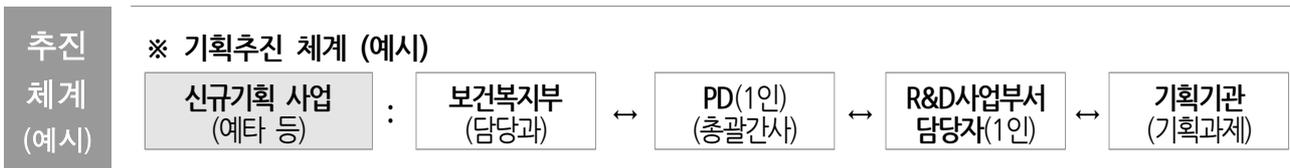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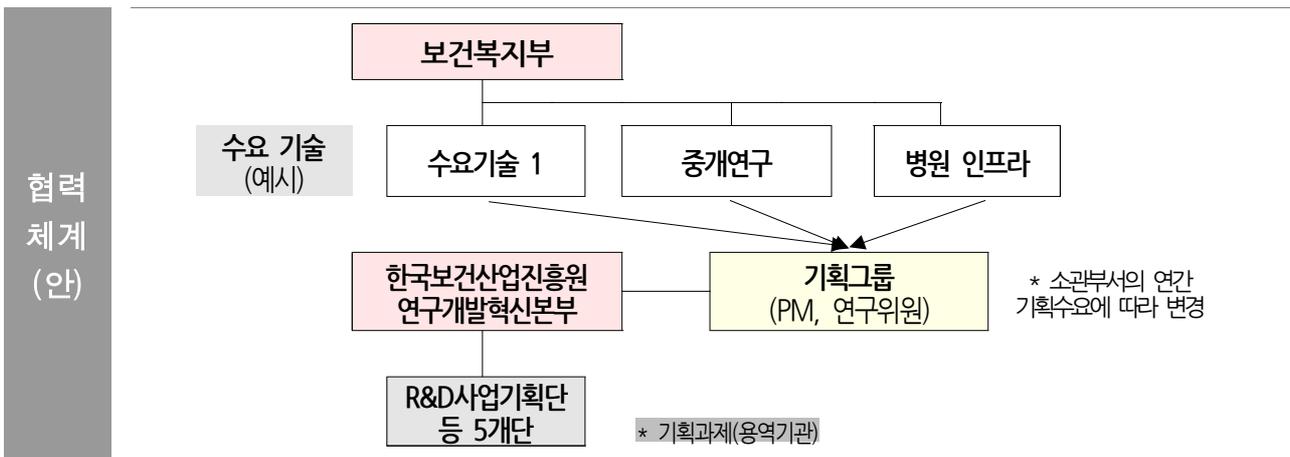
2.3 사업기획

1. 개요

- ‘②사업기획’ 단계는 2단계로 구성
 - ②-1 기획연구 수행 단계는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목표 설정, 세부 추진내용, 추진방법 설계 등 기획 연구를 추진하여 최종 보고서를 도출하는 단계
 - ②-2 사업계획 수립 단계는 사업예산 확보 이후 부처 내 사업 추진근거를 마련하고, 정책 부합성 등을 최종 검토하여 기획된 사업 추진의 완결성을 제고하는 단계 (※ 신규 사업 해당)

단계	단계별 추진 내용	비고
② 사업기획	②-1 기획연구 수행	○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목표 설정, 세부 추진내용 설계, 기술기획연구 추진
	②-2 사업계획 수립 (필요시)	○ 신규사업의 경우 부처 내 사업 추진 계획을 구체화하고, 정책 부합성 등을 최종 검토하여, 기획된 사업 추진의 완결성 제고

- 사업기획 주체별 역할 및 범위
 - 기획(기술)수요 검토 과정을 통해 기획 연구 담당부서와 방식이 확정되며, 이에 따라 기획 추진



2. 기획

□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사전조사 및 기획)

제8조(연구개발과제 발굴을 위한 사전 기획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발굴을 위한 사전 기획을 하려면 미리 다음 각 호의 세부 내용을 그 사전 기획에 포함해야 한다.

1. 사전 기획 관련 연구 분야에 대한 지원 필요성
2. 논문 또는 특허 등 연구개발 동향
3. 기대효과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발굴을 위한 사전 기획을 하는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가 제45조제1항제1호나 같은 항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2. 추진절차

□ 기획연구용역 발주부터 예산대응까지의 절차 및 시기(참고사항)

단계	세부단계				
사업기획	가. 사업기획 대상사업 확정	나. 기획연구 용역 발주(공고) 및 접수	다. 기획용역 선정 협약	라. 기획실무 협의체 구성	마. 기획 위원회 구성 (10인 이내)
	○ Y-2, 9월	○ Y-2, 10월	○ Y-2, 11월	○ Y-2, 11월	○ Y-2, 11월
	바. 기획연구 수행	사. 기획 보고서 완료	아. 예산 요구서 작성 (과기부)	자. 예산대응 (과기부, 기재부, 국회)	차. 예산확정
	○ Y-2, 11월 ~ Y-1, 4월	○ Y-1, 5월	○ Y-1, 5월	○ Y-1, 5월-11월	○ Y-1, 12월

○ 기획연구 용역발주(공고) 및 접수

– 조달청 및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자체공고 및 기획용역과제 접수

○ 기획용역 평가(한국보건산업진흥원 가이드라인)

– 기술평가(한국보건산업진흥원)와 가격평가(조달청)를 실시, 종합평가점수로 산출

※ 종합평가점수 산출 = 기술평가 점수(80%) + 가격평가 점수(20%)

– (기술평가) 제안서 평가 후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 나머지 점수를 평균하여 획득점수를 산출

※ 기술평가 점수가 일정비율(85%, 68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되,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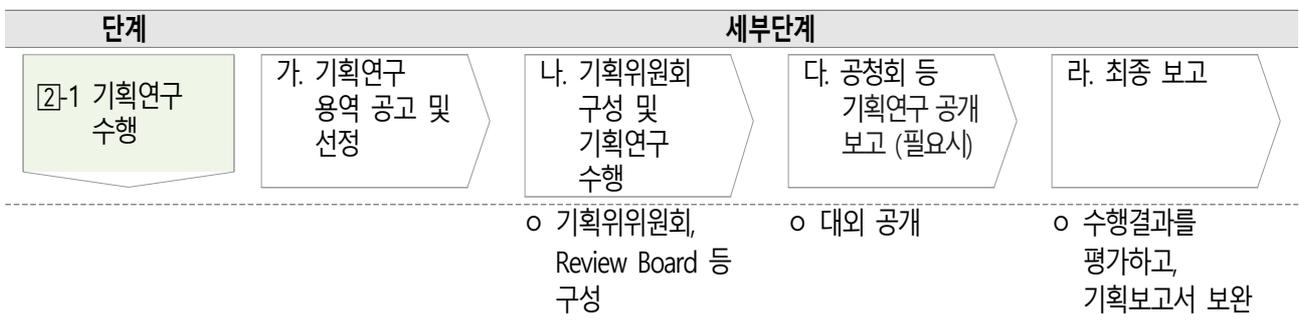
– (가격평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름(기획재정부 회계예규 2200.04-158-3, 2009.9.21.)

2. 기획

- 기획 용역 선정·협약
 - 협상적격자에 한해, 추가협상 및 가격시담 후 계약진행
- 기획실무협의체 구성
 - 복지부 담당과 및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담당팀과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기획방향 도출, 기획위원회 위원 후보(안) 구성 및 기획과제 운영방안 논의

3. 세부단계별 추진내용

2-1 기획연구 수행



- 목적 : 발굴된 신규 사업 주제에 대해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추진 내용을 설계하고, 연구자 대상으로 검토·검증을 통해 기획 보고서를 발간
- 주관 : 보건복지부 소관부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사업부서, 기획용역기관
- 일정(시기)
 - 사업 시행 직전연도(Y-1) 4월말, 또는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 직전월까지 최종보고 완료
- 세부내용
 - 우선순위 상위 기획연구에 대해 적절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연구수행이 적합한 연구기관 선정
 - 기획연구 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획위원회를 선정, 기획연구 총괄 책임자에게 기획연구 의뢰
 - 중간보고, 공개보고, 최종보고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사업 기획 내용 완성

2. 기획

2-1-가 기획연구 용역 공고 및 선정

단계	세부단계			
2-1 기획연구 수행	가. 기획연구 용역 공고 및 선정	나. 기획위원회 구성 및 기획연구 수행	다. 공청회 등 기획연구 공개 보고 (필요시)	라. 최종 보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기획과제 평가위원회	기획연구 수행기관	비고
	① 추진 계획에 따라 신규 기획연구 선정 공고		② 연구계획서 접수 및 제출	
		③ 기획연구 과제 평가		
	④ 평가위원회 결과 정리 및 기획연구 수행기관 선정			

○ 목적

- 신규 기획연구 추진계획에 따라 기획연구를 수행할 연구기관(연구자)를 모집

○ 주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사업기획단)

○ 세부내용

- 기획연구 추진을 위한 과업지시서를 작성하여, 공개 공고 (※조달청 공고 절차 준수)
- 기획과제 평가를 위해 평가절차와 기준에 따라 기획과제 평가위원회 구성
- 해당 공고에 제안서를 제출한 연구수행기관을 대상으로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표를 통해 평가 수행
- 필요에 따라, 기획결과를 활용하는 부서의 단·팀장이 참석하여, 해당 기획의 의도 등 설명
- 평가 결과를 정리하여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수행기관을 선정

○ 기획과제 평가위원회

- 역할 : 기획연구에 제출된 제안서를 평가하여 우선순위 선정
- 구성 :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통합가이드라인’에 따라 5~8명 내외로 구성

순번	구분	인원	비고
1	기획 과업 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	1인	가급적 필수
2	보건복지부 추천 전문가	2인 내외	보건복지부 추천
3	기술정책 전문가	2인 내외	유관부서 추천 등

2. 기획

2-1-나 기획위원회 구성 및 기획연구 수행

단계	세부단계			
2-1 기획연구 수행	가. 기획연구 용역 공고 및 선정	나. 기획위원회 구성 및 기획연구 수행	다. 공청회 등 기획연구 공개 보고 (필요시)	라. 최종 보고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기획연구 수행기관	비고
		① 기획연구 개시		
※ 필요시, 참여		② 연구개시(Kick-off) 회의	② 연구개시(Kick-off) 회의	
		③ 기획위원회 구성		기획위원회
※ 필요시, 참여		④ 중간점검 및 검토 (Review Board)	④ 중간보고 (Review Board)	주기별 회의

○ 목적

- 선정된 기획연구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연구기획 범위 등을 조정·확정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연구개발혁신본부 담당부서를 중심으로 보건복지부와 협력·검토하여 기획연구 수행·보고

○ 주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사업기획단)

○ 세부내용

- 연구개시(Kick-off) 회의 : 기획연구 개시에 따라 보건복지부(담당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담당부서, PD, 연구위원 등), 연구 수행기관의 연구개시 회의를 통해 당초 기획의도, 과업의 범위, 추진체계 등을 조정
- 중간보고(Review Board) 회의 : 기획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기획품질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과제 RFP 자문에 참여했던 1인 이상을 포함한 외부전문가 5인 내외로 구성된 Review Board를 운영
- 1회 이상의 중간보고 과정을 거치면서 해당 사업 또는 과제 특성에 따라 기획

○ 기획위원회 구성(안) (※과제별 특성에 따라 구성)

- 역할 : 기획연구 수행 방향과 수행 과정에서 도출된 내용을 검토

순번	구분	인원	비고
1	기획 과업 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	1인	가급적 필수
2	보건복지부 추천 전문가	2인 내외	필요시
3	보정심 전문위원회 추천 전문가	2인 내외	필요시
4	내·외부 공개모집 전문가	2인 내외	*htdream 등을 통해 공개 모집 가능

2. 기획

2-1-다 공청회 등 기획연구 공개 보고

단계	세부단계			
2-1 기획연구 수행	가. 기획연구 용역 공고 및 선정	나. 기획위원회 구성 및 기획연구 수행	다. 공청회 등 기획연구 공개 보고 (필요시)	라. 최종 보고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기획연구 수행기관	비고
		① 공청회 등 공개 검토회의(협력)	① 공청회 등 공개 검토회의 ② 제안된 의견을 수렴하여 기획연구에 반영	온오프라인 방식

○ 목적

- (예비타당성조사 사업 등 필요 시) 수행중인 기획연구의 중간 결과물을 이해관계자, 외부 연구자, 국민 등에 공개하여 의견 수렴

○ 주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R&D사업기획단)

○ 세부내용

- 온·오프라인 등의 방식으로 공개 검토회의(공청회 등)를 개최하여 기획연구 결과를 이해관계자, 외부 연구자 및 국민을 대상으로 공개하고, 의견 수렴
- 제안되는 의견을 분류하여, 기획수행 내용에 포함

2. 기획

별첨 2-3 기획연구 최종보고서 작성 내용(안)

□ 기획연구 최종보고서 목차(안)

1. 연구 기본정보	○ 과제명,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참여연구자 등
2. 과업의 내용 및 목표	○ 기획연구의 최종 목표 및 내용
3. 기획연구 배경	○ 기획연구의 배경
4. 국내외 연구동향	○ 국내외 특허, 기술, 표준화 등의 기술동향 및 정책 동향 등 포함
5. 세부 추진내용	○ 추진체계, 추진 세부내용 등 포함
7. 소요자원 (예산, 인력 등)	○ 필요 자원의 규모 및 인력 확보방안
8. 추진일정	○ 기획연구기간 동안의 기획 상세활동에 대한 추진일정
9.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 과학적, 기술적, 사회적 기대효과
9. 신규사업 체크리스트	○ 정부지원의 타당성, 유사중복 차별성 등 주요항목

2. 기획

2-2 사업계획 수립 (필요시)

※ 사업계획 수립 단계는 신규사업 예산(과기, 기재부 등) 확보 후 사업추진계획 등을 검토하는 단계



- 목적 : 부처 내 신규 사업의 추진 계획을 구체화하고, 정책 부합성 등을 최종 검토하여, 기획된 사업 추진의 완결성 제고
- 주관 : 보건복지부 소관부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기획연구 수행기관 협조)
- 일정(시기)
 - RFP 사전공시 및 공청회 시행일 3개월 이내
- 세부내용
 - 신규 세부사업의 경우, 보건복지부 소관부서와 사업추진을 위한 세부계획을 논의·수립
 - (필요시) 외부 전문가 검토를 통해 세부계획의 필요성, 타당성 확보

2. 기획

2-2-가 세부계획 수립

단계	세부단계		
2-2 사업계획 수립	가. 사업 추진을 위한 세부 계획수립	나. (필요시) 외부전문가 검토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외부전문가
	① 기획보고서를 기반으로 세부 추진계획 수립 ② 부처 내 보고 및 확정	① 세부 추진계획 수립 지원	① 필요시, 외부전문가 검토
			비고

○ 목적

- 기 확보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신규사업계획(안) 작성

○ 주관 : 보건복지부 소관부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세부내용

- 보건복지부 소관부서는 신규 세부사업에 대해 사업기간내 추진계획 수립
 - ④ (필요시) 자문위원으로 외부전문가(보건복지부 추천 전문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PM (또는 R&D사업부서) 추천전문가, 전문위 추천 전문가(2인 내외), 기획참여 전문가(사업기획보고서가 있을 경우) 별도 구성
 - ⑤ 보건복지부 소관부서가 주도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 사업부서가 지원

순번	구분	비고
1	선행과제 및 기술분석	
2	지식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 현황	
3	연구개발(시장) 동향	
4	미충족 의료수요 현황 등	

○ 사업계획 포함사항

순번	구분	비고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2	추진방향	
3	사업내용	
4	추진체계 및 운영방안	
5	기대효과	
6	참고자료	

2. 기획

2.4 차년도 예산확보

1. 일반적 절차

○ ‘차년도 예산확보’ 단계는 3단계로 구성

- ③-1 과기부 예산대응 단계는 당해연도 연구개발사업의 예산 확보를 위해 예산 요구서를 작성하고, 사업설명, 과학기술자문위원회 전문위원회 회의(심의회의) 등의 과정을 거쳐, 과기부 절차에 따라 정부 예산(안)을 확정하는 단계
- ③-2 기재부 예산대응 단계는 과기부의 예산 요구(안)을 기반으로 예산 요구서를 작성하고, 사업설명, 예산 심의 등의 과정을 거쳐 정부 예산(안)을 확정 받는 단계
- ③-3 국회 예산대응 단계는 확정된 기재부의 예산 요구(안)을 기반으로 사업설명, 예산 심의 등의 과정을 거쳐 정부 예산(안)을 확정 받는 단계

단계	단계별 추진 내용	비고
③ 차년도 예산 확보	③-1 과기부 예산 대응	○ 과기부 예산요구 대응
	③-2 기재부 예산 대응	○ 기재부 예산요구 대응
	③-3 국회 예산 대응	○ 국회 예산요구 대응

- 이 과정에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담당부서는 기획보고서 및 예산 요구서를 기반으로 차년도 예산 확보를 위한 서면·대면 대응 추진
- 주관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각 담당부서)

□ 관련 규정

- 예산안 편성 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각 연도, 기획재정부)
-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 추진계획안 (각 연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투자심의국)

2. 기획

2. 다부처 공동기획

□ 개념

- 2개 이상의 관계 정부 부처가 단순 업무 협조가 아닌 기획·수행·관리·평가 등 R&D 전주기에 걸쳐 공동으로 실시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다부처운영지침 제2조)

□ 요건

- 2개 이상의 부처가 공동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R&D를 수행하는 사업
 - 연구개발단계(원천/개발/실증/상용화 등)간 연계, 기술분야 간 분담·융합, 공용 플랫폼 개발, 기술개발/법·제도개선/현장적용 간 연계 등

□ 세부단계

- 다부처 공동기획연구 심의 및 확정
 - (주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다부처협력특별위원회
 - (절차) 주제발굴을 위한 연구자부처 수요조사(Y-2, 4월) → 공동기획연구대상 선정(Y-2, 4월, 국과위) → 공동기획연구 실시(Y-2, 7-12월) → 다부처공동사업대상 선정(Y-1, 2월) → 예산심의 및 확정(Y-1, 5-12월) → 사업추진(1월)
- 예산심의 단계

단계	세부단계			
다부처 공동기획	가. 사업기획	나. 예산편성	다. 예산심의	라. 사업추진
	○ 부처간 협의를 통해 다부처 공동기획	○ 중기재정심의(1월) ○ 다부처공동사업 대상심의 및 선정(2월)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다부처협력특별위원회	○ 과기부(5-6월), 기재부(7-8월), 정부예산(안) 확정 ○ 국회심의·의결(12월)	○ 시행계획 수립(차년도 1월) 및 사업공고

□ 다부처 공동기획 추진내용(자료 : 다부처공동기획사용설명서, KISTEP)

구분	세부내용
추진 필요성	①현황분석 및 문제정의 ②정부투자 당위성 검토 ③다부처 공동R&D 추진 필요성 제시
사업목표 및 범위	①사업목표 설정 ②사업 성과지표 설정 ③수혜자/이해관계자 설정
추진전략	①세부활동의 구체화 ②사업기간 및 추진일정 구체화 ③사업예산 및 투자계획 구체화 ④법·제도적 위험요인 및 대응방안 검토
추진체계	①추진체계 및 성과관리방안 마련 ②부처별 역할분담 상세화
성과활용계획	①성과활용계획 구체화 ②기대효과 제시

2. 기획

2.5 과제제안서(RFP) 개발·검증·확정

1. 개요

- ‘과제제안서(RFP) 개발·검증·확정’ 단계는 3단계로 구성
 - ④-1 RFP 개발·검토 단계는 연구 제안을 위한 요구사항을 정의하고, 표준형식에 따른 RFP 초안을 마련하는 단계
 - ④-2 RFP 공시·검증 단계는 연구자 및 국민을 대상으로 신규과제를 추진에 대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
 - ④-3 RFP 심의·확정 단계는 개발·검증된 RFP를 분야별 전문위(필요시, 보정심)을 통해 심의하여 확정하는 단계

단계	단계별 추진 내용	비고
④ 과제제안서 개발·검증·확정	④-1 RFP 개발·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 제안을 위한 요구사항 정의 및 표준형식에 따른 RFP 초안 마련 ○ 부처 소관과의 최종 검토
	④-2 RFP 공시·검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자 대상 의견수렴 및 신규과제 추진 예측 ○ 전문위, 연구자 의견을 토대로 보완
	④-3 RFP 심의·확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야별 전문위(필요시, 보정심)을 통해 심의·확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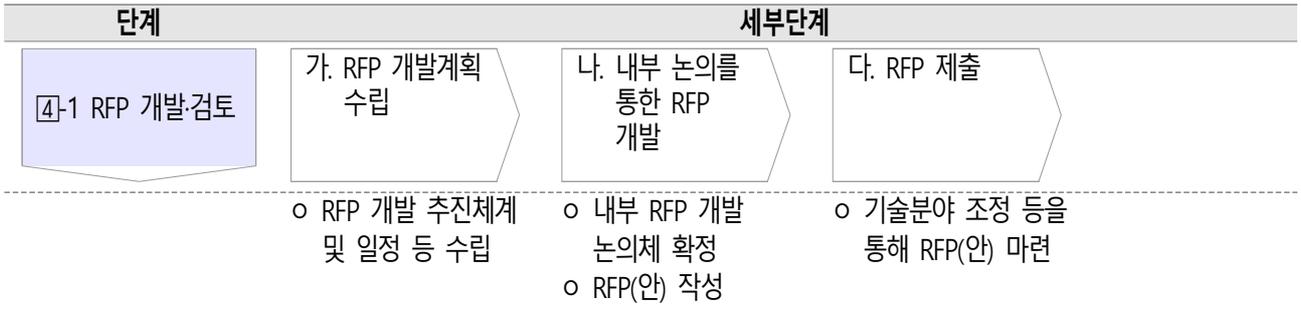
□ 관련 규정

- 보건의료기술개발과의 사전공시 추진계획(‘15.8.10)에 따라 ’16년부터 전체 사업에 적용
 - 관련 : ‘보건의료R&D 제안요청서(RFP)’사전공시 추진계획 송부(보건의료기술개발과-4034호, ‘15.8.10)

2. 기획

2. 세부단계별 추진내용

4-1 RFP 개발·검토



- 목적 : 기획연구 보고서를 기반으로 차기 공고대상 과제의 과제제안요구서(RFP)(안) 마련
- 주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R&D 담당부서)
- 일정(시기)
 - RFP 사전공시/공청회 시행일 3개월 이내
- 세부내용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사업 담당부서에서 신규 사업에 관하여 각 제안과제에 대한 일반사항과 특이사항에 대해 상세 내용을 정의하기 위해 RFP 개발계획을 수립
 - 개발계획에 따라 추진과정에서 내부 그룹을 구성
 - 내부 논의를 통해 RFP에 포함되어야 하는 일반사항 및 특이사항을 정의하고, RFP(안)을 개발
 - 사전공고 및 공청회에 공개하기 위해 RFP(안)을 제출(한국보건산업진흥원 → 보건복지부)

2. 기획

4-1-가 RFP 개발계획 수립

단계	세부단계			
4-1 RFP 개발검토	가. RFP 개발계획 수립	나. 내부 논의를 통한 RFP 개발	다. RFP 제출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외부전문가	비고
	① RFP 개발계획 검토	① RFP 포함사항 사전검토 및 개발계획 수립	① 기술 내용 등 제한적 검토	
		② 부처 담당부서와 논의하여 확정		

○ 목적

- 부처·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소관기관의 RFP를 개발 계획을 수립

○ 주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 담당부서)

○ 세부내용

- 기획연구 보고서 결과의 완결성 제고 및 공고 상세정보를 기재하기 위해, RFP 포함사항 정의

- 일정, 내부 참여 연구진의 그룹 범위, RFP에 필수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설계

○ RFP 세부내용(최소 필수내용)

- 공고에 포함되어야 하는 일반, 특이사항을 정의

순번	구분	비고
1	연구목표	
2	연구규모 및 기간	
3	지원목적	
4	지원분야 및 내용	
5	지원대상	
6	특기사항	
7	평가항목	
8	별첨 (지원자격 및 평가 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	RFP별 상이

2. 기획

4-1-나 내부 논의를 통한 RFP 개발

단계	세부단계			
4-1 RFP 개발검토	가. RFP 개발계획 수립	나. RFP 개발	다. RFP 제출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외부전문가	비고
		① RFP 내부 연구진 구성·확정		
② RFP 의견 전달		② RFP 필요사항, 분류사항 등 구성	② RFP의 기술 내용 등을 제한적으로 검토하고, 피드백	
		③ 최종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RFP 보완		

○ 목적

- 기획연구 보고서 내용을 기반으로 과제 선정·수행·결과평가 등에 필요한 RFP의 제한 사항을 개발

○ 주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R&D 담당부서)

○ 세부내용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사업 담당부서가 주도하여, 기획연구 보고서를 검토하고 필요사항을 정의
- RFP 개발에 필요한 내용을 기반으로 내부 연구진 구성 및 확정
- 내부 연구진을 활용하여 RFP 필요사항 등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검토·개발(별첨 4-1,2)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사업부서는 기존 외부 전문가의 자문, 사업기획보고서,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과제제안요구서(RFP)(안) 작성

○ 특이사항

- 사업계획(신규사업 해당) 단계에서 외부전문가를 활용하여 사업 구체성을 확보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이 관련 연구분야의 특수성, 보안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불가피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완화하여 적용 가능

2. 기획

별첨 4-1 과제제안요청서(RFP) 개발 체크리스트(예시)

검토항목	검토내용		검토결과
	검토질문	상세설명	
연구비규모 및 기간	연구목표 및 지원내용을 고려했을 때 적절한 수준인가?	연구비 규모 및 기간 추정이 어려울 경우 유사 정부R&D 과제 또는 유관 정부R&D사업 RFP 등 참조	적정 <input type="checkbox"/> 수정 <input type="checkbox"/> 재검토 <input type="checkbox"/>
지원목적	당초 기획내용(또는 의도)에 부합하고 명료한가?	사업기획보고서 또는 사업계획 내용 참조	적정 <input type="checkbox"/> 수정 <input type="checkbox"/> 재검토 <input type="checkbox"/>
연구목표	최종/단계별 목표가 SMART 원칙에 부합하는가?	① Specific(구체성) ② Measurable(측정가능성) ③ Attainable(달성가능성) ④ Relevant(상위사업목표 관련성) ⑤ Timely(최종도달시점)	적정 <input type="checkbox"/> 수정 <input type="checkbox"/> 재검토 <input type="checkbox"/>
최소 연구성과 (적시된 경우만 검토)	연구목표 달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가?	연구목표 달성과 관련성이 낮은 최소연구성과는 되도록 제외	적정 <input type="checkbox"/> 수정 <input type="checkbox"/> 재검토 <input type="checkbox"/>
	질적성과지표를 지향하고 있는가?(양적지표 지양)	SCI논문건수, 특허출원등록건수와 같은 단순 양적지표 지양	
지원분야 및 내용	당초 기획내용과 부합하고 명료한가?	사업기획보고서 또는 사업계획 내용 참조	적정 <input type="checkbox"/> 수정 <input type="checkbox"/> 재검토 <input type="checkbox"/>
	지원목적 및 연구목표와 논리적 연계성이 높은가?	지원목적 및 연구목표와 비교	
	특정 연구기관(또는 연구자)에 편향될 소지는 없는가?	지원분야 및 내용이 특정연구기관 또는 연구자에게 유리한지 여부	
지원대상	연구자격요건을 관련법 보다 제한한 경우 연구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제한요건인가?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 및 시행령 제3조' 연구자격요건과 비교	적정 <input type="checkbox"/> 수정 <input type="checkbox"/> 재검토 <input type="checkbox"/>
	연구자격요건을 관련법 보다 제한한 경우 정부정책에 부합하는 제한요건인가?	국가R&D정책, 법정상위계획, 국정과제,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의결안건 등 참조	
특기사항	연구목표 달성 및 지원내용 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인가?	사업기획보고서 또는 사업계획 내용 참조	적정 <input type="checkbox"/> 수정 <input type="checkbox"/> 재검토 <input type="checkbox"/>
	정부정책과 부합하는가?	법정계획, 국가중장기R&D전략, 국정과제,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사항 등 참조	
	특정 연구기관(또는 연구자)에 편향될 소지는 없는가?	특기사항이 특정연구기관 또는 연구자에게 유리한지 여부 판단	
선정평가 기준	평가항목 및 구성이 합리적이고 적절한가?	사업기획보고서 또는 사업계획 내용, 유사사업 RFP 평가기준 참조	적정 <input type="checkbox"/> 수정 <input type="checkbox"/> 재검토 <input type="checkbox"/>
	평가항목별 배점기준이 합리적이고 적절한가?	사업기획보고서 또는 사업계획 내용, 유사사업 RFP 평가기준 참조	
	가감점 적용 등의 우대사항이 적절하게 제시되어 있는가?	사업기획보고서 또는 사업계획 내용, 정부정책(국가R&D정책, 법정상위계획, 국정과제,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의결안건 등),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4항 참조	

2. 기획

별첨 4-2 과제제안요청서(RFP) 개발 체크리스트 검토의견 제출 서식

순번	검토항목	검토의견 ※ RFP체크리스트에 수정 및 재검토 체크시
1	연구비규모 및 기간	
2	지원목적	
3	연구목표	
4	최소연구성과	
5	지원분야 및 내용	
6	지원대상	
7	특기사항	
8	선정평가 기준	

2. 기획

4-1-다 RFP 제출

단계	세부단계			
4-1 RFP 개발검토	가. RFP 개발계획 수립	나. 내부 논의를 통한 RFP 개발	다. RFP 제출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외부전문가	비고
	②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RFP(안)을 받아 검토	① 개발된 RFP를 보건복지부에 제출		

○ 목적

- 사전공고 또는 공청회 등 외부 공개용 RFP(안) 마련

○ 주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 담당부서)

○ 세부내용

- 부처, 전문기관, 기 수립한 외부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RFP(안) 마련 (별첨 4-3)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R&D사업부서는 과제제안요구서(RFP)(안) 작성 결과를 종합하여 복지부 소관부서에 제출하며, 필요시 연구분야를 조정하고, 공고 우선순위 등의 검토의견 첨부 가능

2. 기획

별첨 4-3 과제제안요청서(RFP) 표준화 양식 및 예시

제안요청서 (세부사업명)	예방 및 진단 치과 의료기술개발 (치의학 의료기술 연구개발)	공모 유형	자유공모형/ 품목지정형/ 하항식	기술료 납부대상	O/X
사업유형 해당여부	<input type="checkbox"/>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 <input type="checkbox"/> 경쟁형 R&D, <input type="checkbox"/> 연구데이터 관리계획 제출대상				
기획시 참조사항					

▶ 지원목적

- 임상현장의 미충족 의료수요 해결을 위한 구강질환 분야 조기 진단·치료를 위한 진단기술 연구개발 및 실용화 연구 지원
- 구강질환 예방 및 치료·관리를 위한 사용자 맞춤형 구강관리 제품 및 프로그램 개발 지원

▶ 지원대상

- 주관연구기관은 산·학·연·병 모두 가능
- 2개 이상의 세부과제 구성을 통한 다학제간(참여기업 필수) 협업 연구 수행 필수
- 일반적인 사항은 공모안내서의 '신청요건' 부분 참고

▶ 지원규모

지원분야	지원기간	연간 연구개발비	선정 예정 과제수
구강질환 조기 진단·치료기술 개발	4년(2+2) 이내	580백만원 이내	1

- ※ 1차 년도 연구기간은 및 연구비는 9개월 이내로 산정(괄호 예산)하여 지급
- ※ 연도별 예산확보 상황에 따라 연간 지원예산 변동 가능

▶ 성과목표 및 연구내용(안)

지원분야	성과목표	지원내용(예시)
구강질환 조기 진단·치료기술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상적 검증을 통한 진단·치료 기술* 1건 이상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강 내 부위별 pH, 병원성세균의 활성도, 타액 분비율, 치아상태 및 치주낭 변화 측정, 유전체 정보 활용 연구 등 구강질환 대상 진단·치료기술과 관련된 모든 실용화 목표* 연구개발 지원 * 의료기기 및 치료제 품목허가, 기술이전, 신의료기술 인증 등
사용자 맞춤형 구강질환 예방·관리 통합 시스템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상진료지침 1건*, 제품화 1건* 이상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학적 우수성 및 실생활 적용 가능성 검증 등을 통한 사용자(장애인, 소아, 고령자, 치매환자 등) 맞춤형 구강질환 예방·관리 기술 및 제품 개발 ▪ 의사/사용자/보호자별 표준 매뉴얼, 교육용 동영상, 애플리케이션 등 콘텐츠 개발 등

- ※ GS(good software) 인증(애플리케이션), 신의료기술인증, 임상진료지침(대한의학회 인증), 규제기관 (식약처 등) 품목허가 등 공인된 기관의 인증 필수

▶ 특기사항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시 주요사항
 - 최종 산출물의 프로파일(Target Product Profile) 및 기술성숙도(TRL)에 근거,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제시
 - 연구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과제 및 참여연구진간의 구체적인 역할 배분 및 협력 방안 제시

2. 기획

- 총 연구기간 동안의 연차별 마일스톤(정량지표)을 제시

※ 마일스톤은 연구개발 단계별로 달성해야만 하는 주요한 기술적인 실적으로 평가를 통해 실적달성여부를 판단 시 주요 기준으로 활용

○ 과제의 최종평가는 과제지원 종료 이후 1년간의 성과등록기간을 거친 후 실시(단, 최종보고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과제종료 후 45일 이내에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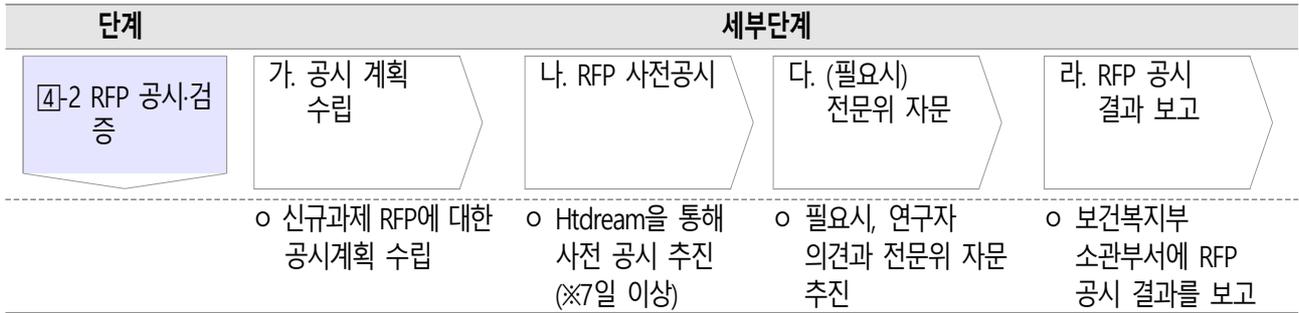
▶ 선정평가 기준

적용가점	해당사항 없음	
구분	평가항목(배점)	
	대항목	소항목
서면·구두평가	1. 연구계획의 적절성(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목적에 대한 이해도(10) ○ 연구목표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10) ○ 연구내용의 우수성(30) ○ 과제구성 및 추진일정의 적절성(10)
	2. 연구자 및 연구환경의 우수성(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책임자의 우수성(10) ○ 연구환경의 우수성(10)
	3. 연구개발 기대성과(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의 성공가능성(10) ○ 연구결과의 파급효과(10)

※ 선정평가 계획 수립 시 일부 평가항목(배점) 및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

2. 기획

4-2 RFP 공시·검증



- 목적 : 신규과제 추진에 대한 예측가능성 제고 및 RFP(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사전 공시·검증
- 주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R&D 담당부서)
- 일정(시기)
 - RFP(안) 작성 후 신규 공고 과제들에 대한 일정 조율하여 추진
- 세부내용
 - RFP(안) 사전공시를 위한 계획을 수립
 - 보건의료기술 종합시스템(www.htdream.kr)에 신규 공고 대상 과제의 RFP(안)과 사전공시 안내문(대상과제, 공시기간, 의견접수방법, 향후 일정, 문의처 등을 포함)을 공지
 - 대외 의견과 필요시 전문위 자문을 통해 의견을 취합·정리하여 의견을 종합
 - RFP(안)의 사전공시 결과를 정리하여 보건복지부 보고
- 참고
 - ‘보건의료R&D 제안요청서(RFP) 사전공시 추진계획 송부(보건의료기술개발과-4034호, ‘15.8.10)

2. 기획

4-2-가 공시계획 수립

단계	세부단계			
4-2 RFP 공시검증	가. 공시 계획 수립	나. RFP 사전공시	다. (필요시) 전문위 자문	라. RFP 공시 결과 보고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외부 연구자 등	비고
		① RFP 공시계획 수립 및 부처 보고		
	② 공시계획 검토			

○ 목적

- 신규과제 추진에 대한 사전공시 계획 수립

○ 주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R&D사업부서)

○ 세부내용

- 공고 일정을 고려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사업부서에서 RFP(안)에 대한 사전 공시 계획 수립

- 보건복지부에서는 사전공시 계획에 대해 검토

2. 기획

4-2-나 RFP(안) 사전공시

단계	세부단계			
4-2 RFP 공사 검증	가. 공시 계획 수립	나. RFP(안) 사전공시	다. (필요시) 전문위 자문	라. RFP(안) 공시 결과 보고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외부 연구자 등	비고
		① RFP(안)을 외부 연구자에 사전공시		
			② 신규 RFP(안)을 검토하여 의견 제출	
		③ 의견 종합		

○ 목적

- 계획에 따라 대외에 사전공시하고, 외부 연구자 등의 의견 수렴

○ 주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사업부서)

○ 세부내용

- 보건의료기술 종합시스템(www.htdream.kr) - 사업참여 - RFP 사전공시에 신규 공고 대상 과제의 RFP(안)과 사전공시 안내문(대상과제, 공시기간, 의견접수방법, 향후 일정, 문의처 등을 포함)을 공지
- 외부 연구자는 해당 공시를 확인하고, RFP(안)에 대한 의견 제출 (E-mail, 온라인 서식 작성 등)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사업부서에서 의견을 종합하여 정리

○ 사전공시 포함 사항

순번	구분	비고
1	신규과제 선정 규모	총 사업비, 선정 예상 과제수 등
2	RFP 명	
3	사전공시 기간	7일 이상
4	의견 접수방법 (E-mail, 서식작성 등)	온라인 제출 방법 안내
5	향후 일정	
6	문의처	

2. 기획

별첨 4-4 과제제안요청서(RFP) 사전공시에 대한 의견제출 서식

시행계획 RFP명				
제안자 정보	성명		소속기관명	해당자에 한함
	소속부서	해당자에 한함	직위	해당자에 한함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e-mail		Fax	
	직장주소	해당자에 한함		
의견 내용	※ RFP의 연구목표, 연구내용, 중복성, 연구지원기간 및 규모의 적정성 등 자유롭게 기술하되 그 사유나 근거를 포함해서 작성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2. 기획

4-2-다 (필요시) 전문위원회 자문

단계	세부단계			
4-2 RFP 공시·검증	가. 공시 계획 수립	나. RFP(안) 사전공시	다. (필요시) 전문위원회 자문	라. RFP(안) 공시 결과 보고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정심 전문위원회	비고
		① 사전공시 결과 종합하여 보정심 전문위원회 검토 요청		
			② 요청받은 검토 사항에 대해 회신	서면자문
		③ 의견 종합		

○ 목적

- 사전공시를 통해 제안된 의견을 최종 검토하여, 특이사항에 대해 보정심 전문위 의견 수립

○ 주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 담당부서)

○ 세부내용

- 사전공시 의견을 종합하고, 외부 연구자가 제안한 특이사항 분류
- 특이사항에 대해 보정심 전문위원회에 서면검토를 요청하고, 전문위원회는 검토하여 회신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사업부서에서 전문위원회의 의견을 종합하여 검증·조정 결과를 정리
- (필요시) 특이사항에 대해 제안한 연구자에 문의하여 세부자료를 정리

○ 전문위원회 검토가 필요한 특이사항

순번	구분	비고
1	타 사업과의 연계 필요성	
2	타 사업과의 중복성	
3	RFP(안)의 중대한 조정이 필요한 사항	

2. 기획

4-2-라 RFP 공시 결과 보고

단계	세부단계			
4-2 RFP 공시 검증	가. 공시 계획 수립	나. RFP 사전공시	다. (필요시) 전문위 자문	라. RFP 공시 결과 보고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정심 전문위원회	비고
		① RFP 사전공시 결과 보고		
	② 사전공시 결과 검토			

○ 목적

- 신규과제 RFP(안)의 사전공시 검토·검증·조정 결과를 부처에 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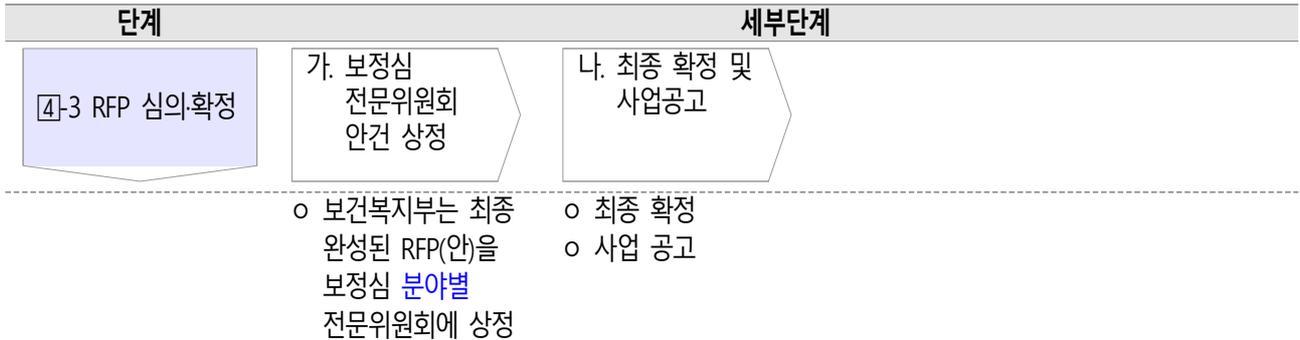
○ 주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R&D 담당부서)

○ 세부내용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사업부서에서 RFP(안)의 종합 결과를 부처에 보고
- 보건복지부 소관부서에서 종합결과를 검토하고, 추가 조정이 필요한 내용에 대해 지속 보완
- 조정·보완된 RFP(안)의 최종내용을 차년도 시행계획에 반영

2. 기획

4-3 RFP 심의·확정



- 목적 : 기획연구 및 내외부 공개검증을 통해 완성된 RFP(안)을 도출하고, 차년도 시행계획 및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최종심의·확정
- 주관(협조) : 보건복지부(보건의료기술개발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 담당부서)
- 일정(시기)
 - RFP(안)이 검증·조정된 이후 (*신규과제 공고 전년도 12월)
- 세부내용
 - 보건복지부는 최종 완성된 RFP(안)을 기반으로 차년도 시행계획(사업계획)을 안건화
 - 보정심 분야별 전문위에서 차년도 시행계획을 심의·검토
 - 보정심 분야별 전문위 의결로 최종 확정

2. 기획

4-3-가 보정심 분야별 전문위 안건 상정

단계	세부단계			
4-3 RFP 심의확정	가. 보정심 전문위원회 안건 상정	나. 최종 확정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정심 전문위	비고
	① RFP(안)을 반영하여 차년도 시행계획 안전화	① 차년도 시행계획 안전화 지원		
			② 시행계획(사업계획) 심의 및 의결	
	③ 전문위 의견 종합			

○ 목적

- 신규과제 공고를 위한 RFP(안)을 반영한 차년도 시행계획 작성 및 보정심 분야별 전문위 안건 상정

○ 주관 : 보건복지부(보건의료기술개발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R&D 담당부서)

○ 세부내용

- 최종 완성된 RFP(안) 내용을 반영하여 차년도 예산, 신규과제 공고 등에 대한 시행계획 안전을 작성
- 보정심 분야별 전문위에 RFP(안) 안건 상정(사업단에서 기획하는 RFP도 분야별 전문위 심의를 거쳐야 함)
- 보정심 분야별 전문위는 해당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 (*사전검토 기간을 충분히 부여)
- 안전에 대한 전문위 의견을 종합하여 결과 도출

2. 기획

4-3-나 최종 확정

단계	세부단계			
4-3 RFP 심의확정	가. 보정심 안전 상정	나. 최종 확정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정심 전문위	비고
	① 보정심 심의결과에 따라 최종 확정			
		② 후속조치 (차년도 시행계획 공고 등)		

○ 목적

- 차년도 시행계획 확정

○ 주관 : 보건복지부(보건의료기술개발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R&D 담당부서)

○ 세부내용

-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정심이 최종 심의·의결한 차년도 시행계획, 사업계획, 지원대상과 제 등 확정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후속조치 수행 (차년도 시행계획 공고 등)

2. 기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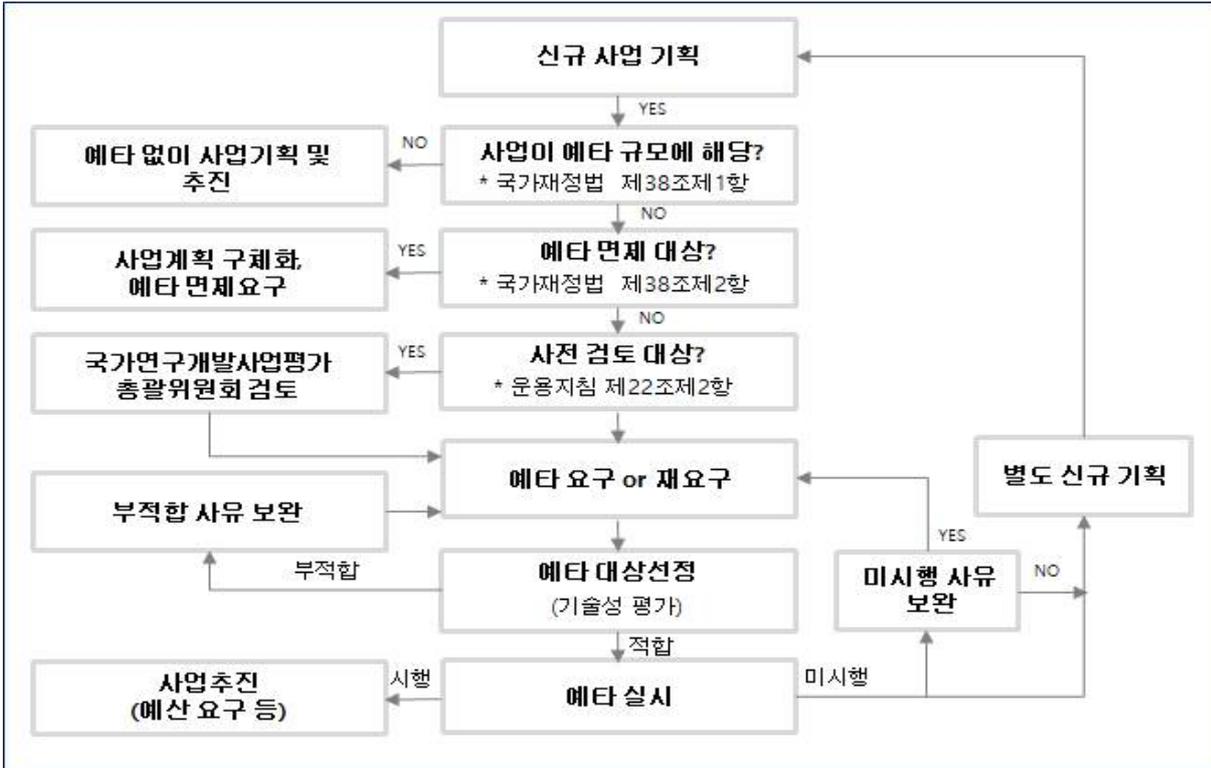
2.6 예비타당성 조사

1.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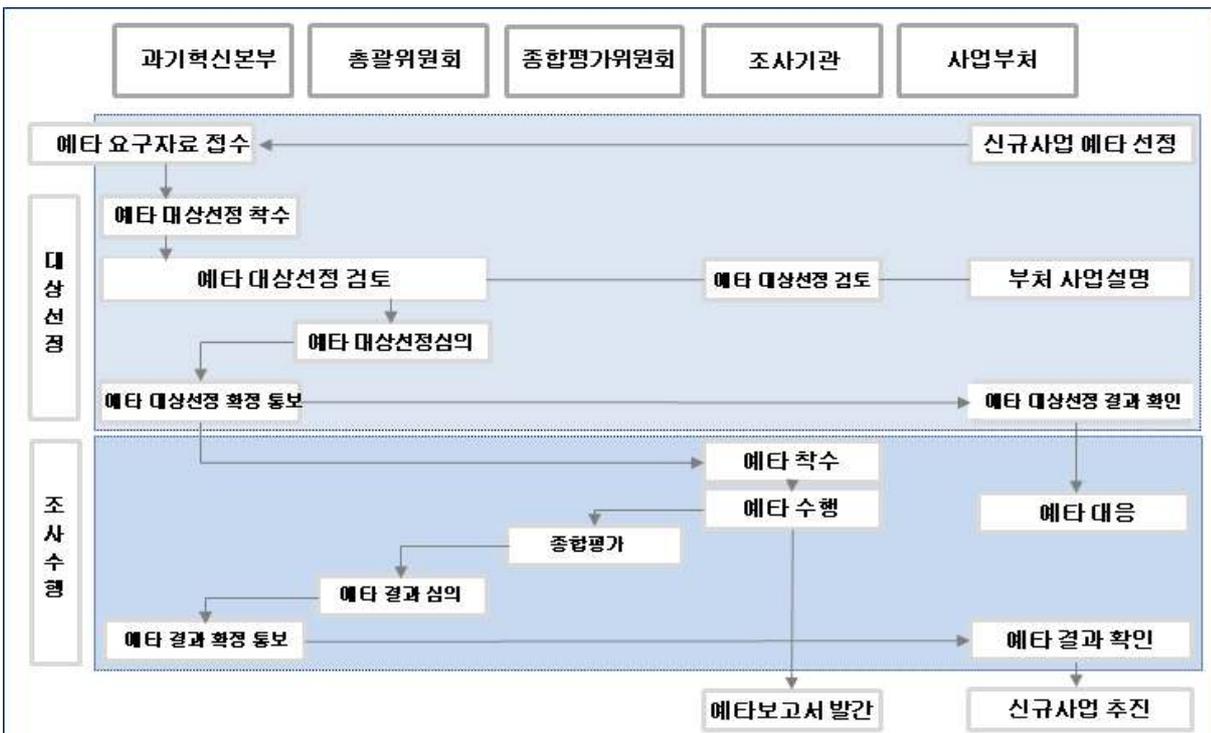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 (목적)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신규투자를 우선순위에 입각하여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사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
 - ※ 예타 결과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예산 요구, 심의·편성, 집행 등 사업추진
 - (대상) 총 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 & 국비 지원 300억 원 이상
 - (조사항목) 과학기술적 타당성, 정책적 타당성, 경제적 타당성 등 3개 항목
 - (조사방법) 사업별로 연구진(PM 및 외부전문가)을 구성하여 조사항목별 검토를 수행한 뒤, 종합평가위원회의 평가(AHP)를 통해 시행/미시행 여부 결정
- 법적 근거
 -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제38조의3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등
- 연구개발 예타 대상선정(기술성평가)
 -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3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해당 사업의 기술성을 평가
 - (위탁 전) 3단계 : 기술성 평가 → 예타 대상선정 → 예타
 - (위탁 후) 2단계 : 예타 대상선정(기술성 평가) → 예타
- 예타 대상선정(기술성 평가) 평가항목
 - 기술개발의 필요성 및 시급성
 - 사업계획의 구체성
 - 기존 사업과의 유사·중복성
 - 국고 지원의 적합성

2. 기획

2. 연구개발 예타절차



3. 기관별 기능 및 역할



2. 기획

4. 수행절차

구 분	내 용
대상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타 대상선정 착수(D-1.5개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사업 접수 및 혁신본부, KISTEP 담당자 배정 - (수행) 혁신본부, KIST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선정 사업 검토(1개월 소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혁신본부, 총괄위원, KISTEP 등 의견 수렴 * 부처는 대면회의를 통해 사업설명 등 소통 기회제공 - (수행) 혁신본부, KISTEP, 사업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타 대상선정 확정(총괄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안건 심의·조정(분과, 유형 분류) 및 결과 부처 통보 - (수행) 총괄위원회, 혁신본부
조사수행 (예비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타 착수(D+7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사업별 조사기관 및 담당 PM 배정 - (수행) 혁신본부, KISTEP, STEP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처 사업설명(1차 자문회의, D+1.5개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부처 사업설명 및 조사 방향과 주요 쟁점사항 공유 * 조사진(PM+자문단)은 사업 기획보고서 등 관련 자료 사전검토 - (수행) KISTEP, STEPI, 사업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쟁점 토론(2차 자문회의, D+2.5개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질의·답변 방식으로 사업부처와 조사진 간 심층토론 - (수행) KISTEP, STEPI, 사업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간 조사결과(안) 도출(3차 자문회의, D+4개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조사 항목별 쟁점 중심으로 조사·분석 결과 도출 - (수행) KISTEP, STEP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부처 소명여부 확인(4차 자문회의, D+4.5개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타당성 부족 및 쟁점사항 소명여부 검토 - (수행) KISTEP, STEP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결과 사업부처 설명(2차 점검회의, D+5.5개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조사결과(안) 설명 및 사업부처 의견 청취 - (수행) 혁신본부, KISTEP, STEPI, 사업부처
	종합평가 (본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타 결과 확정(총괄위, D+7개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안건 심의·조정 및 결과 부처 통보 - (수행) 총괄위원회, 혁신본부 	

2. 기획

5. 차수별 예타일정

< 연구개발 예타 추진 일정표 >

구분	당해 연도												다음 연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차 수 별	1차	접 수																			
	2차			접 수																	
	3차							접 수													
	4차										접 수										

* 연 4회 실시(추진단계: 예타 접수→예타 대상선정평가(약 5~6주)→예타 실시(약 7개월))

※ 협조사항 : 대형·장기 연구개발(1조원 & 6년 이상) 사업은 사전검토 후 신청(차수별)

3. 선정 및 협약

3.1

과제선정

1. 개요

가. 주요목적

우수한 연구개발과제와 연구개발기관 선정

- 제안요청서(RFP), 공고안내서의 요건을 만족하는 신청 과제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제시한 평가항목*에 부합하는 우수한 연구개발과제와 연구개발기관을 선정

* 평가항목 : (필수) 연구개발과제의 창의성, 수행계획의 충실성, 연구개발 역량 (선택) 과제의 파급효과 및 성과의 활용 가능성 등

선정결과 수용성 제고를 위한 컨설팅 위주의 종합평가의견 제공

- 연구자가 선정결과(선정 여부)를 납득할 수 있도록 종합평가의견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연구자가 제안한 연구계획서에 대한 컨설팅 위주의 종합평가의견 제공

구분	주요내용
우수한 과제	과제가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연구계획서 수정 및 보완을 위한 컨설팅 의견 제시
미흡한 과제	연구계획서를 보완하여 향후 신규과제 공모에 다시 지원할 수 있도록 컨설팅 의견 제시
평가의견 항목	과제의 장·단점, 보완 및 개선할 점

나. 법적근거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9조(예고 및 공모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제13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를 말한다)와 공모 일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예고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기적으로 연구개발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안보, 재난·재해 대비,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분야의 전략적 육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수요조사의 결과를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전 기획을 통하여 연구개발과제를 발굴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모를 통하여 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 등 공모 외의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V-3. 선정 및 협약

1. 국가안보 또는 사회·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연구개발과제인 경우
 2. 정부가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정부·기관·단체와 체결한 협정·조약 등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와 연구개발기관을 특정한 경우
 3. 법령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지정된 경우
 4. 재난·재해, 경제여건 악화 등 사회적·경제적으로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이 필요한 경우
 5.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기관이 한정되어 공모를 진행할 실익이 없는 경우
- ⑤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 등의 예고 절차, 제2항에 따른 수요조사, 제3항에 따른 사전 기획의 세부 내용과 제4항에 따른 공모 및 선정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연구개발과제 및 수행 연구개발기관의 선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신청한 기관·단체·연구자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참여제한 대상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이하 "선정평가"라 한다)를 거쳐 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적·성격을 고려하여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중 일부 또는 전부를 평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8.>

1. 연구개발과제의 창의성 및 수행 계획의 충실성
2. 연구자 또는 소속 기관·단체의 연구개발 역량
3. 연구개발과제의 학술적·기술적·사회적·경제적·지역적 파급효과 및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가능성
4.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 근거 법령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과의 부합성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선정평가의 세부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선정평가, 단계평가, 최종평가 및 제15조제1항에 따른 특별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이하 이 조에서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평가단은 평가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추진하려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취지, 목적 등을 고려하여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구개발과제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평가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은 평가단에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모 외의 방법으로 선정한 연구개발과제나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안과제는 평가단을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평가단 구성 시 제2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단의 평가 결과를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별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단의 평가 결과를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확정된 평가 결과를 해당 연구개발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⑧ 평가단의 구성 기준, 제4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9조(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의 공모 절차)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을 공모를 통하여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30일

V-3. 선정 및 협약

이상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목적
- 나. 지원 내용
- 다. 지원 기간

라.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되었는지 여부(해당 사항을 공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려는 연구개발기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연구개발과제의 신청 자격
- 나.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선정평가 기준 및 절차

② 법 제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모에 참여하려는 기관·단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표준 연구개발계획서(이하 "연구개발계획서"라 한다)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연구개발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연구개발과제의 필요성
- 2. 연구개발과제의 목표
- 3. 연구개발과제의 추진 전략·방법 및 체계
- 4.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 5. 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
- 6. 연구책임자의 주요 연구실적

7. 연구책임자가 신청 또는 수행 중이거나 수행한 국가연구개발과제
 8.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위해 연구개발계획서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공고한 내용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제품·장치를 직접적으로 생산하거나 이미 생산되거나 설치된 그 제품·장치를 개선하는 연구개발과제 중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 정부지원 연구개발비가 총 15억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지식재산권의 전략적 조사·분석이 필요한 경우 지원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하는 경우 제4항에 따른 사항을 제1항제1호나목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11조(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사전 검토)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신청한 기관·단체·연구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해당 여부
- 2. 제9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신청 자격의 적합 여부

제12조(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선정평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선정평가(이하 "선정평가"라 한다)를 하려면 선정평가 대상인 기관·단체·연구자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사전 검토 결과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대상이 아니고 제9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신청 자격을 구비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② 법 제10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선정평가 대상 연구개발과제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됐거나 추진되고 있는 다른 연구개발과제와의 차별성
- 2. 연구개발과제 관련 연구시설·장비 구축계획의 타당성
- 3. 연구개발과제의 국내외 연계·협력 가능성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제1호에 따른 차별성을 검토하는 경우 선정평가 대상 연구개발과제와 다른 연구개발과제 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 1. 경쟁 또는 상호보완의 필요성

2. 연구개발 주제·목표·수행방식의 차이점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선정평가를 하는 경우 제9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선정평가 기준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을 우대할 수 있다.
-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선정평가를 하는 경우 제9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선정평가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을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다.
 - 1. 최근 3년 이내에 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유로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 2. 최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경우
-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평가의견을 반영하여 20일 이내로 기간을 정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기간 내에 보완된 연구개발계획서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7조(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구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이하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이라 한다)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는 연구개발과제평가위원의 후보단(候補團)을 구성해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하는 연구개발과제평가위원의 후보단 구성에 관한 의견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후보단 중에서 연구개발과제평가위원을 선정하여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해야 한다.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평가위원을 선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제외해야 한다.
 - 1. 평가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자
 - 2. 제1호의 사람이 「민법」에 따른 친족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사람
 - 3. 서로 다른 두 건의 연구개발과제의 평가가 동시에 진행될 때 각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자가 그 서로 다른 연구개발과제를 평가하는 관계가 되는 경우의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자
 - 4. 평가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사람.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과, 학부(해당 학부에 학과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부서 등 최하위단위 부서에 같이 소속된 사람으로 한정하여 제외할 수 있다.
 - 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 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라.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에 따른 연구기관
 - 5. 해당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및 전문기관의 임직원(연구개발과제 기획·분석·평가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연구관리전문가는 제외한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내용에 따라 평가에 필요한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을 연구개발과제평가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단계평가, 최종평가 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특별평가(이하 "특별평가"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는 경우 선정평가에 참여한 사람을 우선 선정해야 한다.

제29조(평가 결과의 통보) ① 법 제14조제5항에서 "해당 연구개발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 1. 선정평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신청한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
- 2. 단계평가·최종평가·특별평가: 평가를 받은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30조(이의신청)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이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1. 신청인의 성명·명칭 및 주소
- 2.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
- 3. 통보된 평가 결과
- 4.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3)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정부는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한다. <개정 2013. 7. 30.>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으로 연도별·분야별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 등과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호의 기관 중 법인이 아닌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와 협약을 맺을 수 있다. <개정 2010. 1. 18.>

1. 국·공립 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5.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의료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

③ 제2항에 따른 연구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이나 기업의 기술개발비로 충당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8.>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협약을 맺거나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출연금을 지급할 때 특정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8.>

⑥ 제2항에 따른 연구과제의 선정 방법 및 협약의 체결 방법과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사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3. 7. 30.]

4)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연구과제의 선정 방법 등) ① 법 제5조에 따른 연도별·분야별 연구과제의 선정은 법 제6조에 따른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 3. 15.>

② 제1항에 따른 연구과제의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 3. 15., 2021. 8. 3.>

5)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선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과제의 목표, 지원의 성격·방법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검토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0조제2항 각호에 따른 사항
2.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자의 「의료법」 등 보건의료 관련 법령의 위반 여부
3.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인간대상연구 심의를 받았는지 여부
4. 「약사법」 제34조제1항 또는 「의료기기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았는지 여부(연구개발과제의 목표가 임상시험 실시인 경우만 해당한다)
5.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의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 심의를 받았는지 여부(연구개발과제의 목표가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인 경우만 해당한다)
6. 제20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관리계획(연구데이터의 생산·보존·관리 및 공동활용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V-3. 선정 및 협약

이하 같다)에 따른 연구데이터(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에서 실시하는 각종 실험, 관찰, 조사 및 분석 등을 통하여 산출된 사실 자료로서 연구결과의 검증에 필수적인 데이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 생산·보존·관리의 충실성 및 공동활용 가능성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기준을 공고하고,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를 우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다. 다만, 연구개발사업의 특성,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세부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제13조(선정의 취소)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선정평가를 받지 않았거나, 영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가 선정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제1항에 따라 정한 기간까지 협약의 체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선정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협약이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다. 주요용어

용어	설명	비고
1 연구개발과제	○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과제를 말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2 연구개발기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항 각 목의 기관·단체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를 말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3 주관연구개발기관	○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말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조
4 공동연구개발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과의 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말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조
5 위탁연구개발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위탁을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말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조
6 사전검토	○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신청한 기관·단체·연구자에 대하여 참여 제한 대상 여부 등을 선정평가 전 단계에 검토하는 것을 말함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
7 선정평가	○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연구개발과제의 창의성, 학술·기술·사회·경제적 파급효과, 수행 계획의 충실성, 연구자 또는 소속기관·단체의 연구개발 역량, 연구 성과의 활용성 등을 평가하여 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 기관을 선정하는 것을 말함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
8 서면평가	○ 평가위원이 평가자료(연구개발 과제계획서 및 보고서 등)에 기술된 내용을 바탕으로 평가서를 작성하고, 과제평가단의 평가의견이 반영된 종합평가 의견과 평가결과를 도출하는 평가방식을 말함 ※ 평가대상과제 수가 많은 경우 또는 발표평가 대상 선별이 필요한 경우 실시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
9 발표평가	○ 평가위원이 평가자료(연구개발 과제계획서 및 보고서 등)와 연구개발과제 연구책임자의 발표 질의 답변 및 평가위원 간 토의결과 등을 종합하여 평가의견서를 작성하고, 과제평가단의 평가의견이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

V-3. 선정 및 협약

용어	설명	비고
10 현장평가	<p>반영된 종합평가의견과 평가결과를 도출하는 평가방식을 말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단을 구성하여 현장을 방문점검하고,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평가의견서 작성 및 평가결과를 도출하는 평가방식을 말함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
11 온라인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위원이 온라인 시스템에 접속하여 업로드된 자료를 바탕으로 평가서 작성하는 평가방식을 말함 ※ 온라인 시스템으로 발표 및 질의·응답을 진행하는 평가방식 포함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
12 정성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평가결과를 도출하는 평가방식을 말함 - 정량화 된 성과(양적 성과 및 질적 성과 모두 포함)도 정성평가의 근거로 활용 가능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
13 정량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객관적으로 계량할 수 있는 성과를 바탕으로 산출식에 의해 점수를 도출하는 평가 방식을 말함 - 지표별 목표달성도 및 비용점수 산출 등을 위해 활용 가능 - 성과의 특성에 따라 정량평가를 위한 지표는 양적 지표 및 질적 지표로 제시될 수 있음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

2. 선정평가

가. 추진절차* 공모사업(과제)의 경우

추진 절차	주요내용												
<p>사업공고 및 과제 신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공고) 공모를 통하여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려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30일 이상 보건복지부 기술종합정보시스템(Htdream.kr)에 공고하여야 함. 다만, 보건복지부 장관이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30일 보다 단축 가능. - 연구개발과제의 ①지원 목적, ②지원 내용, ③지원 기간, ④보안과제 분류 여부 -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의 신청 자격, 과제구성 요건 및 선정평가 기준 절차 ○ (재공고) 신청과제수가 선정예정 과제수 이하(1:1)일 경우 1회에 한하여 10일 이상 재공고를 실시할 수 있음. 또한 선정평가 결과 선정과제가 없는 경우 재공고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기간을 30일보다 단축할 수 있음 ○ (과제신청) 과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모안내서 해당사업(과제)의 신청자격, 과제구성 요건 등을 확인하고, 보건복지부 기술종합정보시스템 (Htdream.kr) 전산입력, 첨부서류 업로드 등을 실시한 후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인증을 실시해야 함. 다만, 공동연구개발기관이나 위탁연구개발기관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주관연구개발기관 인증 전에 각 해당 구성기관은 사전에 필수적으로 온라인 체크를 해야 함. 												
<p>전문기관 사전검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기관의 장은 접수된 과제의 구성요건, 기관과 연구자의 신청자격, 필수서류 제출 여부 등을 평가전에 검토하며, 공고안내서, 제안요청서(RFP)에 제시 된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선정평가 대상과제에서 제외함 												
<p>전문가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평가단 구성) 해당사업(과제) 질환 및 기술 분야 관련 전문가를 평가위원 후보로 추출하고, 전문성 검증 등을 실시하여 전문가를 섭외함 <li style="text-align: center;"><과제 규모에 따른 과제평가단 구성> <table border="1" data-bbox="555 1375 1386 1503"> <thead> <tr> <th>구분</th> <th>소형</th> <th>중형 및 대형</th> <th>연합형</th> </tr> </thead> <tbody> <tr> <td>과제평가단 구성</td> <td>5명 내외</td> <td>8명 내외</td> <td>10명 내외</td> </tr> <tr> <td>연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규모</td> <td>2억원 미만</td> <td>2억원~20억원 미만</td> <td>20억원 이상</td> </tr> </tbody> </table> ○ (선정평가 실시) 과제평가단은 연구개발과제 신청계획서를 대상으로 RFP부합성, 중복성 여부, 연구개발 내용, 총 연구시설장비 등에 대해 검토 하고, 평가위원장이 개별평가의 견을 취합·정리하여 종합평가의견을 작성함 - 평가점수는 평가위원의 개별점수를 반영하되, 최고점 1개와 최저점 1개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출(5명 이내인 경우는 모두 포함) - 평균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에는 순위와 상관없이 탈락 	구분	소형	중형 및 대형	연합형	과제평가단 구성	5명 내외	8명 내외	10명 내외	연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규모	2억원 미만	2억원~20억원 미만	20억원 이상
구분	소형	중형 및 대형	연합형										
과제평가단 구성	5명 내외	8명 내외	10명 내외										
연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규모	2억원 미만	2억원~20억원 미만	20억원 이상										
<p>평가결과 종합 및 보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기관의 장은 최종점수가 높은 과제부터 지원우선순위를 지정하며, 과제평가단의 연구비 검토의견과 지원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 담당과장과 협의를 통해 지원 후보과제에 대해 연구비 조정을 실시할 수 있음 ○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계획, 과제별 최종점수, 우선지원 순위, 연구비 조정내용 등을 종합한 평가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함 												

V-3. 선정 및 협약

추진 절차	주요내용
<p style="text-align: center;">↓</p> <p style="text-align: center;">전문위원회 심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별 전문위원회에서 선정평가 계획, 진행과정의 적절성, 과제평가단 구성(전문성)의 적정성, 평가결과의 타당성 등을 심의함
<p style="text-align: center;">↓</p> <p style="text-align: center;">평가결과 통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문위원회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예비선정 대상과제를 확정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모든 신청 연구책임자에게 평가결과를 통보함 ○ 예비선정대상과제의 기본정보를 10일 간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 (Htdream.kr)에 공개함 - 신청과제의 과제평가단 종합평가의견은 예비선정공고일로부터 30일 동안 연구책임자가 열람가능
<p style="text-align: center;">↓</p> <p style="text-align: center;">이의신청 및 중복성 접수·검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선정공고 기간(10일)동안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및 예비선정 대상과제의 중복성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공문으로 접수 받고, 예비선정공고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함 ○ 전문기관의 장은 이의신청 및 중복성이 제기된 과제에 대한 검토절차를 마친 후 이의신청 수용 시, 전문위원회의 심의 상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기관에게 통보함
<p style="text-align: center;">↓</p> <p style="text-align: center;">최종확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정이 확정된 과제는 보건복지부의 협약승인을 받아 최종 확정하고 <지원확정 대상과제 통보 및 협약연구비 지급 안내> 공문을 통해 안내함

※ 지정사업(과제)은 별도의 접수 및 선정평가 절차 없이, 보건복지부 전문위원회 심의결과를 근거로 과제협약 승인 요청 및 통보 후 최종확정하여 협약을 진행함

V-3. 선정 및 협약

나. 평가방향

< 보건의료R&D 선정평가 방향 >

- ◆ 우수 평가위원 확보 및 교육 강화 등을 통한 선정평가 전문성 강화
- ◆ 과제와 연구자 특성에 따른 다양한 선정평가 방식을 활용하여 선정평가의 효율성 제고
- ◆ 연구자 대상 선정평가 절차와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 강화로 선정평가 절차의 투명성 제고 및 결과의 수용성 강화

□ 우수 평가위원 확보 및 교육 강화를 통한 선정평가 전문성 강화

- (우수 평가위원 확보) 신규 평가분류 코드 발굴 및 정보시스템 반영, 신규 평가위원 신청 홍보 확대, 평가위원 평가정보 현행화(Update), 책임평가위원제* 운영 확대, 평가위원 풀 그룹화와 평가이력 정보관리 등 사후관리 강화
 - * 책임평가위원제 : 평가의 연속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전문성이 뛰어나고 성실한 선정평가 위원이 단계·최종평가에 참여하는 제도
- (선정평가 전문성 강화) 평가위원 선정평가 동영상 교육자료 최신화 및 시청 횟수 확대, 평가정보 사전 제공 강화와 충분한 과제 검토시간 제공을 위한 온라인 사전검토 전면 확대

□ 과제와 연구자 특성에 따른 다양한 선정평가 방식을 활용하여 선정평가의 효율성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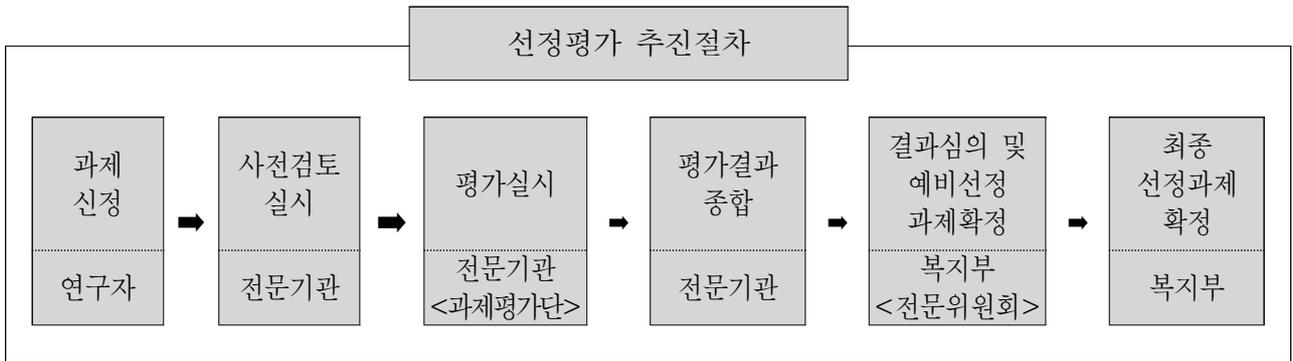
- (선정평가 방식 유연화) 불필요한 서면평가 미 실시* 및 발표평가 비중 강화, 지방 연구자의 편익 증대를 위한 비대면 온라인 평가 확대, 과제의 성격과 특성(연구비 규모, 분야)을 반영한 연구자 공개 발표 토론평가 확대
 - * 발표평가 대상과제 선별이 필요 없거나 경쟁률 3:1이하인 평가단위에 적용
- (평가절차 효율화) 연구자 발표자료 평가시스템 업로드·확인, 평가시스템 정보 연계로 과제신청 절차 및 제출서류 간소화

□ 연구자 대상 선정평가 절차와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 강화로 선정평가 절차의 투명성 제고 및 결과의 수용성 강화

- (평가절차 안내·교육 강화) 선정평가 절차, 평가기준 및 발표자료 작성 등 안내와 연구자 대상 선정평가 절차 홍보 및 교육 강화로 선정평가 절차의 투명성 제고
- (연구자 평가정보 공개) 평가위원 명단 및 종합평가의견 환류, 평가결과 등의 공개를 확대하여 평가결과에 대한 수용성 강화

V-3. 선정 및 협약

다. 평가방법



○ (과제신청) 연구자는 공고안내서, 제안요청서(RFP), 첨부서류 목록* 및 서식, 신규과제신청 가이드라인 등을 반드시 사전에 숙지한 후 과제신청을 해야 함

* **성차의학(Sex specific medicine) (비임상 동물실험 및 임상시험 시 남녀(성(sex)/젠더(gender))간의 병리 및 약리 기전, 질병 특성의 차이에 대한 임상 근거를 확보하고자 하는 연구) 연구수행 시 체크리스트를 첨부서류로 제출**

- 해당사업(과제)별 과제구성 요건, 연구책임자의 자격, 가감점 기준, 특기사항이 다르므로 제안요청서(RFP) 세부내용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은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www.htdream.kr)에 접속하여 직접 입력해야 하는 부분*과 서식(hwp)작성 및 업로드해야 하는 부분**으로 나뉨

* 표지, 요약문, 적정성 검토, 연구자 및 연구개발기관 현황, 연구개발비, 성과목표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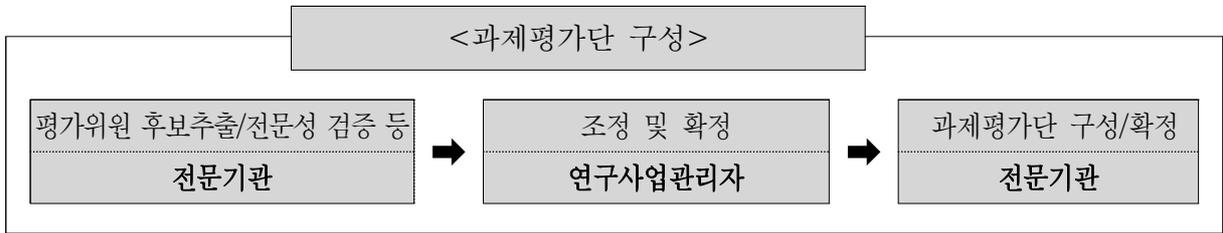
** 연구개발계획서 본문 서식, 첨부 제출서류 서식

○ (사전검토 실시) 전문기관은 과제를 신청한 기관과 연구자의 자격, 과제구성 요건, 참여제한 대상 여부 등을 사전에 검토해야 함

- 제안요청서(RFP)에 명시된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자의 자격과 과제구성 요건 미충족은 사전검토 탈락 사유에 해당되어 평가대상 과제에서 제외
- 주요 사전검토 탈락은 ① 공동연구개발과제 미구성(단, RFP상 공동연구개발과제 구성이 필수인 경우에 한함) ② 필수서류 미제출, ③ 주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 동일(법인번호 동일), ④ 기업부설연구소가 없는 기업이 참여(주관, 공동, 위탁), ⑤ RFP별 연구책임자의 자격(ex. 임상의 등) 미충족 등으로 나타남

○ (평가 실시) 전문기관은 해당분야 전문가로 과제평가단을 구성하여 서면평가, 발표평가 등을 실시하되, 평가방식은 외부상황(감염병 유행 등), 평가과제수, 평가분야 특성(연구비 규모, 분야)을 반영하여 대면평가, 온라인 비대면 평가, 혼합평가, 공개 토론평가 등을 실시할 수 있음

V-3. 선정 및 협약



- (과제평가단 구성) 과제평가단은 해당과제와 관련된 질환과 기술 분야의 전문가로 평가위원 후보를 추출(자동추출, 키워드추출, 지정추출 등)하고, 전공분야, 연구 및 성과 실적과 평가 경력, 제재정보, 제척기준 등을 확인하여 전문성을 검증 등을 실시함. 연구사업 관리자는 평가위원 후보자 풀(pool)에 대한 조정을 실시하고 확정함. 전문기관의 장은 위의 각 절차를 거친 평가위원 후보자 풀로부터 관련분야 전문가로 과제평가단을 구성하여 최종 확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공정성이 우려되는 경우 또는 과제의 성격 및 규모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절차 및 과제평가단 구성의 요건, 인원을 평가계획에 달리 정할 수 있음

※ 연구개발과제 평가위원 선정기준(붙임1)을 고려하여 선정

- (평가원칙) 선정평가는 발표평가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연구개발사업(과제)의 특성, 연구비 규모, 평가환경 등을 고려하여 서면평가, 필요시 현장평가 등으로 대신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평가계획에 반영할 수 있음. 다만,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가방법 및 과제선정방식을 공고문, 평가계획 등에 달리 정할 수 있음

- (평가위원 사전검토) 전문기관은 평가위원에게 평가자료(과제계획서, 발표자료 등)를 선정평가 3~5일 전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www.htdream.kr)를 통해 공개하여, 평가위원이 평가대상과제에 대해 사전검토를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부여할 수 있음

- (서면평가) 서면평가는 연구개발과제가 선정예정과제수의 3배수 이상으로 접수되거나 발표평가에 앞서 선별 또는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때 서면평가 점수는 최종점수에 반영하지 않음. 또한, 서면평가를 실시할 때는 최종선정 예정과제수가 1개일 경우 3배수로, 2개 이상일 경우 2배수 이하로 발표평가 대상과제수를 정함

- (발표평가) 발표평가는 주관연구책임자가 발표하는 것이 원칙*이며, 과제 연구비 규모, 평가대상 과제수에 따라 발표 및 질의응답 시간은 달라질 수 있으며, 발표자료는 평가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발표평가 전까지 연구책임자가 직접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www.htdream.kr)에 업로드 해야 함

* 주관연구책임자가 과제발표를 할 수 없을 경우, 평가담당자에게 통보하고 발표자 변경사유를 포함하여 공문을 제출해야 함

〈 발표평가 진행절차 및 발표자료 작성 가이드라인 〉

1. 발표평가 진행절차



- ① 연구자 입장 : 연구자는 평가담당자의 안내 일정에 따라 평가장 또는 화상회의실로 입장*
* 사업의 특성에 따라 주관연구책임자 이외에 답변이 필요한 공동, 위탁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도 입장 가능하나 참석인원수는 제한될 수 있음
- ② 발표안내 : 평가위원장은 발표 시간 및 진행과 관련한 안내 멘트와 함께 발표시작을 요청
- ③ 연구책임자 발표 : 연구책임자는 준비된 발표자료(PPT)를 토대로 정해진 시간*동안 발표
* 발표시간은 연구비 규모와 컨소시엄 구성 등에 따라 20분 내외(~중형), 30분 내외(~대형), 60분 내외(~연합형)로 구분하지만 발표평가 과제 수에 따라 시간은 조정될 수 있음
- ④ 질의-응답 안내 : 평가위원장은 질의-응답 시간 및 진행과 관련하여 연구자에게 안내하고 평가위원 질의 시작을 요청
- ⑤ 질의-응답 : 질의-응답 시간은 나누지 않고, 정해진 시간동안 이뤄지며 보통 발표시간과 동일하게 운영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추가 질의가 없거나 과제수가 많은 경우에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음
- ⑥ 연구자 퇴장 : 발표 및 질의-응답이 모두 끝난 후 연구자는 평가장 또는 화상회의실을 퇴장

2. 발표자료 작성 가이드라인

☞ 발표자료는 일반적으로 1) 연구개발 개요, 2) 주요 연구개발 내용, 3) 기대효과 등의 순으로 작성함

- 1) 연구개발 개요에서는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자 소개, 연구개발사업(과제)의 개요, 연구개발 필요성, 기술현황 등 과제의 추진배경과 대내외 여건 및 현황 등에 대해 소개하는 부분임
- 2) 주요 연구개발 내용에서는 기술개발의 최종 목표 및 성과물, 상세 연구개발 내용, 연구개발 추진체계 등 제한한 연구개발과제의 추진전략을 종합하여 상세히 설명하고, 발표자료의 핵심이 되는 항목인 만큼 연구개발과제의 차별성, 과학기술적 우수성, 추진전략 등이 잘 표현되도록 작성해야 함
- 3) 기대효과 항목에서는 연구개발을 통한 최종 성과물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가 정량적으로 표현되도록 작성하고, 최종 성과물 비정형 데이터를 수치화하여 이에 대한 산출근거를 포함하는 것을 권장
- ※ 중형과제 20분 내외 발표시간을 기준으로 총 25페이지 내외 분량이 적절하며, 연구개발 개요와 기대효과 항목은 5페이지 이내, 주요 연구개발 내용은 15페이지 내외를 권고 드림

- (평가점수 및 종합평가의견) 평가위원은 평가대상 과제에 대한 개별 평가점수를 부여해야 함.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합산은 최고점과 최저점 1개씩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고, 그 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에는 순위와 상관없이 탈락하게 됨. 단, 평가를 실시한 평가위원이 5명 이하인 경우 최고·최저점을 제외하지 않음. 최종점수는 평가점수 및 가감점을 종합·산정하고 이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동점은 공고문이나 평가계획에서 달리 정하지 않았다면 `[붙임2] 동점자 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함. 또한, 평가위원장은 평가위원의 개별 평가의견 중 전체 또는 대다수의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의견을 종합·정리하여 종합평가의견*을 다시 작성해야 함

* 평가위원장이 작성한 종합평가의견만 추후 연구자에게 공개하게 되며, 평가대상 과제별 장·단점, 보완 및 개선할 점 등 연구자 컨설팅 중심의 의견으로 작성

〈 연구개발과제의 중복성 심의기준 및 방법 〉

1. 중복성의 판단요소

가. 연구목표,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2. 중복성의 판단기준

가.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중복과제로 판단함

다만, 경쟁이나 상호보완이 필요한 경우 또는 유사한 주제의 연구개발과제라 하더라도 연구목표, 연구수행 방식이나 연구단계 등이 다른 경우에는 중복되는 과제로 판단하지 않을 수 있음

3. 중복성의 예외

가. 정책적으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복수의 연구주체를 선정·추진하는 과제

나. 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 과정 또는 별도의 중복성 심의기구에서 중복성이 없다고 판정한 과제

4. 중복성 심의방법

가. 선정평가 대상과제에 대해 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를 통하여 연구 개발과제의 중복성 검토를 실시함

나.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에서 1차적으로 중복이 의심되는 과제는 연구책임자의 소명 내용을 토대로, 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 과제평가단에서 중복성 여부를 심의·판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 예비선정 대상과제 공고 기간 동안 접수된 중복성 의견은 연구책임자의 소명자료, NTIS 검토 결과, 과제평가단 및 외부 전문가 검토의견 등을 참고하여 전문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함 (단, 선정평가시 동일한 건으로 중복성이 소명된 경우에는 반려할 수 있음)

- (평가결과 종합) 전문기관은 선정평가계획, 과제별 최종점수, 당해 연도 연구비, 우선지원 순위 등을 종합한 선정평가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해당사업 담당과장)에게 보고해야 함
- (결과심의 및 예비선정과제 확정) 전문위원회는 선정평가 과정 및 결과의 타당성, 예비선정 대상과제와 지원액 등을 심의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위원회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예비선정 대상과제를 확정함
 - (예비선정공고) 전문기관은 모든 신청 연구책임자에게 평가결과를 통보 하고, 예비선정대상과제의 기본정보를 10일 간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www.htdream.kr)에 공개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전문기관의 장은 예비선정 대상과제의 연구책임자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수(3책5공) 확인과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및 예비선정 대상과제의 중복성에 대한 의견을 공문으로 접수받고, 접수사항을 반영한 예비선정공고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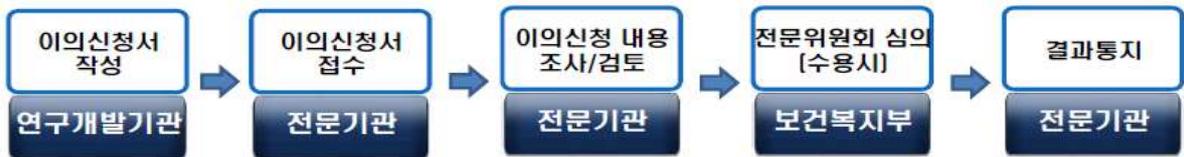
〈 이의신청 범위 및 절차 〉

1. 이의신청 범위

- 평가결과 의견 중 평가자의 결정적 오류가 발견되어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 연구개발과제(연구업적 등)의 내용을 명백히 잘못 해석하여 평가한 경우
- 전문기관의 명백한 행정오류의 경우
- 기타 이의신청의 타당성이 높은 경우
 - ※ 연구개발과제평가단·평가위원 선정, 연구비 결정, 평가규정 및 사전에 확정되어 안내된 절차, 평가방식(상대·절대·혼합, 서면·토론·발표, 블라인드, 평가단계 등)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불가

2. 이의신청 절차

-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 전문기관에서 우선 조사·검토하고,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전문위원회 심의를 실시함
 - ※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하지 않을 경우 전문기관에서 접수 반려하고, 전문위원회에서 타당성이 인정된 경우는 재평가를 실시함

- (최종선정 과제 확정) 최종선정이 확정된 과제는 보건복지부의 협약승인을 받아 최종확정 하고 주관연구개발기관 등에 지원확정 대상과제 통보 및 협약·연구비 지급 안내 공문을 통해 안내함
 - (연구개발계획서 보완) 전문기관은 보건복지부 협약승인 통보를 근거로 선정된 연구 개발기관의 장에게 평가의견 등을 반영하여 통보받은날로부터 20일 이내로 연구개발 계획서 수정 및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기간 내에 보완된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라. Q&A

Q1. 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에 적용되는 가점 항목 중 해당되는 항목이 있을 경우 가점 신청은 별도로 해야 하는 건가요?

- 가점 항목(연구개발과제의 가점 기준·방법) 적용대상에 해당되어도 제안요청서(RFP)에 해당 가점 항목이 적용 가점으로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 제안요청서(RFP)에 해당 가점 항목이 적용가점으로 명시된 경우 과제신청 시 별도의 첨부서류(양식·증빙)를 통해 가점 신청을 해주셔야 인정됩니다.

Q2. 공동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 중 최종평가 우수 가점 대상이 되는 사람은 과제 신청할 때 가점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 최종평가 우수 가점은 주관연구책임자로 과제 참여 시 적용되는 가점으로 주관연구책임자이외의 연구자(공동·참여 연구원)의 최종평가 가점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V-3. 선정 및 협약

Q3. 연구개발기관 유형별 연구책임자와 참여연구원의 동시수행과제수확인(3책5공) 구분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연구책임자와 참여연구원에 대한 3책5공 적용기준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구분	연구책임자	연구책임자 외 연구자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자
공동연구개발기관	참여연구자	

※ 위탁연구개발기관은 3책5공에 적용되지 않음

- 주관연구책임자로 수행 중인 과제나 신규로 신청하는 과제는 각각 1책 1공에 해당합니다.

※ (예시) A 연구자가 주관연구책임자로 2개 과제, 공동연구책임자로 1개 과제를 수행 중일 경우, 2책 3공에 해당(주관연구책임자의 경우 1책 1공에 모두 해당)

Q4. 신규과제에 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충족되어야 하는 조건이 있나요?

- 보건의료R&D 신규과제에 기업이 참여(주관, 공동, 위탁)하는 경우, 반드시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을 받은 기업만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 연구개발전담부서는 해당되지 않으며, 기업부설연구소가 아닌 경우는 사전검토 절차에서 연구개발기관 구성요건 미충족으로 탈락(평가대상과제 제외)됩니다.

Q5. 과제신청 완료 이후 수정(연구개발계획서·전산입력)이 가능한가요?

- 과제신청 마감(해당 공고 마감시간 기준) 전까지는 신청완료 이후 주관연구책임자 및 기관담당자(주관연구개발기관) 권한으로 완료 취소 이후 수정이 가능하며, **과제신청 마감 이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 기관인증 마감 기간에는 기관인증을 제외한 신청완료 과제 수정은 불가능하오니, **과제신청 마감시간까지 필수로 과제신청을 완료하여야합니다.**

[붙임 1]

연구개발과제 평가위원 선정기준

1. 평가위원 선정 원칙

가. 평가위원은 혁신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평가위원 후보자 중에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기술분야의 전문가 뿐 아니라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에 맞게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활용 할 수 있도록 한다.

- 1) 사업화 중심의 과제는 산업계 또는 사업화 전문가 참여를 원칙
- 2) 대형 연구개발과제 또는 국제 공동연구개발 과제의 경우에는 국외 전문가 참여를 권고

2. 평가위원 제외대상(제척기준)

구분	제척기준
필수 제척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평가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자
선택적 제척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평가대상 연구자와 「민법」에 따른 친족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사람 ② 서로 다른 두 건의 연구개발과제의 평가가 동시에 진행될 때 각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자가 그 서로 다른 연구개발과제를 평가하는 관계가 되는 경우의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자 ③ 평가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사람.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과, 학부(해당 학부에 학과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부서 등 최하위단위 부서에 같이 소속된 사람으로 한정하여 제외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에 따른 연구기관 ④ 해당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및 전문기관의 임직원(연구개발과제 기획·분석·평가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연구관리전문가는 제외한다) ⑤ 그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별도로 정하는 경우

V-3. 선정 및 협약

[붙임 2]

평가점수 산출 및 동점자 처리기준

※ 공고문 등에 달리 정하지 않은 경우 이 기준을 따름

구분	단일평가 방법 (ex. 서면, 발표, 현장 평가 중 하나만 실시)	혼합평가 방법 (ex.(1단계)서면+(2단계)발표+(3단계)현장평가 실시)	
		한 단계 평가점수만 반영하는 경우	모든 단계 평가점수를 반영하는 경우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일평가 방법을 실시하는 경우 • 서면평가를 서면검토로 대체하여, 평가점수를 산출하지 않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면, 발표평가 등 2개 이상의 평가에서 점수를 산출하나, 한 단계의 점수만 최종점수로 사용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면, 발표, 현장평가 등 각 평가방법에 점수 가중치를 부여하여 최종 점수를 산출하는 경우
최종점수 산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점수 - 평가위원 평가점수 중 최고, 최저 점수를 각각 제외한 점수를 산출 평균하여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를 절사 ※ 5명 이하인 경우 최고, 최저를 포함함 • 최종점수 - 평가점수 + 가감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점수 - 평가위원 평가점수 중 최고, 최저 점수를 각각 제외한 점수를 산출 평균하여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를 절사 ※ 5명 이하인 경우 최고, 최저를 포함함 • 최종점수 - (점수반영 평가단계) 평가점수 + 가감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점수 - 평가위원 평가점수 중 최고, 최저 점수를 각각 제외한 점수를 산출 평균하여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를 절사 ※ 5명 이하인 경우 최고, 최저를 포함함 • 최종점수 - (서면점수*A)+(발표점수+B)+(현장점수*C)+가감점 ※ 각 평가단계별 가중치(A, B, C)를 적용
동점자 처리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 평가점수에서 절사한 소수자리까지 포함하여 평가점수를 산출하고, 이에 따라 우선순위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 평가점수에서 절사한 소수자리까지 포함하여 평가점수를 산출하고, 이에 따라 우선순위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 최종점수에서 절사한 소수자리까지 포함하여 우선순위를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차 - 평가위원의 최고, 최저 점수를 전부 포함하여 평가점수를 산출하고, 이에 따라 우선순위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차 - 평가위원의 최고, 최저 점수를 전부 포함하여 평가점수를 산출하고, 이에 따라 우선순위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차 - 모든 평가점수에서 소수자리를 절사하지 않고 가중치를 적용한 최종 점수를 산출하여 우선 순위를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차 - 평가서 평가항목 중 점수배점이 가장 큰 평가항목의 점수를 비교하고, 이에 따라 우선 순위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차 - 최종점수에 반영되지 않는 평가점수를 절사한 소수자리 포함(1차), 평가위원 최고, 최저 점수 반영(2차) 등을 차례로 적용하여 평가점수를 산출하고, 이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차 - 평가위원의 최고, 최저 점수를 포함하여 모든 평가점수를 산출평균하고 소수자리를 절사하지 않고 가중치를 적용한 최종점수를 산출하여 우선 순위를 결정

V-3. 선정 및 협약

[붙임 3]

연구개발과제의 가감점 기준·방법

- ※ 가점 항목은 제안요청서(RFP)에 명시된 경우에 한해 적용
- ※ 가점·감점 적용 기준 : 연구개발과제 접수 마감일 기준
- ※ 가감점 적용은 최종점수 산정단계에서 부여
- ※ 최종평가가점, 연구성과 포상에 따른 가점, 보건의료기술진흥 유공자 가점이 동일 성과에 대한 가점인 경우는 1개 가점만 적용
- ※ 혁신형 제약/의료기기기업 가점을 적용 시에는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가점을 중복 적용하지 않음

가감점 항목		가감점수	적용대상	비고
최종평가 가점 (조기완료 포함)	우수	0.5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의 최종평가 등을 통해 가점을 득한 주관연구개발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에 주관연구책임자로 신청한 경우 * 단, 과제 신청마감일 기준 3년 이내 유효하며,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함. 또한 주관연구책임자로 2개 이상의 과제에 신청한 경우 1개 과제에만 가점을 신청할 수 있음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
연구성과 포상에 따른 가점		0.3	최근 3년 이내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7조제4항에 따라 포상을 받은 연구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에 주관연구책임자로 신청한 경우(복지부 성과에 한함) - 훈장, 포장, 대통령 표창에 한함 * 단,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함. 또한, 주관연구책임자로 2개 이상의 과제에 신청한 경우 1개 과제에만 가점을 신청할 수 있음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
보건의료기술 진흥 유공자 가점		0.3	최근 3년 이내에 「보건의료기술진흥 유공 정부포상」을 수상한 연구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에 주관연구책임자로 신청한 경우 - 훈장, 포장, 대통령 표창에 한함 * 단,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함. 또한, 주관연구책임자로 2개 이상의 과제에 신청한 경우 1개 과제에만 가점을 신청할 수 있음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선정 가점		0.3	최근 3년 이내에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선정된 연구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에 주관연구책임자로 신청한 경우(복지부 성과에 한함) * 단,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함. 또한, 주관연구책임자로 2개 이상의 과제에 신청한 경우 1개 과제에만 가점을 신청할 수 있음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
기술이전. 기술료 납부실적 우수 연구자 가점		0.5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연구성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적이 있는 주관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로 신청한 경우 - 최근 3년 이내에 (동일한 과제를 수행한 수행기관 이외의 기관(기업)과) 기술실시 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 - 최근 3년 이내에 (동일한 과제를 수행한 수행기관 이외의 기관(기업)과) 2건 이상의 기술이전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
보안과제 수행 연구책임자		0.3	최근 3년 이내에 협약한 연구개발과제로서 협약시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 * 단,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함. 또한, 주관연구책임자로 2개 이상의 과제에 신청한 경우 1개 과제에만 가점을 신청할 수 있음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

V-3. 선정 및 협약

가감점 항목	가감점수	적용대상	비고
중소기업 또는 사업재편계획 승인 기업	0.5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기업 역할 제고를 위한 특별법」제10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을 승인 받은 기업이 연구개발기관에 포함된 경우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
국제공동연구 연구개발비 일부 부담	0.5	국제공동연구 중 외국의 정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연구개발과제인 경우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가점	0.3	최근 3년 이내「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3에 따라 선정된 우수 기업부설연구소가 소속된 기업이 참여기업에 포함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
혁신형 제약기업 가점	0.5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라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이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에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가점	0.5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라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이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에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16조
여성과학자 육성 가점	0.3	여성이 주관연구책임자로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에 신청하거나 과제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30퍼센트 이상인 경우 * 단, 총 연구수행기간 동안 이를 유지해야 하며, 평가 분야별 선정과제수가 5개 이상일 경우에만 부여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지역인재 육성 가점	0.3	지방소재 대학* 및 기업(연구소 소재지 기준) 소속 연구자가 주관연구책임자로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에 신청한 경우. 단, 총 연구수행기간동안 이를 유지해야 함 * 지방소재 대학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이외 소재 대학. 단, 5개 과학기술특성화 대학 제외함. (KAIST, GIST, DGIST, UNIST, 포항공대) * 평가 분야별 선정과제수가 5개 이상일 경우에만 부여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
연구중심병원 가점	0.5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 받은 병원이 신규과제의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단, 주관연구책임자가 연구중심병원 소속 핵심연구인력인 경우에 한함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17조
보건 신기술(NET) 가점	0.5	「보건의료기술진흥법」제 8조에 따라 보건 신기술(NET) 인증을 취득한 기업이 해당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 단, 과제신청시 보건신기술 인증기간이 유지되고 있는 기업에 한함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8조
연구포기·중단경력 감점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하여 제재처분을 받은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경우 * 참여제한 종료일 이후 3년간 유효함	혁신법 시행령 제12조제5항 및 [별표 6] 참여제한 처분기준
연구부정행위에 따른 감점	5	연구부정행위로 제재처분을 받은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경우 * 참여제한 종료일 이후 3년간 유효함	

[붙임 4]

성차의학(Sex specific medicine) 관련 체크리스트

성차의학 관련 체크리스트			
사업명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전체 연구개발기간			

* 비임상 동물실험 및 임상시험 시 남녀(성/젠더(sex, gender))간의 병리 및 약리 기전, 질병 특성의 차이에 대한 임상 근거 확보를 하고자하는 연구에 해당 시 작성

1. 연구 설계 단계에서 성/젠더 특성 차이를 검토하였는가?
 - () 검토하였고 연구계획에 반영함.
 - () 검토하였으나 여건상 반영하지 못함. → 이유 제시한 후 5번으로 이동
 - () 해당사항 없음. → (근거 :)
2. 연구 대상 선정 과정이나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 성/젠더 균형 혹은 특성을 고려할 계획인가?
 - () 고려할 계획임 → 해당 내용이 있는 연구계획서 쪽수 제시
 - () 고려하려 하였으나 여건상 고려하지 못함. → 이유 제시
 - () 해당사항 없음. → (근거 :)
3. 연구 수행과 결과 도출, 논문 발표 과정에서 성/젠더 별로 나누어 분석할 계획인가?
 - () 성/젠더 별로 나누어 분석할 계획임. → 해당 내용이 있는 연구계획서 쪽수 제시
 - () 해당사항 없음. → (근거 :)
4. 연구결과 활용 방안을 성/젠더 특성에 따라 제시할 계획인가?
 - () 성/젠더 특성에 따라 제시할 계획임. → 해당 내용이 있는 연구계획서 쪽수 제시
 - () 해당사항 없음. → (근거 :)
5. 연구팀이 연구 수행 과정에서 성/젠더특성 차이를 고려하는 원리와 방법을 교육받았는가?
 - () 교육 받았음.
 - () 교육 받을 예정임.
 - () 여건상 교육받지 못함.
 - () 계획 없음.
6. 연구팀의 구성 시 연구원의 성별 균형을 고려하였는가?
 - () 고려하고 연구계획에 반영함. → 공동연구원 수와 그 중 여성연구원 수 기술
 - () 고려하였으나 여건상 반영하지 못함 → (이유 :)
 - () 고려하지 않음. → (근거 :)

년 월 일

연구개발기관명 :
(직인)

연구개발기관의 장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귀하

3.2 과제협약

1. 개요

가. 주요목적

□ 협약체결

- 선정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전문기관과 연구개발기관(주관, 공동, 위탁)간 협약을 체결
- 연구개발과제 수행계획, 중앙행정기관·전문기관의 권한·의무 및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자의 권리·의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관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하위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을 포함

나. 법적근거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연구개발과제 협약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0조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이 선정된 때에는 선정된 연구개발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약의 기간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으로 한다.

1. 연구개발과제 수행 계획(제13조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을 포함한다)
2.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의무 및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자의 권리·의무
3.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
4.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협약 당사자는 연구개발기관을 추가·변경하거나 연구책임자, 연구개발 목표, 연구개발비, 연구개발기간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협약의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협약 당사자 간의 통보로 해당 연구개발과제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2조제3항 또는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가 중단된 때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 협약을 해약하고 연구개발비 정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3조(연구개발과제협약의 체결) ① 법 제1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
2. 제33조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등록·기탁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정보의 수집·활용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
4. 「과학기술기초법」 제28조에 따른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확충·고도화 및 관리·활용에 관한 사항
5.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연구 안전에 관한 사항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협약(이하 “연구개발과제

V-3. 선정 및 협약

협약"이라 한다)을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평가 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체결해야 한다.

③ 연구개발과제협약의 표준 서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연구개발과제협약의 변경 등) ① 연구개발과제협약의 한쪽 당사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협약의 상대방에게 연구개발과제협약의 변경 사유와 내용을 사전에 문서로 명확히 알리고 상호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연구개발과제의 추진 방법의 변경
2.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연구책임자는 제외한다)의 변경
3. 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의 변경(간접비 및 연구수당을 늘리는 사항은 제외한다)
4. 연구개발기관의 연락처, 연구지원을 전담하는 인력(이하 "연구지원인력"이라 한다)의 변경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변경
5.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효율적이고 쉬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별도로 정한 사항
6.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12조제3항 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변경하게 되어 연구개발과제협약의 변경이 필요한 사항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통합정보시스템에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등록하는 방법으로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할 수 있다.

3)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정부는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으로 연도별·분야별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 등과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호의 기관 중 법인이 아닌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와 협약을 맺을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5.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의료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

③ 제2항에 따른 연구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이나 기업의 기술개발비로 충당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협약을 맺거나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출연금을 지급할 때 특정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른 연구과제의 선정 방법 및 협약의 체결 방법과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사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조(협약의 체결 방법) ①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협약(이하 "연구개발협약"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연구개발기관"이라 한다)의 장과 체결한다. 이 경우 연구에 드는 비용이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이나 기업의 기술개발비(현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와 미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 연구개발협약의 표준 서식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협약의 체결 방법에 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에 따른다.

V-3. 선정 및 협약

5)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 제14조(협약의 체결 및 변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할 경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연구개발기관의 장 또는 사업단장에게 협약의 체결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협약의 표준 서식은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별표 2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④ 전문기관의 장(제5조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업무를 대행하는 사업단장을 포함한다)은 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을 대행하여 협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 ⑤ 전문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해당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보건복지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⑥ 전문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해당 협약을 변경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협약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되거나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안과제에 준하는 과제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의 협약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협약 체결

가. 추진절차

추진 절차	주요내용
<p style="text-align: center;">지원확정 통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연구개발기관
<p style="text-align: center;">계획서 수정·보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정·보완 및 전산제출 기간 : 평가결과를 통보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 연구개발과제평가단 평가의견을 반영하여 계획서 보완
<p style="text-align: center;">협약체결·연구비 지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약체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모든연구개발기관(주관, 공동, 위탁) ○ 평가결과를 통보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연구비 지급)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모든연구개발기관(주관, 공동, 위탁)

나. 협약 안내사항

□ 청년인력 신규채용 현금부담금 감면 연계 제도

- 과제를 수행하는 중견·중소기업이 청년인력(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참여연구원)을 1명 이상 신규채용시, 현금부담금을 해당 인건비만큼 현물로 대체할 수 있음
- 해당 인력은 1년 이상 고용유지하여야 하며, 인건비 집행액이 기관부담현금의 감액분에 미치지 못한 때에는 정산 시 그 차액만큼 반납
 - * 희망기관은 '청년인력 신규채용 실적·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 수정계획서에 반영

□ 연구책임자 연구비 사용 교육 필수 이수

- 연구비 사용에 대한 연구책임자의 책임감 및 윤리의식 고취를 위해 연구비 사용 교육을 연구개시 후 3개월 이내에 이수하여야 함(미이수 시 연구비 일시적 집행 중지)

□ 연구중심병원 연구인력 변경 사전승인

- 연구중심병원은 연구인력* 변경 시 전문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 연구중심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22-142호) [별표 1]에 따른 연구전담의료인,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연구관리 직원을 말함

3. 협약 변경

가. 협약변경유형

□ 중요한 협약의 변경(승인사항)

조기종료/연구중단	1. 연구목표 조기달성 2. 불가항력에 의한 연구중단 3. 연구책임자의 신분변동 4. 연구책임자의 과제수행 포기 등
연구개발기관의 추가·변경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의 추가·변경 모두 해당
연구책임자의 변경	주관뿐만 아니라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 위탁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변경도 해당 ※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2호에서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
연구개발 목표의 변경	연구개발과제 목표의 변경 모두 해당
연구개발기간의 변경	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기간의 변경 모두 해당
연구개발비의 변경	1.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연구개발비 총액(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의 총액을 말한다)을 변경하려는 경우 2. 연도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또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변경(현금부담금액과 현물부담금액의 변경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3.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간접비 총액(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단계의 간접비 총액을 말한다)을 증액하려는 경우(단, 간접비 고시 비율 내) 4. 영리기관이 현금으로 계상하려는 인건비를 변경하려는 경우 5. 연구시설·장비와 관련된 변경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원래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새로 구입하거나 임차하려는 경우 나. 원래계획에 반영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변경하여 구입하거나 임차하려는 경우 다. 원래계획에 반영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구입 또는 임차하지 않으려는 경우(원래계획에 따라 구입하거나 임차하려던 연구시설·장비를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을 통하여 다른 기관으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라. 연구시설·장비 구축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로 구축된 연구시설·장비를 원래계획에 따른 공간 외의 장소에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6. 영리기관의 장이 연구활동비 중 연구실운영비를 원래계획과 다르게 변경하려는 경우 7. 위탁연구개발비를 원래계획의 20퍼센트 이상 증액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8.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원래계획과 다르게 변경하려는 경우(단, 환율의 변동만으로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9. 해당 단계의 연구개발비 중 직접비(현물은 제외한다)를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V-3. 선정 및 협약

□ 경미한 협약의 변경(통보사항)

-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미한 사항(①~⑤)이나 사전 협의가 필요하지 않은 사항(⑥, ⑦)의 변경은 협약 당사자 간의 통보만으로도 협약이 변경됨
- 이는 협약 변경 시마다 발생하는 불필요한 행정소요를 경감하기 위함임

통보만으로 협약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

< 부처·전문기관 ↔ 연구개발기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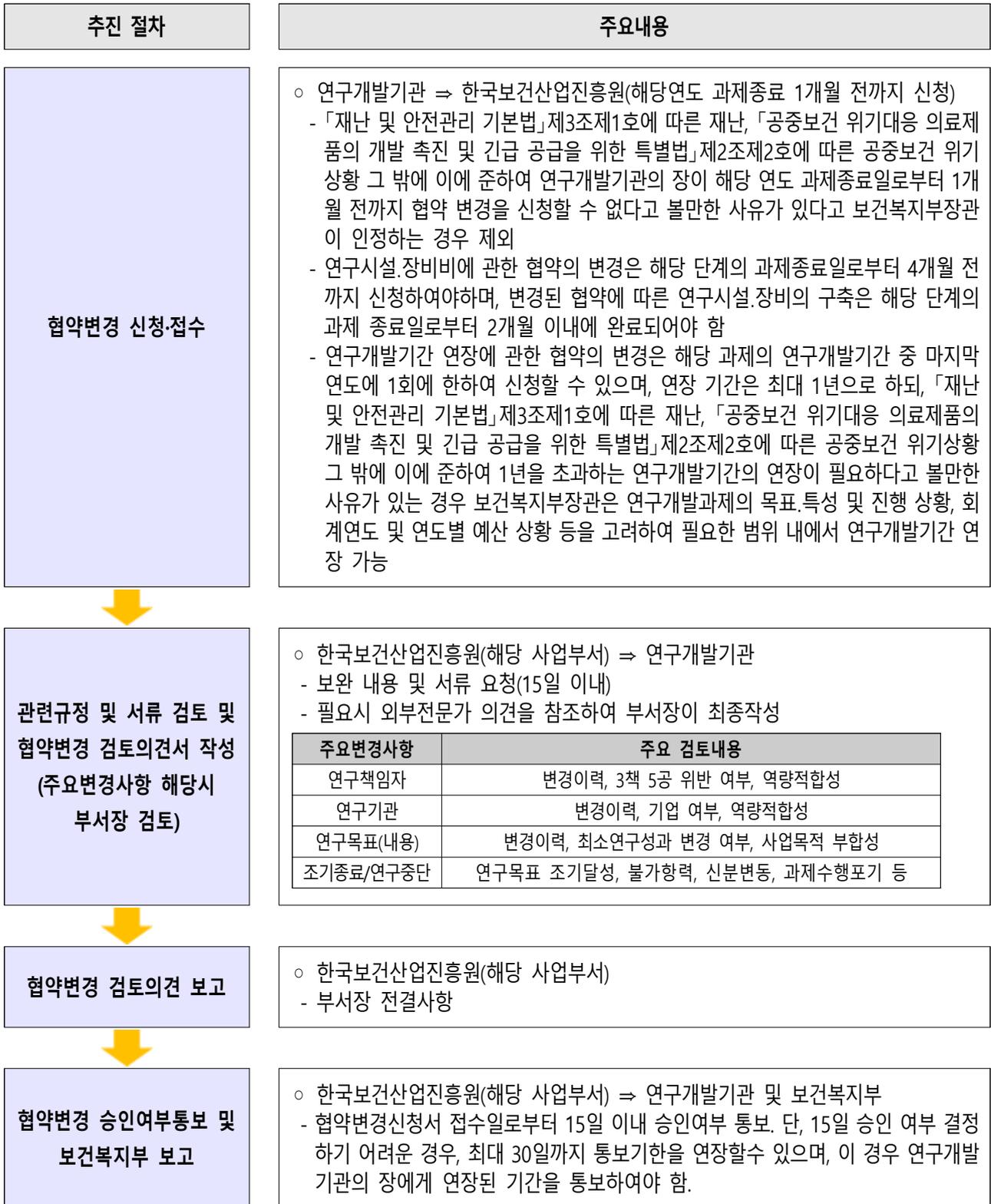
- ① 연구개발과제의 추진 방법의 변경
- ②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연구책임자는 제외)의 변경
- ③ 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의 변경(간접비 및 연구수당 증액은 제외)
- ④ 연구개발기관의 연락처, 연구지원인력의 변경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변경
- ⑤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효율적이고 쉬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별도로 정한 사항의 변경

< 부처·전문기관 → 연구개발기관 >

- ⑥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변경하는 경우
- ⑦ 특별평가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 목표, 연구책임자 등을 변경하는 경우

V-3. 선정 및 협약

나. 협약변경절차



V-3. 선정 및 협약

다. Q&A

Q1. 공동연구개발기관 또는 위탁연구개발기관의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과 별도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나요?

-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 또는 위탁연구개발기관 간에 별도의 협약을 체결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동연구개발기관 및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정의에 있는 ‘연구개발과제협약’은 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13조 등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전문기관)과 연구개발기관이 체결하는 협약을 의미하므로, 공동연구개발기관 및 위탁연구개발기관이 협약하는 대상은 중앙행정기관(전문기관)입니다.

Q2. 같은 연구개발기관이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서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또는 위탁) 연구개발기관으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나요?

- ex) A대학이 B과제에서 주관연구개발기관인 동시에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수행*
- ex) A대학이 C과제에서 공동연구개발기관과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 동시에 수행*
- ex) A대학이 D과제에서 공동연구개발기관1과 공동연구개발기관2로 동시에 수행*

- 수행할 수 없습니다.
※ 협약 체결의 대상은 연구자가 아닌 연구개발기관이므로, 하나의 과제에서는 하나의 연구개발기관을 대상으로만 협약 체결 가능

Q3. 연구개발기관의 기관장이 변경된 경우에도 협약 변경이 필요한가요?

- 연구개발기관의 기관장 변경은 경미한 협약의 변경사항(실무 상 통보사항)으로 협약 당사자 간의 통보만으로도 협약이 변경됩니다. 경미한 협약 변경의 통보 방식은 변경사항에 대한 사실을 간략하게 담은 공문(직인본) 등을 통해 전문기관에 보고합니다. 사안에 따라 통합정보시스템에 해당 변경 사항 정보를 등록하는 것만으로 상호 통보한 것으로 같음할 수 있습니다.

V-3. 선정 및 협약

[붙임 2-1]

연구개발기관 변경 동의서

사 업 명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개발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개발기간			
해당 단계 연구개발기간			

본 연구개발기관은 상기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과제의 연구개발기관 변경 사항에 동의합니다.

아울러 동 과제가 당초 협약내용에 따라 과제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변경 후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와 협력하고, 동 과제와 관련한 일체의 내용을 누설하거나 도용치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변경 전·후 기관의 양도·양수에 관한 사항은 기관간 협의하여 정한다.

구분	변경 내용	
	변경 전	변경 후
연구개발기관명		

연구개발기관의 장 : (직인)
 연구책임자 : (인)

※ 동 서식은 주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 중 기관이 변경되는 경우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타 기관의 사전 동의를 위한 것임

V-3. 선정 및 협약

[붙임 2-2]

변경 후 기관(기업) 현황 (기업 변경 시)

□ 기업 현황

(기준일자)

설립년월일			주된업종	업
기업유형		- 중소기업 <input type="checkbox"/> - 중견기업 <input type="checkbox"/> - 대기업 <input type="checkbox"/> - 기타 <input type="checkbox"/>	상시종업원수	명
재무	총 자산	백만원	주요생산제품	
	자기 자본	백만원		
	전년도 매출액 (20년)	백만원		
	당기순이익	백만원		

□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조직) 현황(해당 시)

연구소(실) 명				설립년월일				
연구전담요원수 : 명(박사: 명, 기술사: 명, 석사: 명, 기사1급: 명 포함)								
연구개발현황	과거의 실적	과제명	수행기간	실용화 여부				
				추진중	생산중			
	현재 진행상황	과제명	착수년도	연구비의 자원(백만원)				
				자체자금 융자	정부출연 보조			
	기술보유현황	○						
		○						
○								

V-3. 선정 및 협약

[붙임 2-3]

변경 후 연구책임자 현황 (연구책임자 변경 시)

인적사항

성 명	국 문	직 위 (급)	
	영 문		
소속기관	기관명		
	주 소	(전 화 : -)	(Email : -)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생년월일	(만 세)		

학 력

년도 (부터 - 까지)	학 력	전 공	학 위
-			
-			
-			

경 력

년도 (부터 - 까지)	기 관	직위(직명)	비 고
-			
-			
-			

주요 연구업적 (최근 3년간 당해과제와 직접 관련된 사항만 기재)

연구제목	주요 내용	연구 기간	발표서적 또는 학술지명 (년도, 권호포함)	연구수행 당시의 소속기관	역할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연구비 지급기관	비고

* 비고란에는 지식재산권 출원, 취득 등 특기할 만한 사항을 기록함

V-3. 선정 및 협약

[붙임 2-4]

연구(내용/기간) 변경 사유 및 향후 추진 계획			
과 제 명		과제번호	
주관연구기관		총연구기간	0000.00.00 ~ 0000.00.00
주관연구책임자			
변경 사유			
<input type="checkbox"/> 주관 ○ 변경 사유 - 내용 <input type="checkbox"/> 공동 ○ 변경 사유 - 내용 ...			

V-3. 선정 및 협약

향후 추진 계획													
<input type="checkbox"/> 주관 <input type="radio"/> 추진 계획 <input type="radio"/> 추진 일정													
연구내용	0차년도 (20__ .01.01.~20__ .12.31)												
	당초 일정	월별 추진 일정											
		1	2	3	4	5	6	7	8	9	10	11	12
연구내용	00차년도 (20__ .01.01.~20__ .12.31)												
	변경 일정	월별 추진 일정											
		1	2	3	4	5	6	7	8	9	10	11	12
<input type="checkbox"/> 공동 <input type="radio"/> 추진 계획 <input type="radio"/> 추진 일정													
연구내용	0차년도 (20__ .01.01.~20__ .12.31)												
	당초 일정	월별 추진 일정											
		1	2	3	4	5	6	7	8	9	10	11	12
연구내용	00차년도 (20__ .01.01.~20__ .12.31)												
	변경 일정	월별 추진 일정											
		1	2	3	4	5	6	7	8	9	10	11	12

V-3. 선정 및 협약

[붙임 2-5]

연구개발비 변경 현황
(※ 주관연구개발기관만 작성합니다)

(단위 : 원, %)

항목	구분	연구개발비 현황					증감 사유
		전단계 이월액 (해당 시) ①	당초 연구개발비 ②	변경 연구개발비 ③	발생이자 중 연구개발비 산입금 ④	소계 ⑤ (①+② +③+④)	
가. 직접비	현금						
	현물						
	소계						
1) 인건비	현금						
	현물						
2) 학생인건비	현금						
3) 연구시설·장비비	현금						
	현물						
4) 연구재료비	현금						
	현물						
5) 국제공동연구개발비	현금						
6) 연구개발부담비	현금						
7) 연구활동비	현금						
	현물						
8) 연구수당	현금						
나. 간접비	현금						
	소계						
합계	현금						
	현물						
	합계						

※ 연구개발비 변경 현황은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및 위탁연구개발기관의 금액을 합산하여 기재합니다.

V-3. 선정 및 협약

[붙임 2-6]

이월 승인 요청서(단계 이월 해당)

- 사업명 :
- 연구개발과제명 :
- 전체 연구개발기간 :
- 단계 연구개발기간 :
- 주관연구개발기관명(연구책임자) :
- 공동연구개발기관명(연구책임자) :

1. 이월 요청 내역

(단위: 원)

해당 기관	항목	전단계 이월금	당해 단계 예산	연구 개발 기간 중 발생 이자	사용 금액	사용 잔액	이월 요청 금액	이월 사유 (근거서류 별첨 필수)	사용계획 (공문 별첨 필수)
주관연구 개발 기관명	연구활동비						50,000	예시) 외국으로부터 구입 물품 배달 지연으로 연구비 미집행 (근거서류: 계약서 별첨)	
''									
공동연구 개발기관명	연구재료비							예시) 자연재해 또는 화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연구비 미집행(근거서류: 계약서 별첨)	
''									

※ 별첨 : 계약서, 카탈로그, 견적서, 내부 결재 받은 문서 등 관련 설명 자료 일체 첨부

상기와 같이 ○○○○○사업 ○○○○○과제 수행에 따른 이월금을 차단계로 이월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주관연구개발기관장 : (직인)

주관연구책임자: (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귀하

[붙임 2-7]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사업명 (RFP)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개발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명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전체 연구개발기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자의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를 중요시하며,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제19조, 제20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및 제24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제7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아래 사항을 충분히 읽어 보신 후, 동의하시는 경우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참여제한, 채무불이행 정보 등 신용조회 및 기타 연구개발과제 선정을 위한 자격요건 확인
- 평가위원 선정 시 평가대상과제와의 이해관계 (참여연구자 등) 여부의 확인
- 과제 협약 및 협약변경, 보고서 제출, 단계·최종·특별평가, 성과조사 및 평가 관리
- 연구책임자를 포함한 참여연구자의 연구비 사용·정산, 제재부가금 부과,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
- 만족도 조사, 사업 및 경영활동 안내 등 사후 관리
- 연구개발정보의 검증

수집하는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항목

- 개인 성명(영문), 성별, 생년월일, 국가연구자번호, 소속기관, (주택, 직장) 주소, (사무실, 휴대폰)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학력(학교, 전공, 학위, 연구분야 등), 경력, 특허/논문 실적,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실적, 현재 수행 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 전체 인건비 계상률, 지급기준 정보(연봉; 월 수령가능금액 등), 연구개발비 지출을 위한 신용카드 및 금융거래내역, 채무불이행 정보 등 재무건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용정보 등 인적사항, 전자세금계산서의 거래내역, 과세정보(연구개발비 지급 심사에 필요한 과세정보에 한함)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보유·이용 기간 : 동의서가 작성된 시점부터 상기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수집·이용 목적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여부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국가연구자번호 처리 동의

국가연구자번호 처리 목적

- 참여제한, 채무불이행 정보 등 신용조회 및 기타 사전지원제외, 사후관리 대상 여부의 확인
- 평가위원 선정 시 평가대상과제와의 이해관계 (참여연구자 등) 여부의 확인

국가연구자번호 보유·이용 기간 : 동의서가 작성된 시점부터 상기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 국가연구자번호 수집·이용 동의 여부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4. 연구시설·장비

1. 개요

가. 주요목적

□ 연구시설·장비

-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 선정 평가시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연구시설·장비 구축 계획의 타당성을 평가
 -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연구시설장비는 연구개발과제 평가 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이 구축계획의 타당성을 평가
 - 1억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는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에서 구축계획의 타당성을 평가(과기정통부 심의)

<연구시설장비 심의체계>

구분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자체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주최 (주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중앙행정기관 (연구관리 전문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
심의범위	국가연구개발사업 (정부위탁연구사업/ 연구기관기본사업)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	국가연구개발사업 (정부위탁연구사업),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연구시설장비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기관기본사업),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연구시설장비

- 구축예정인 연구시설장비의 활용 촉진을 통한 연구성과 창출을 위해 연구개발과제 협약시 `연구시설·장비의 관리·활용' 계획 작성 (혁신법 제11조)
 -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협약시 `연구개발계획서'에 `연구시설·장비의 관리·활용' 관련 세부내용 작성
 - `연구시설장비 관리·활용 세부사항'은 `연구개발계획서'에서 정의하고 있는 `연구시설·장비 구축·운영 계획'을 작성
 - ※ 연구시설장비에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과기정통부 고시)'를 준수

4. 연구시설·장비

나. 법적근거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0조(연구개발과제 및 수행 연구개발기관의 선정)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이하 "선정평가"라 한다)를 거쳐 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적·성격을 고려하여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중 일부 또는 전부를 평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1조(연구개발과제 협약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0조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이 선정된 때에는 선정된 연구개발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약의 기간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으로 한다.

4.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2조(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선정평가) ② 법 제10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선정평가 대상 연구개발과제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됐거나 추진되고 있는 다른 연구개발과제와의 차별성
2. 연구개발과제 관련 연구시설·장비 구축계획의 타당성
3. 연구개발과제의 국내외 연계·협력 가능성

제13조(연구개발과제협약의 체결) ① 법 제1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
2. 제33조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등록·기탁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정보의 수집·활용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
4.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에 따른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확충·고도화 및 관리·활용에 관한 사항

3)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제3조(적용대상) 이 지침의 적용대상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하였거나 구축할 예정인 구축비용 3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연구시설장비로 한다.

제5조(연구개발과제평가단)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부위탁연구사업 중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연구시설장비 구축계획이 포함된 경우 혁신법 제14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연구시설장비를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4)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별지1>서식 _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표준협약서

제18조(연구시설·장비의 등록·관리) 연구시설·장비의 등록·관리에 관하여는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와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행정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연구시설·장비

다. 주요용어

용어	설명	비고
1 연구시설·장비	○ 연구개발활동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며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능과 환경을 구현하는 '연구시설'과 '연구장비'를 총칭함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제2조
2 연구장비	○ 1백만원 이상의 구축비용이 소요되며, 1년 이상의 내구성을 지닌 과학기술화동을 위한 유형의 비소비적 자산을 말함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제2조
3 연구시설	○ 특정 목적의 연구개발활동(시험, 분석, 계측, 교육, 훈련 등)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중 하나의 형태로 이루어진 독립적인 연구공간을 말함 - 하나의 거대 연구장비 - 복수의 연구장비를 결합한 하나의 시스템 - 공동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장비들을 한 곳에 집적화한 단위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제2조
4 국가연구시설장비 심의위원회 (이하 '심의위원회')	○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하는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구축타당성을 검토·심의함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제2조
5 연구개발과제평가 단	○ 정부위탁연구사업 중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연구시설장비의 구축타당성을 검토·심의함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제2조
6 자체연구시설장비 심의위원회	○ 연구기관의 장은 이미 구축한 연구시설장비의 효율적 활용 및 연구기관기본사업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연구시설장비의 심의와 구축된 3천만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의 활용·처분 등을 검토·심의함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제2조
7 연구시설·장비중 합정보시스템 (ZEUS)	○ 연구개발시설·장비의 관리·운영 및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정보시스템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제2조

2. 주요내용

가. 심의대상

-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하는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도입
 - 연구시설장비의 구축비용과 세금, 운송비용, 설치비용, 설비비용 등의 부대비용 전체를 총구축비용으로 산정하며, 하나의 연구시설장비로 심의
 - 단, 아래 표의 경우 연구시설장비 심의대상에서 제외

심의제외대상

- ① 연구시설 구성요소 중 토지, 건물 및 부대시설
(시설 작동에 필수적이지 않은 부대시설을 말함)
- ② 사전검토한 결과 '심의 제외'로 반려한 경우
- ③ 오피스관련, 그래픽, 설계, 분석·해석, 데이터베이스 등을 위한 전문·범용 소프트웨어
- ④ 국방 또는 국가안전보장과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1) 혁신법 제21조제2항 및 혁신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과제를 주로 수행하기 위한 연구시설장비
 - 2) 「보안업무규정」제4조 및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분류되거나 비밀에 준하여 대외비로 분류된 과제를 주로 수행하기 위한 연구시설장비
 - 3)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주관하는 기관 자체 심의 절차를 거쳐 국방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보안 연구시설장비
- ⑤ 3천만원 미만인 동일 모델 연구시설장비를 단순히 여러 대 구매하여 합계가 3천만원이 넘는 연구시설장비
- ⑥ 단순 유지보수를 위하여 연구시설장비의 구성요소의 변경이 있는 경우

- 다수의 재원으로 구축하는 연구시설장비 중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비가 1억원 이상 투입되는 연구시설장비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연구시설장비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 「국가연구개발사업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제9조(심의대상)

4. 연구시설·장비

나. 심의요청

□ 심의위원회 및 과제평가단 심의 요청

○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연구시설장비를 도입하려는 경우 다음에 따라 심의를 요청해야 함

구분		주요내용
심의 위원회	본심의	다음 연도 연구시설장비 구축예산 반영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시점
	상시심의	해당 연구시설장비가 포함된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및 협약체결 이후 연구시설장비 발주 및 구매요구 이전 시점.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의 확인이 있는 경우 협약체결 이전에도 심의요청 할 수 있음
연구개발과제평가단		해당 연구시설장비가 포함된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시점
협약변경 (전문기관 승인사항)		해당 연구시설장비가 포함된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및 협약체결 이후 변경사항 발생 시, 연구시설장비 발주 및 구매요구 이전 시점

○ 심의요청 시 최종(단계) 과제 종료 시점(2개월 전)에 임박하여 연구시설장비가 구축되지 않도록 심의에 소요되는 일정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함

□ 심의결과 변경 요청

○ 심의 이후, 다음의 사유에 의해 심의결과(도입인정, 조건부인정에 한정)에 변경이 있는 경우, 심의결과 변경을 요청하여야 함

- 환율변동, 사양조정 등으로 연구시설장비 총 구축비용이 20%이상 변경된 경우
- 해당 모델 단종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동등 사양(구성, 성능)의 유사 모델로 변경되는 경우
- 구축시기 또는 구축소요기간이 변경되는 경우
-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제10조(심의요청)

4. 연구시설·장비

다. 심의방법

□ 심의체계

-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1억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구축하려는 경우
 - 심의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을 따름
- (연구개발과제평가단(전문기관))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연구시설장비 구축계획이 포함된 경우
 - ※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중에서 연구시설장비 관련 전문성을 갖춘 1인 이상을 지정하여야 함

□ 심의 시 고려사항

-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하여야 하며, 정책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
 - 사업(연구) 부합성, 연구시설장비의 중복성, 연구시설장비의 활용성, 연구시설장비의 적정성, 연구시설장비 운영의 계획성 등
 - ※ 「국가연구개발사업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제11조(심의방법)

라. 심의결과

□ 심의위원회 및 과제평가단 심의 결과

- 연구시설장비의 심의결과에 대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로 의결함

심의결과	의결내용
도입 인정	심의항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구축타당성이 인정되고 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된 경우
조건부 인정	구축 타당성이 인정되나 금액 및 수량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도입 불인정	심의 사유의 타당성 또는 구축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조건부 인정' 또는 `도입 불인정'으로 결정된 연구시설장비에 대해서 공동활용장비 이용, 리스·렌탈 이용, 장비사양 조정, 장비 변경 등에 대한 권고 및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음

□ 심의결과 이의신청

- `조건부 인정' 또는 `도입 불인정'으로 결정된 검토결과에 대하여 결과통보일로부터 별도로 지정한 기간동안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1회에 한정)
- 심의위원회 및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은 이의신청된 연구시설장비에 대하여 재검토 실시
 - 이의신청 접수마감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검토의견을 해당 연구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 ※ 「국가연구개발사업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제12조(심의결과)

4. 연구시설·장비

마. 구축 및 등록

□ 연구시설장비 구축

- 연구기관의 장은 심의위원회 및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심의결과에 따라 연구시설장비를 구축
-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시설장비의 구축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변경한 후 15일 이내에 포기사유, 포기 결과에 따른 연구비 반영 여부 등을 ZEUS에 입력하여야 함
※ 「국가연구개발사업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제15조(구축)

□ 연구시설장비 등록

- 연구기관의 장은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와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장비를 자산등재 완료 후 30일 이내에 ZEUS에 등록하여야 함
-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시설장비 도입 완료 후 ZEUS에서 연구장비에 발급하는 국가연구장비정보등록증 발급여부, 연구시설에 부여하는 국가연구시설관리번호 부여여부를 점검하여야 함
- 연구기관의 장은 ZEUS에 등록된 연구장비의 전자인식표 등을 발급받아 해당 연구장비에 부착하여 관리하여야 함
※ 「국가연구개발사업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제20조(정보등록)

바. Q&A

Q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정으로 연구시설·장비 관리와 관련하여 변경되는 사항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상에는 과제선정 및 협약 단계에서 ‘연구시설장비 구축계획의 검토’사항을 정의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전주기 관리사항은 기존 ‘과기기본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지침내용을 따릅니다.

Q2. 연구시설장비 관리·활용 세부사항은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 ‘연구개발계획서’에 ‘연구시설장비 구축계획’ 및 ‘연구시설장비 운영·활용계획’을 작성하는 것으로,
- 구축계획에는 장비명, 구축방식, 규격, 수량, 비용,기간, 장소 등을 명시하고 활용 및 운영계획에는 명칭, 운영기간, 연간운영비용, 전담인력수, 활용계획, 설치장소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 연구시설·장비

[별표 1] 연구시설장비 심의요청서(3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0000년 연구시설장비 심의요청서(3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연구시설·장비의 개요

구분		내용						
과제명								
연구시설 장비명	한글	※ 연구시설·장비 국문 명칭을 기재						
	영문	※ 연구시설·장비 영문 명칭을 기재						
담당자		소속	이름		연락처	이메일		
제조사 및 모델명 (입찰예정이면 제작사 및 모델명을 2개 이상 작성)		제작국가명		제작사명		모델명		
취득방법 (해당란에 '○' 표시)		구 매	임 대	제작의뢰	자체제작	기 타(직접 기재)		
구축비용 (단위 : 백만 원)		단가	수량	총금액	'00년 정부출연금 신청금액	'00년 자체 부담 금액 (매칭펀드로 구축하는 경우)	적용환율 (외자일 경우)	연도별 분할납부 금액 및 임대료 (분할납부예정 또는 임대일 경우)
							'00년	'00+1년
구축일정		발주예정일			설치예정일			
		YYYY-MM-DD ~ YYYY-MM-DD			YYYY-MM-DD ~ YYYY-MM-DD			
구축장소 (수량별 구축장소가 다른 경우 구분하여 작성)		설치예정 지역명		설치예정 기관명		설치예정 세부 장소(건물명 등)		
연구시설장비 용도		○ - ※ 장비의 측정 목적, 피시험물, 취득하고자 하는 결과물 등 자세하게 기재						
		분석	시험	교육	계측	생산	기타	
		(해당란에 '○' 표시)					※ 직접기재	
주요사양		○ - ※ 제작사가 제공하는 주요 사양을 5가지 이상 기재 ※ 심의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게 사양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기재. 품목의 특성 및 성능을 구체적으로 기재						
외산장비 도입 필요성		○ - ※ 제작사가 외국기업인 경우 작성						

4. 연구시설·장비

□ 연구시설·장비 구축의 목적 및 내용

구 분	내 용												
사업(연구) 부합성	○ - ※ 신청 장비 도입이 본 사업(연구) 내용 중 어떤 부분과 연관성이 있는지 기술 ※ 사업(연구)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장비인지 기술												
연구장비의 중복성	○ - ※ 동일기관, 타기관에서 해당장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장비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기술												
연구장비의 활용성	○ - ※ 동 사업(연구)에서 활용 계획 및 방법 작성 ※ 동 사업(연구)에서 활용도가 높은 장비인지 기술. 해당사업(연구) 종료 후 타 사업(연구)에서도 활용이 가능한 장비인지 기술 ※ 구축 후 타기관과의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인지 기술. 가능한 경우 주요활용 기관명(예상)을 작성												
연구장비의 적정성	○ - ※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적합한 구성(Specifications) 및 성능(Performance)의 장비인지 기술 ※ 신청한 연구시설·장비 가격의 적정성에 대하여 기술(기구축 동일 장비 가격, 타 제작사 장비 가격과 비교 하는 등) ※ 신청 수량이 2개 이상인 경우 본 연구 관련하여 신청 수량만큼 필요한 타당한 이유를 기술												
장비운영의 계획성	신청 연구시설장비의 전문기술인력 확보 현황(계획)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0%;">구분 (신규, 기존)</th> <th style="width: 20%;">성명 (채용예정자는 000)</th> <th style="width: 20%;">소속부서명</th> <th style="width: 20%;">최종학위 (고졸, 학사, 석사, 박사)</th> <th style="width: 20%;">고용형태 (정규직, 계약직)</th> <th style="width: 10%;">담당장비수 (신청장비 포함)</th> </tr> </thead> <tbody> <tr>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r> </tbody> </table>	구분 (신규, 기존)	성명 (채용예정자는 000)	소속부서명	최종학위 (고졸, 학사, 석사, 박사)	고용형태 (정규직, 계약직)	담당장비수 (신청장비 포함)						
	구분 (신규, 기존)	성명 (채용예정자는 000)	소속부서명	최종학위 (고졸, 학사, 석사, 박사)	고용형태 (정규직, 계약직)	담당장비수 (신청장비 포함)							
○ - ※ 신청한 연구시설장비의 구축과 운영을 위한 설치공간 확보방안을 기술 ※ 신청한 연구시설장비의 운영비(운영인력 인건비, 유지보수비 등) 확보방안을 기술 ※ 연구과제(사업) 종료 후의 운영(활용) 계획을 기술													

4. 연구시설·장비

[별표 2] 연구시설장비 심의요청서(1억원 이상)

0000년 연구시설장비 심의요청서(1억원 이상)

I. 사업 개요

사업 일반사항

부 처 명				
세부사업명	※ '00년 사업별 예산요구서상의 세부사업명을 기재			
회 계 명 (해당란에 '○'표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기금일 경우 기금명 기재)	
사업분류 (해당란에 '○'표시)	정부위탁연구사업		연구기관기본사업	
부처 또는 전문기관 사업담당자	성명	직장전화	휴대전화	이메일주소

내역사업 및 과제 목록(연구시설장비를 신청한 과제만 작성)

(단위 : 백만원)

순번	내역사업명 (‘00년 사업별 예산요구서상의 내역사업명을 기재)	과제명	‘00년 연구비		총연구기간	‘00년 연구기간	‘00년 해당년차 (0차년도)
			정부 출연금	자체 부담금			
1					YYYY-MM-DD ~ YYYY-MM-DD	YYYY-MM-DD ~ YYYY-MM-DD	
2							
3							

과제별 연구책임자(연구시설장비를 신청한 과제만 작성)

순번	과제명	‘00년 연구시설 장비 신청건수	연구책임자				
			성명	소속기관명	직장전화	휴대전화	이메일주소
1							
2							

4. 연구시설·장비

< 참고 - 세부사업명 및 내역사업명 작성 예시 >

세부사업명 예시	내역사업명 예시
산업기술거점기관지원	세라믹종합지원센터 지원
	지능형자동차 상용화 연구기반구축
에너지자원융합원천기술개발	미래선도기술개발
	에너지효율향상
원예특작시험연구	온난화대응농업연구
	인삼특작시험연구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주요사업비	기관목적사업(바이오 인프라 구축사업)
	창의연구사업
	시설비(시설보수 및 장비교체)

II. 0000년 연구시설·장비 구축 개요

□ 구축신청 연구시설장비 목록

(단위 : 백만원)

순번	과제명	연구시설장비명	총구축 비용	'00년 정부출연금 금액	비고 (매칭펀드, 분할납부, 임대 등 특이사항)
1		○○○			
2		□□□			
3		△△△			

- ※ 0000년 예산으로 구축예정인 1억원 이상 모든 연구시설·장비를 기재. 소프트웨어의 경우 장비 운용에 관련된 소프트웨어만 해당하며, 장비와 관련 없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소프트웨어는 제외
- ※ 매칭펀드로 구축하는 연구시설장비일 경우 비고란에 자체부담금을 작성 요망
- ※ 연구시설장비 구축비용을 분할납부할 경우 비고란에 총금액과 연도별로 납부할 금액을 구분하여 작성 요망
- ※ 임대일 경우 비고란에 구입할 경우 가격과 임대비용을 구분하여 작성 요망

[별첨] 연구시설·장비별 구축계획서 각 1부. 끝.

- ※ 구축신청 연구시설장비 목록상의 연구시설장비별로 구축계획서를 각각 작성 요망

4. 연구시설·장비

[별첨-00] 연구시설·장비별 구축계획서

※ 상기 "별첨-00"에서 별첨번호 00는 연구장비에산심의요청서의 "구축신청장비 목록"과 동일한 번호로 기재 요망

1. 연구시설·장비 개요

연구시설장비 분류

분류1(기술분야) (해당란에 '○'표시)	기초과학	생명	해양	우주·천문	에너지	환경	기계부품 소재	정보전자 통신	
분류2(연구시설장비표준분류) (해당항목 선택)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류3(사용용도) (해당란에 '○'표시)	시험용	분석용	교육용	계측용	생산용	기타(직접기재)			
분류4(중점투자분야) (해당란에 '○'표시)	주력기간산업 기술 고도화		신산업 창출 핵심기술개발 강화		글로벌 이슈 대응 연구개발 추진		국가주도기술 핵심역량 확보		기초과학·융합 기술 연구개발 활성화
분류5(활용목적) (해당란에 '○'표시)	공동활용서비스 (Public Use)			공동활용허용 (Joint Use)			단독활용 (Private Use)		

※ 분류 I (기술분야)는 1차 심의분과를, 분류 II (연구시설장비표준분류) 2차 심의분과를 결정함

예비타당성조사 여부, 사전기획 여부 및 수요조사 실시 여부

예비타당성조사 여부 (해당란에 '○'표시)	실시	미실시	사전기획 여부 (해당란에 '○'표시)	실시	미실시	수요조사 여부 (해당란에 '○'표시)	실시	미실시

※ 사전기획 여부를 '실시'로 선택한 경우, 사전기획보고서를 첨부 요망(5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는 필수 제출)

※ 수요조사 여부를 '실시'로 선택한 경우, 수요조사 결과를 첨부 요망(공동활용 가능성이 높은 장비를 도출하고 장비 도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해 수요조사 실시)

4. 연구시설·장비

□ 연구시설장비 구축 개요

구분		내용						
과제명								
연구시설 장비명	한글	※ 연구시설장비 국문 명칭을 기재						
	영문	※ 연구시설장비 영문 명칭을 기재						
제작사 및 모델명 (입찰예정이면 제작사 및 모델명을 2개 이상 작성)		제작국가명		제작사명		모델명		
		국산	대한민국					
		외산	미국					
취득방법 (해당란에 '○' 표시)		구 매	리 스 ¹⁾	렌 탈 ²⁾	제작의뢰	자체제작	기 타(직접 기재)	
구축비용 (단위 : 백만원)		단가	수량	총금액	'00년 정부출연금 금액	'00년 자체부담 금액 (매칭펀드로 구축하는 경우)	적용환율 (외자일 경우)	년도별 분할납부 금액 및 임대료 (분할납부예정 또는 임대일 경우)
								'00년
								'00+1년
구축일정		발주예정일			설치예정일			
		YYYY-MM-DD ~ YYYY-MM-DD			YYYY-MM-DD ~ YYYY-MM-DD			
구축장소 (수량별 구축장소가 다른 경우 구분하여 작성)		설치예정 지역명		설치예정 기관명		설치예정 세부 장소(건물명 등)		
연구시설장비 용도		○ -						
주요사양		○ ※ 심의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게 사양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기재. 품목의 특성 및 성능을 구체적으로 기재 ※ 견적서 필수 첨부(6개월 이내). 견적서는 장비를 구성하는 세부 구성품명과 구성품별 금액을 구분하여 제시 요망. 견적서에 장비 총금액만 제시할 경우 불인정. 입찰예정인 경우 업체별 견적서를 2개 이상 첨부 ※ "A System = (a 社 + b 社 + …)"로 구성되는 경우 각 제조사별 사양을 상세하게 구분하여 작성하고, 각 제조사별 견적서를 반드시 첨부						

1) 리스 : 장기간 임대(소유권 : 임대인, 관리권·사용권 : 임차인)

2) 렌탈 : 단기간 임대(소유권·관리권 : 임대인, 사용권 : 임차인)

4. 연구시설 · 장비

2. 신청 연구시설장비 중복성 자체검토(ZEUS 검색)

- 중복성은 ‘ZEUS 연구장비 중복성 검토(red.zeus.go.kr)’에서 중복성을 자체 검토한 후 중복성검토확인서 발급
- 중복성검토확인서 발행시 저장된 ‘대체가능장비 목록’을 아래 표에 작성하거나 엑셀파일로 별도 제출

순번	장비명	제작사	모델명	취득 연도	취득 금액 (단위 : 백만원)	설치 기관명 (설치 지역)	지역 중복 여부 1)	공동 활용 여부 2)	장비 등록 번호 3)	신청기관의 자체검토 의견	검색 키워드
1	한글명 영문명									○ ※ 검색된 동일·유사장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한 장비를 구축해야만 하는 타당한 이유를 기재(차별성, 구축가 수요에 따른 구축 필요성 등)	※ ZEUS 검색창에 한 입력 텍스트
2											
3											
4											
5											
6											

※ ZEUS 연구시설 · 장비종합정보시스템(www.zeus.go.kr)에서 장비명(한글, 영문), 제작사, 모델명 등으로 동일·유사장비를 검색

1) 지역중복여부 : 동일지역, 인근지역, 타 지역 중 택 1

- 동일지역 : 신청 장비의 설치예정 지역과 동일한 지역 (17개 시·도 기준임.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에 있는 장비인 경우. 구입수량이 여러 대여서 설치예정 지역이 여러 지역인 경우, 그 중 하나의 지역이라도 동일하면 동일지역으로 기재
- 인근지역 : 신청한 장비의 설치예정 지역과 동일지역은 아니지만, 동일광역권(5+2 광역경제권 기준)에 있는 장비인 경우

▶수도권 : 서울, 인천, 경기	▶충청권 : 세종, 대전, 충남, 충북	▶호남권 : 광주, 전남, 전북	▶대경권 : 대구, 경북
▶동남권 : 부산, 울산, 경남	▶강원권 : 강원	▶제주권 : 제주	

- 타 지역 : 동일지역, 인근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장비인 경우

4. 연구시설·장비

- 2) 공동활용여부 : ZEUS 검색 시 제공되는 ‘활용범위’란의 정보를 기재(공동활용서비스, 공동활용허용, 단독활용)
- 3) 장비등록번호 : ZEUS에 등록된 연구장비의 고유번호임 (예 : NFEC-2014-01-123456)

3. 연구시설장비구축의 목적 및 내용

구 분	내 용
사업(연구) 부합성	<p>○ -</p> <p>※ 신청장비 도입이 본 사업(연구) 내용 중 어떤 부분과 연관성이 있는지 기술 ※ 사업(연구)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장비인지 기술</p>
국가전략적 필요성	<p>○ -</p> <p>※ 최근 수립된 국가대형연구시설구축지도(NFRM), 과학기술기본계획,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계획, 소관 부처별 중·장기 R&D 계획 등과 관련하여 필요성이 높은 장비인지 기술 ※ 신청장비를 활용하여 세계를 주도할 수 있는 연구분야가 있어 국가위상 및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지, 확정된 연구개발 계획 또는 국제협약 이행을 위해 시급히 구축해야 하는 장비인지 기술</p>
연구장비의 중복성	<p>○ -</p> <p>※ 동일기관, 타기관에서 해당장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장비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기술</p>

4. 연구시설 · 장비

구분	내용												
	<p>※ 동일·유시장비가 있을 경우, 신청장비의 차별성과 추가적인 수요 등 동일·유시장비가 있더라도 추가로 구축해야 하는 이유를 기술. “2. 신청 연구시설장비 중복성 자체검토(ZEUS 검색)” 내용을 포괄하여 작성</p>												
연구장비의 활용성	<p>○</p> <p>-</p> <p>※ 동 사업(연구)에서 활용도가 높은 장비인지 기술. 해당사업(연구) 종료 후 타 사업(연구)에서도 활용이 가능한 장비인지 기술</p> <p>※ 구축 후 타기관과의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인지 기술. 가능한 경우 주요활용 기관명(예상)을 작성</p>												
연구장비의 적정성	<p>○</p> <p>-</p> <p>※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적합한 구성(Specifications) 및 성능(Performance)의 장비인지 기술</p> <p>※ 신청한 연구시설장비 가격의 적정성에 대하여 기술(기구축 동일장비 가격, 타 제작사 장비 가격과 비교하는 등)</p> <p>※ 신청 수량이 2개 이상인 경우 본 연구 관련하여 신청 수량만큼 필요한 타당한 이유를 기술</p>												
장비운영의 계획성	<p>신청 연구시설장비의 전담운영인력 확보 현황(계획)</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0%;">구분 (신규, 기존)</th> <th style="width: 20%;">성명 (채용예정자는 000)</th> <th style="width: 15%;">소속부서명</th> <th style="width: 20%;">최종학위 (고졸, 학사, 석사, 박사)</th> <th style="width: 15%;">고용형태 (정규직, 계약직)</th> <th style="width: 20%;">담당장비수 (신청장비 포함)</th> </tr> </thead> <tbody> <tr>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r> </tbody> </table>	구분 (신규, 기존)	성명 (채용예정자는 000)	소속부서명	최종학위 (고졸, 학사, 석사, 박사)	고용형태 (정규직, 계약직)	담당장비수 (신청장비 포함)						
	구분 (신규, 기존)	성명 (채용예정자는 000)	소속부서명	최종학위 (고졸, 학사, 석사, 박사)	고용형태 (정규직, 계약직)	담당장비수 (신청장비 포함)							
<p>○</p> <p>-</p> <p>※ 신청한 연구시설장비의 구축과 운영을 위한 설치공간 확보방안을 기술</p> <p>※ 신청한 연구시설장비의 운영비(운영인력 인건비, 유지보수비 등) 확보방안을 기술</p> <p>※ 신청한 연구시설장비의 운영을 위한 전담운영인력 확보방안을 기술하고, “신청 연구시설장비의 전담운영인력 확보 현황(계획)” 표에 연구시설장비 전담운영인력의 구체적인 사항을 기술</p> <p>- 전담운영인력은 연구시설장비에 대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보유하고, 연구시설장비의 운용(연구시설장비 작동, 데이터 분석 및 결과해석, 시료전처리 등) 및 유지관리(연구시설장비 상태 최적화 유지, 소모품 및 부속품의 정기적 교체) 업무 등을 주업무로서 전담하는 자(연구개발활동을 일부 보조업무로서 하는 자도 포함 가능)</p> <p>- 삭제</p> <p style="margin-left: 20px;">① 삭제</p> <p style="margin-left: 20px;">② 삭제</p> <p style="margin-left: 20px;">③ 삭제</p> <p style="margin-left: 20px;">④ 삭제</p> <p>- 5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는 전담운영인력이 필수</p> <p>※ 신규 채용예정자의 경우 SEE 장비사관학교의 인재찾기 서비스 지원 및 채용담당자 정보제공</p> <p>※ 구축된 연구시설·장비를 ZEUS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시 전문기술인력 정보를 함께 등록</p> <p>※ 연구과제(사업) 종료 후의 운영(활용) 계획을 기술</p>													

5. 연구개발비 집행·관리

5.1 개요

가. 주요목적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고시)」 전문에 따라 연구개발비 지급·사용·정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

※ 본 가이드라인은 연구개발비 집행·관리와 관련하여 관련 법규상 명시되지 아니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이 외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나. 법적근거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등) ①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는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목적·성격 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비의 지급 횟수, 시기, 지급조건·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

③ 연구개발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구성하며, 그 사용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직접비: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있는 비용
2. 간접비: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 할 수 없는 비용

④ 연구개발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고시하는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계상·사용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른 직접비·간접비의 계상한도 및 인정기준, 비용 정산의 방법·절차
2. 연구개발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
3. 연구개발비 사용 계획의 변경을 위하여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연구개발기관은 제20조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연구개발비를 사용·관리하여야 한다.

⑥ 연구개발기관은 매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사용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개발비 정산을 실시하여야 하며, 정산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⑧ 제6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내역 보고, 제7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정산·회수 등의 세부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연구개발비 집행·관리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0조(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등)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용도는 별표 2와 같다.

② 삭제

③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발생한 이자는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1.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 산입
2. 연구개발에 재투자
3. 연구개발성과의 창출 지원, 보호 및 활용 역량의 강화
4. 국고에 납입
5.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용도

④ 법 제13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학생인건비 사용에 관한 사용 기준
2. 연구시설·장비 사용에 관한 사용 기준
3.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별 집행 절차

제24조(연구개발비의 관리)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관리하는 경우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연구개발과제마다 별도의 계정을 생성하여 그 계정과 연결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이하 “연구개발비카드”라 한다)를 발급받아야 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지출하는 경우 연구개발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연구개발비를 지출해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비카드의 사용 또는 계좌이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현금을 사용하여 연구개발비를 지출할 수 있다.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지출하는 경우 그 근거가 되는 증명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연구개발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로 한정한다)의 형태로 연구개발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증명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통합 계좌를 개설하여 연구개발비를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연구개발기관이 제19조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25조(연구개발비의 사용내역 보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별로 연도별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연도별 연구개발기간 종료일까지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등록하는 방법으로 보고할 수 있다.

제26조(연구개발비의 정산 등)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가 끝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에 해당 단계의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와 사용실적(제20조제3항에 따른 이자 총액과 그 사용용도와 사용실적을 포함한다)을 적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보고서에 적힌 사용용도와 사용실적이 제20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이하 “사용용도”라 한다)와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이하 “사용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는 방법으로 법 제13조제7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정산을 실시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의 제출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법 제13조제7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정산을 실시할 수 있다.

1. 법 제4조 단서의 기본사업에 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
2. 법 제25조에 따른 연구지원체계평가 결과가 우수한 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
3. 그 밖에 자체 정산 역량을 충분히 갖춘 것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정산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7항에 따른 정산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

5. 연구개발비 집행·관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회수해야 한다. 다만, 법 제4조 단서의 기본사업에 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그 금액을 회수하지 않는다.

1. 직접비 사용 잔액(제20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사용 기준이 적용되는 학생인건비 또는 연구시설·장비비는 제외한다)
2. 제2항에 따른 정산 결과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위반하여 사용한 연구개발비 전액
3. 직접비 집행비율이 100분의 50 이하인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 집행비율이 직접비 집행비율을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text{간접비 총액} \times (\text{간접비 집행비율} - \text{직접비 집행비율})$$

4.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협약이 해약된 경우에는 간접비 사용 잔액
 5. 연구개발기관이 제19조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간접비 사용 잔액
-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회수한 연구개발비를 국고에 납입해야 한다.

3)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고시) [전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3조제4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의 사용 기준 등 연구개발비에 관련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이하 생략 -

다. 주요용어

용어	설명	비고
1 영리기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 공기업(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대기업(중소기업, 중견기업 및 공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조
2 비영리기관	○ 영리기관이 아닌 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조
3 간접비비율	○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동안의 간접비를 직접비 중 현물 부담액과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를 제외한 금액(이하 "수정직접비"라 한다)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조
4 정산	○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협약이 해약되거나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가 종료(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의 종료를 말한다)되었을 때 연구개발기관이 사용한 연구개발비가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와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부합하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조

5.2 연구개발비 집행 · 관리

1. 추진절차

추진 절차	주요내용
협약체결 및 연구비 지급 ※	○(협약)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 ↔ 모든연구개발기관(주관, 공동, 위탁) ○(연구비 지급) 진흥원 → 모든연구개발기관(주관, 공동, 위탁)
연구수행 ※	○연구개발기관(주관, 공동, 위탁)
① 상시점검 ※	○위탁정산기관* ↔ 연구개발기관(주관, 공동, 위탁) * 진흥원이 지정한 위탁정산기관(이하 '위탁정산기관')
② 사용실적보고서 접수 및 정산 ※	○연구개발기관(주관, 공동, 위탁) → 진흥원 또는 위탁정산기관 ※ 협약기간(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 각 단계가 끝나는 날) 종료 후 3개월 이내 ○진흥원 또는 위탁정산기관이 정산 실시
③ 결과 통보 ※	○진흥원 또는 위탁정산기관 → 연구개발기관(주관, 공동, 위탁)
④ 이의신청 ※	○연구개발기관(주관, 공동, 위탁) → 진흥원
⑤ 연구개발비 회수 ※	○연구개발기관(주관, 공동, 위탁) → 진흥원
⑥ 현장점검 (필요시) ※	○진흥원 → 연구개발기관(주관, 공동, 위탁)
⑦ 정산완료 보고 및 국고 반납	○진흥원 → 보건복지부

5. 연구개발비 집행·관리

2. 주요 추진내용

가. 상시점검

※ 1. 추진절차 상 '① 상시점검' 관련

□ 정의

- 위탁정산기관이 지정받은 위탁정산 대상과제를 연구수행기간 중 통합Ezbaro시스템을 통하여 연구개발기관의 집행정보를 조회·보완 요청하는 업무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82조(연구개발비 상시점검)

□ 세부내용

- 위탁정산기관은 지정받은 연구개발과제를 연구수행기간 중 통합Ezbaro시스템 상시점검 관리 메뉴를 통하여 상시점검 시행
 - 연구수행 중 집행내역(결과)에 대한 미비 사항을 사전에 점검(관리)하여 추가 및 보충하여 집행내역 보완
 - 위탁정산기관은 상시점검 관리 화면을 통해 증빙내역을 검토하여 점검상태가 '미흡'인 집행 건에 대해 연구개발기관에 보완을 요청하며, 보완이 완료되면 확인완료 처리함
- 상시 점검사항 및 기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을 준용하며, 통합Ezbaro시스템을 통한 집행내역 및 증빙자료 검토를 통하여 점검 실시
 - ※ 상시점검 결과 '미흡'인 과제의 조치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정산 시 불인정 회수될 수 있으며, 관리 점검 대상이 되는 연구기관의 경우, 현장점검 우선 실시 예정

나. 정산 및 결과통보

※ 1. 추진절차 상 '② 사용실적보고서 접수 및 정산 및 ③ 결과 통보' 관련

□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 보고

- 연구개발기관은 협약기간(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 해당 각 단계의 연구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내용을 포함하여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을 진흥원 또는 위탁정산기관으로 통합Ezbaro 시스템을 통하여 보고해야 함

※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연구기관의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 현물 부담 이행 확인서(해당시) 제출

□ 연구개발비의 정산

- 진흥원 또는 위탁정산기관은 연구개발기관이 제출한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근거하여 적정사용 여부를 검토함

□ 결과 통보

- 진흥원은 정산결과를 반영하여 연구개발비 회수 금액(사용잔액 반납액, 부적정 사용금액, 발생이자 반납액)을 결정하여 연구개발기관 장에게 통보

5. 연구개발비 집행·관리

다. 이의신청

※ 1. 추진절차 상 '④ 이의신청' 관련

- 연구개발기관은 정산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정산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신청 하여야 하며, 1회에 한함
 - 이의신청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별지 7호]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문으로 신청하며, 이의신청 사유는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 관련 법규·기준을 위반한 부적정 사용금액 및 단순 민원사항은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
- 진흥원 또는 위탁정산기관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검토 후 최종 집행잔액을 확정하여 연구개발기관에게 통보함

라. 연구개발비 회수

※ 1. 추진절차 상 '⑤ 연구개발비 회수' 관련

- 연구개발기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제7항에 의거하여 정산 결과에 따른 최종 연구개발비 회수 금액을 진흥원의 반납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반납하여야 함
- 진흥원은 연구개발비 회수 통보 후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비 회수 금액을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반납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독촉할 수 있음
 - ※ 미회수 금액(체납액), 반납기한(독촉 안내일로부터 10일 이내), 반납기한까지 미납시 채권추심 등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포함하여 독촉
- 서면 독촉에도 불구하고 통보된 연구개발비 회수 금액을 반납하지 아니하면 채권추심 등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채권추심은 채권추심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하 '채권추심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채권추심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연구개발비 회수 금액 등에서 차감하여 처리할 수 있음
- 채권추심기관으로부터 추심불능채권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연구개발비 미회수 금액 추심조치를 종료할 수 있음
- 연구개발기관이 부도·폐업·파산 또는 이에 준하는 경영 악화에 처하거나 재난, 재해, 그 밖에 경제적·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회수 금액을 제때 반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등의 제출 조건으로 연구개발기관의 장의 신청을 받아 회수 금액의 반납기한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거나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할 수 있음

마. 현장점검

※ 1. 추진절차 상 '⑥ 현장점검(필요시)' 관련

- 진흥원은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점검·정산 과정에서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와 사용기준 위반이 의심되는 등 필요한 경우 연구비의 집행중지, 자료 제출, 현장점검을 할 수 있음

- 연구개발비 정산결과 정부출연금 총액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적정 사용금액으로 확정된 경우
- 상시점검 사·미흡·과제 조치가 완료되지 않고 정산 시 불인정 회수 조치된 경우
- 연구비 용도 외 사용으로 참여제한 및 출연금 환수 등 제재조치 검토 대상인 경우
- 기타 진흥원이 연구개발비 관리 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5. 연구개발비 집행·관리

바. 정산완료 보고 및 국고반납

※ 1. 추진절차 상 '㉞ 정산완료 보고 및 국고 반납' 관련

- 진흥원은 정산결과를 보건복지부에 보고하고, 기 반납된 연구개발비 회수 금액 등 정산 관리계좌 잔액을 국고반납 조치

※ 국고반납 시 정산 관리계좌 발생이자를 포함하여 반납

사. 기타

□ 위탁정산수수료 산정

- 연구개발기관(주관)은 당해연도 연구개발비 현금(정부출연금+기관부담현금, 전년도 이월액 제외) 기준으로 위탁정산수수료를 산정

※ 직접비 내 연구활동비에 계상하며, 연구개발기관(주관)은 공동과제 수를 확인하여 가산금이 적용된 정산 수수료를 재확인

- 정산수수료의 납입은 협약기간 종료 전 위탁정산기관으로 입금하되, 불가피한 경우 사용 실적보고서 제출 전까지 납입을 완료

아. Q&A

Q1. 정산의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과제는? 연구개발비 정산을 면제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지?

-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조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는 연구개발과제(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가 종료되면 정산을 실시하여야 함

※ 단, 연구지원체계평가가 우수한 기관이 수행한 경우, 자체정산역량이 충분한 것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기관이 수행한 경우에는 사용실적보고서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정산할 수 있음

Q2.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의 주기는?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서,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각 단계가 종료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 즉,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는 단계별로 이루어지며, 이는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사용내역 입력과는 별개임

Q3. 직접비 사용비율 등은 연차별 계산해야 하는지? 단계별 계산해야 하는지?

- 연구수당 지급비율, 직접비 사용(집행)비율, 간접비 사용비율 등은 연구개발비의 정산 기간에 부합하게, 연구개발과제(단계로 구분되는 해당 단계)별로 산출

6. 과제 평가·관리

6.1 개요

1. 연구개발과제의 평가

가. 주요목적

단계평가

- 단계종료 시 연구수행 과정, 연구결과 및 향후 연구계획 등을 토대로 과제 진행 현황을 평가하여 과제의 계속 진행 여부를 결정, 계속 과제에 대해 성공적인 과제 수행을 지원

최종평가

- 연구 종료 후 최종 목표의 달성 여부, 연구수행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연구결과 의 의의 및 성과 활용·확산과 관련한 의견 제시

특별평가

-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하거나 연구책임자에게 참여제한이 확정된 경우, 연구개발 환경이 변경되었거나 연구개발과제 목표를 조기에 달성한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여부를 결정

나. 법적근거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①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구개발기관과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는 연구개발 기간을 여러 단계로 구분하여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 연구개발성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단계평가(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가 끝나는 때에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최종평가(연구개발기간이 끝나는 때에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평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단계평가 또는 최종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보완·변경·중단하거나 연구개발비를 감액·증액할 수 있으며, 최종평가 결과에 따라 후속 연구개발과제로의 연계 등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는 매년 해당 연도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대한 보고서(이하 "연차보고서"라 한다)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가 끝나는 때에는 단계보고서(해당 단계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대한 보고서를 말한다)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연구개발기간이 끝나는 때에는 최종보고서(전체 연구개발기간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대한 보고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연도의 연차보고서는 제출된 것으로 본다.

⑥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된 이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연구개발성과의

6. 과제 평가·관리

활용에 대한 보고서(이하 "성과활용보고서"라 한다)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에게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⑧ 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의 중단 요건,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서의 세부내용 및 제출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선정평가, 단계평가, 최종평가 및 제15조제1항에 따른 특별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이하 이 조에서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평가단은 평가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추진하려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취지, 목적 등을 고려하여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구개발과제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평가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은 평가단에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모 외의 방법으로 선정한 연구개발과제나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안과제는 평가단을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평가단 구성 시 제2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단의 평가 결과를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별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단의 평가 결과를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확정된 평가 결과를 해당 연구개발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⑧ 평가단의 구성 기준, 제4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이하 "특별평가"라 한다)를 거쳐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 목표, 연구책임자 등을 변경하거나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평가의 실시를 통보받은 연구개발기관은 평가의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그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연구개발비를 추가적으로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에서 제31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가 발생한 경우

2.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연구책임자의 국가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참여제한이 확정된 경우

3. 연구개발 환경이 변경되어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른 요청을 인정한 경우

5.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이 법 또는 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 목표 또는 연구책임자 등의 변경을 요청하거나 연구개발과제의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1. 연구개발 환경이 변경되었거나 연구개발과제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여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변경 및 중단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6조(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등) ① 법 제12조제2항 본문에서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 연구개발성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평가사항을 말한다.

1.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 및 수행 내용

6. 과제 평가·관리

2.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결과 및 목표 달성 정도
 3. 연구개발성과 및 관련 분야에 대한 기여 정도
 4. 연구개발성과의 관리 및 활용 계획
 5. 법 제12조제2항 본문에 따른 단계평가(이하 "단계평가"라 한다) 이후의 연구개발과제 수행계획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단계평가 또는 법 제12조제2항 본문에 따른 최종평가(이하 "최종평가"라 한다)의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급을 분류할 수 있다. 다만,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이 부적절하고 연구개발성과가 그 수행계획에 비하여 매우 미흡한 경우에는 극히 불량 등급을 정하여 그 등급으로 단계평가 또는 최종평가의 결과를 평가하도록 분류해야 한다.
- ③ 법 제12조제2항 단서에서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평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가 보안과제로 분류된 경우
 2. 대상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평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가 1억원 이하인 경우

제17조(연구개발과제의 평가에 따른 조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단계평가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중단할 수 있다.

1. 극히 불량 등급인 경우
 2.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4조의3제3항에 따라 공고된 연구수행의 지속가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중단하려면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과제의 중단 등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미리 통지해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된 연구개발과제의 중단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통지내용의 재검토를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최종평가 결과가 우수한 연구개발과제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자에게 적절한 포상을 할 수 있다.

제18조(연구개발과제 수행 관련 보고서의 세부내용 등) ①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연차보고서(이하 "연차보고서"라 한다)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수행내용 및 결과
 2. 향후 연구개발과제 수행계획
- ② 법 제12조제5항 전단에 따른 단계보고서(이하 "단계보고서"라 한다)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2.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 및 수행내용
 3.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결과 및 목표 달성 정도
 4. 연구개발성과 및 관련 분야에 대한 기여 정도
 5. 연구개발성과의 관리 및 활용 계획
 6. 향후 연구개발과제 수행계획
- ③ 법 제12조제5항 전단에 따른 최종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2.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 및 수행내용
 3.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결과 및 목표 달성 정도
 4. 연구개발성과 및 관련 분야에 대한 기여 정도
 5. 연구개발성과의 관리 및 활용 계획
- ④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는 법 제1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연차보고서·단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연차보고서: 연도별 연구개발기간 종료일까지
 2. 단계보고서: 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가 끝난 날
 3. 최종보고서: 연구개발과제협약 종료일 후 60일
- ⑤ 법 제12조제6항에 따른 성과활용보고서(이하 "성과활용보고서"라 한다)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개발성과의 구체적 내용 및 활용 실적
 2. 연구개발성과의 과학적·기술적·사회적·경제적·지역적 파급효과
 3. 그 밖에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활용 등 성과활용보고서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6. 과제 평가·관리

<p>연구개발성과</p> <p>⑥ 연차보고서·단계보고서·최종보고서 및 성과활용보고서의 표준 서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p> <p>제29조(평가 결과의 통보) ① 법 제14조제5항에서 “해당 연구개발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선정평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신청한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 2. 단계평가·최종평가·특별평가: 평가를 받은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 <p>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p> <p>제30조(이의신청)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이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청인의 성명·명칭 및 주소 2.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 3. 통보된 평가 결과 4.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p>제31조(특별평가의 실시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특별평가를 실시하려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특별평가 실시 시기 2. 특별평가 실시 사유 3. 소명 자료의 제출 시한 4. 특별평가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과제가 변경되거나 중단될 수 있다는 사실 <p>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변경이나 중단을 요청하려는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요청서에 법 제1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p> <p>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특별평가를 거쳐 연구개발과제를 중단하는 경우에는 최종평가를 실시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5조제1항제3호의 사유 2. 법 제15조제1항제4호의 사유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가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사유로 연구개발과제의 중단을 요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3)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p>제18조(단계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2조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단계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우수 이상 : 연구개발비 증액 2. 미흡 : 연구개발비 감액 3. 극히 불량 : 연구개발비 감액 및 연구개발과제 보완·변경·중단 <p>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단계평가에서 우수 이상의 결과를 받은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자를 홍보할 수 있다.</p>
--

다. 주요용어

용어	설명	비고
1. 보건의료기술 정책심의위원회	○보건의료기술진흥을 위한 중장기 계획, 과제 우선순위 설정, 연구개발사업 지원자금의 배분 등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를 말함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6조
2. 전문위원회	○위원회 심의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구성된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말함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6조제4항
3. 담당과장	○보건복지부의 해당 연구개발사업 담당 과장을 말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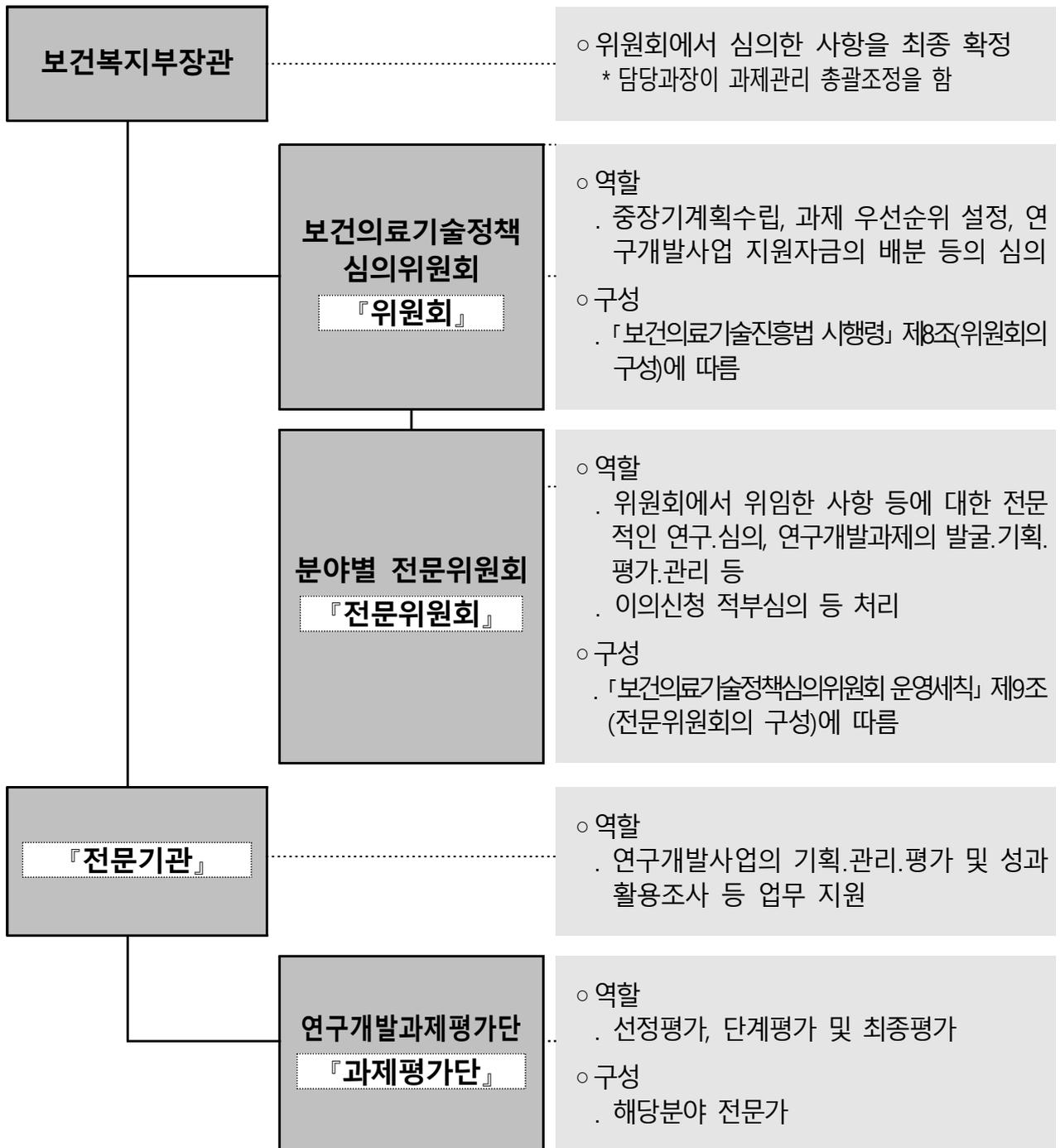
6. 과제 평가·관리

용어	설명	비고
4 연구사업 관리자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연구개발혁신본부의 본부장 및 연구개발사업별 담당 부서의 장(단장)을 말함	-
5 과제평가단	○ 연구개발사업 평가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말함	
6 연구개발과제	○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과제를 말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7 연구개발기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항 각 호의 기관·단체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를 말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8 주관연구개발기관	○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말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조
9 공동연구개발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과의 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말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조
10 위탁연구개발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위탁을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말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조
11 발표평가	○ 평가위원이 평가자료(연구개발 과제계획서 및 보고서 등)와 연구개발과제 연구책임자의 발표·질의 답변 및 평가위원 간 토의결과 등을 종합하여 평가의견서를 작성하고, 과제평가단의 평가의견이 반영된 종합평가의견과 평가결과를 도출하는 평가방식을 말함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
12 현장평가	○ 연구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단을 구성하여 현장을 방문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평가의견서 작성 및 평가결과를 도출하는 평가방식을 말함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
13 온라인평가	○ 평가위원이 온라인 시스템에 접속하여 업로드된 자료를 바탕으로 평가서 작성하는 평가방식을 말함 ※ 온라인 시스템으로 발표 및 질의·응답을 진행하는 평가방식 포함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
14 정성평가	○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평가결과를 도출하는 평가방식을 말함 - 정량화 된 성과(양적 성과 및 질적 성과 모두 포함)도 정성평가의 근거로 활용 가능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
15 정량평가	○ 객관적으로 계량할 수 있는 성과를 바탕으로 산출식에 의해 점수를 도출하는 평가 방식을 말함 - 지표별 목표달성도 및 비용점수 산출 등을 위해 활용 가능 - 성과의 특성에 따라 정량평가를 위한 지표는 양적 지표 및 질적 지표로 제시될 수 있음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
16 책임평가위원	○ 전문기관의 장이 선정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 중 전문성과 평가역량이 높은 평가위원 일부를 지정하여 단계 및 최종평가에 평가와 자문 등의 역할을 하는 전문가를 말함	
17 평가계획	○ 선정, 단계, 특별 및 최종평가 대상과제에 대하여 과제평가단 구성, 평가방법, 결과 처리 방법 등을 정한 세부적인 계획을 말함	

6.2 평가 체계 및 방향

1. 평가 체계

가. 추진체계



6. 과제 평가·관리

2. 평가방향

가. 단계평가

평가 기본방향

- ❖ 다음 단계의 수행 여부를 결정하고, 성공적인 과제 수행을 지원하는 과정
- ❖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평가방식을 활용하여 평가 효율성 제고

- (평가항목)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 및 연구개발 성과 등에 대하여 평가
- (평가방식) 평가위원을 통해 연구수행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점검과 향후 연구계획에 대해 컨설팅 중심으로 진행

나. 최종평가

평가 기본방향

- ❖ 연구개발 과정 및 최종 성과의 질적 우수성을 중심으로 과제수행내용에 대한 평가
- ❖ 우수과제에 대한 지속적 지원을 통해 우수 연구의 연속성 확보

- (평가항목) 대표 연구결과의 질적 우수성을 중심으로 과제 수행 내용 및 과정, 연구목표에 대한 계획 대비 달성도, 연구결과 및 활용실적, 기대효과 등을 평가
- (평가방식) 평가위원을 통해 연구수행 과정과 결과, 목표 달성도 등을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를 병행하여 평가

다. 특별평가

평가 기본방향

- ❖ 과제를 중단·해약하거나 중요 사항 변경 발생 시 해당 사유의 정당성·타당성 심사

- (평가항목) 부정행위 발생, 연구책임자 참여제한 확정, 과제 목표의 조기 달성, 환경변화, 연구자 또는 연구기관의 협약 등 의무 위반 등을 평가
- (평가방식) 평가위원을 통해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여부를 결정

6. 과제 평가·관리

라. Q&A

Q1. 「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연차협약 및 연차평가가 폐지되었는데, 계속과제의 경우 연차협약을 체결하고 연차평가를 실시하여도 되는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부칙 제1조에 따라 '21.1.1부터 시행되었음. 따라서, '21.1.1부터 시작하는 협약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을 협약기간으로 하여 체결되어야 함
- 만약, 이미 연차협약이 체결된 경우라면 협약기간을 전체 연구개발기간으로 하는 협약 변경이 필요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평가는 연구개발과제의 단계가 종료되거나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되었을 때 실시해야 하며, 연차평가제도는 폐지되었음. 따라서, 21.1.1 이후 연차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참고로, 연구개발과제 종료 전 반드시 평가가 필요하다면 연구개발과제의 단계를 필요한 평가주기에 맞게 구분하는 협약 변경을 통해 단계평가를 실시하는 방법이 있음

Q2. 단계평가 결과 극히 불량 등급 이외에 과제를 중단할 수 없는지?

-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서는 극히 불량 등급인 경우에 과제를 중단할 수 있음
- 다만 혁신법 제15조에 따라 특정 사유가 있는 경우 특별평가를 통해 연구개발 과제의 변경 및 중단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평가 절차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단계평가 및 특별평가를 통합하여 운영 할 수 있음

Q3. 평가결과를 확정하기 위한 전문위원회의 보고가 필수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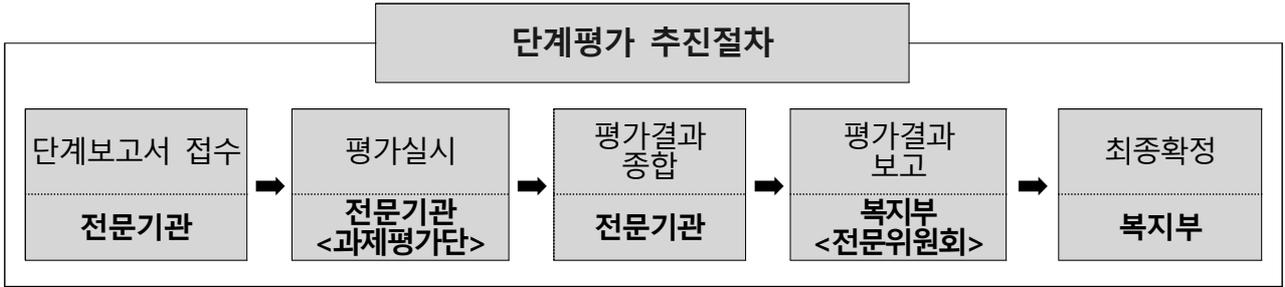
- 심의위원회는 평가결과를 확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절차로 연구개발과제의 내용 등에 대한 기술적, 전문적인 사항은 평가단을 통해 판단하되, 평가단의 평가결과를 포함하여 연구개발과제의 지원여부, 지원규모 등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전문위원회에서 하라는 취지임
- 따라서 평가단의 평가결과만으로 지원여부, 지원규모 등을 결정하는 등 전문위원회의 기능까지 평가단에 위임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보고 또는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음

Q4. 최종보고서의 제출기한과 최종평가 시기 및 공개기한은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 시행령 제18조제4항에 따라 최종보고서는 과제협약 종료일 후 60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이때의 보고서는 최종평가를 위해 제출하는 최종보고서임
- 또한, 시행령 제35조제1항은 최종보고서 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음
-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 최종보고서 제출일 이후, 협약 종료일 기준으로 5개월 이내에 최종평가를 마치고 평가결과에 따라 수정·보완된 최종보고서를 공개해야 함

6.3 단계평가

가. 추진절차



나. 평가방법

① 단계보고서 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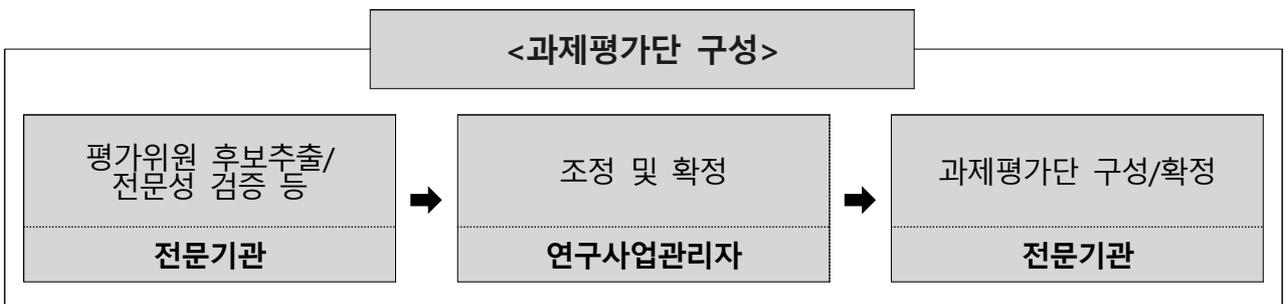
- 전문기관의 장은 단계평가 대상과제에 대하여 각 단계가 끝나기 전에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으로부터 『단계보고서』를 제출받아 단계평가를 실시하고, 단계 종료일자까지 수정·보완 받음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단계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협약에 따른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연구개발과제를 중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제재처분을 심의할 수 있음

② 전문가 평가

○ 평가유형 및 평가항목

-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수행 과정, 연구결과 및 향후 연구계획 등을 토대로 과제 진행 현황을 평가하고, 과제의 계속 진행여부 및 연구비 규모 등을 결정함

○ 평가주체 : 과제평가단



- 전문기관의 장은 과제평가단 구성을 위하여 평가위원 후보추출 및 전문성 검증 등을 실시함
 - 평가위원 후보추출은 자동추출, 키워드추출, 지정추출 등을 실시하고, 일부를 책임평가위원으로 구성함
 - 전문성 검증은 추출된 평가위원 후보목록에서 전공분야, 각종 실적 및 제재정보, 제

6. 과제 평가·관리

척기준 등을 확인함

- 연구사업관리자는 평가위원 후보자 풀(pool)에 대한 조정을 실시하고 확정함
- 전문기관의 장은 위 각 절차를 거친 평가위원 후보자 풀(pool)로부터 관련분야 전문가로 과제평가단을 구성하고 최종 확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공정성이 우려되는 경우 또는 과제의 성격 및 규모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절차 및 과제평가단 구성의 요건, 인원을 평가계획에 달리 정할 수 있음

<연구개발과제 평가위원 선정기준>

1. 평가위원 선정 원칙

- 가. 평가위원은 혁신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평가위원 후보자 중에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나. 기술분야의 전문가 뿐 아니라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에 맞게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활용 할 수 있도록 한다.
 - 1) 사업화 중심의 과제는 산업계 또는 사업화 전문가 참여를 원칙
 - 2) 대형 연구개발과제 또는 국제 공동연구개발 과제의 경우에는 국외 전문가 참여를 권고

2. 평가위원 제외대상(제척기준)

구분	제척기준
필수 제척 대상	① 평가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자 ② 혁신법 제32조 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활동 참여제한 처분을 받아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
선택적 제척 대상	① 평가대상 연구자와 「민법」에 따른 친족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사람 ② 서로 다른 두 건의 연구개발과제의 평가가 동시에 진행될 때 각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자가 그 서로 다른 연구개발과제를 평가하는 관계가 되는 경우의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자 ③ 평가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사람.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과, 학부(해당 학부에 학과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부서 등 최하위단위 부서에 같이 소속된 사람으로 한정하여 제외할 수 있다. 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에 따른 연구기관 ④ 해당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및 전문기관의 임직원(연구개발과제 기획·분석·평가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연구관리전문가는 제외한다) ⑤ 그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별도로 정하는 경우

<과제 규모에 따른 과제평가단 구성>

구분	소형 및 중형	대형 및 연합형
과제평가단 구성	5명 내외	8명 내외

6. 과제 평가·관리

<연간지원액 따른 과제 규모>

구분	지원규모 범위 (연간지원액)
소형	~ 2억원 미만
중형	2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대형	10억원 이상 ~ 20억원 미만
연합형	20억원 이상 ~

※ 지원 형태와 규모를 고려하여 과제를 분류(소형, 중형, 대형, 연합형)하며, 대상분야의 특성 등으로 상기 기준과 달리 적용되는 것은 공고 시 정한 계획 또는 평가계획에 따름

○ 평가방법

-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의 특성, 지원규모, 평가환경 등을 고려하여 서면평가, 발표(토론)평가, 현장평가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평가계획에 반영할 수 있음
- 전문기관의 장은 과제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과제평가단의 합의에 의한 평가결과(등급)를 도출하게 할 수 있음
 - ※ 과제평가단 합의방식으로 평가결과를 정하는 경우, 위에서 정한 과제평가단 구성 인원 수 보다 적게 구성할 수 있음
- 서면 및 발표평가는 비대면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발표평가 시에는 과제평가단 위원 중에서 과제별 책임위원 및 토론자를 지정할 수 있음
- 과제평가단은 평가점수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고, 평가위원장이 평가의견을 종합하여 작성함
- 최고점과 최저점 각 1인을 제외한 평가위원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최종점수를 산출함. 단, 평가를 실시한 평가위원이 5명 이하인 경우 최고·최저점을 제외하지 않음

③ 평가결과 종합 및 보고

○ 평가등급

- 평가등급은 우수-보통-미흡으로 구분함

등급	절대평가지 점수	상대평가지 비율
우수	90점 이상	10%
보통	60점 이상~90점 미만	80%
미흡	40점 이상~60점 미만	10%
극히 불량	40점 미만	

- 과제평가단은 평가대상과제가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37조 각 호의 연구부정행위와 같이 수행과정이 부적절하고 성과가 계획대비 매우 미흡하다고 합의하면 “극히 불량”에 해당하는 점수를 부여하고, “극히 불량”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작성함

6. 과제 평가·관리

- 평가 대상, 방법, 비율 등은 공고 시 정한 계획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담당과장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극히 불량” 등급으로 평가된 과제는 연구지원을 중단할 수 있음

○ 연구비 조정

-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사업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최대 연구비 이내의 신청 연구비, 전년도 연구비 수준, 예산사용 및 과제평가단·전문기관 연구사업관리자의 검토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담당과장과의 협의를 통해 연구비 조정을 실시함

- 우수등급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담당과장과의 협의를 통하여 예산가용범위 내에서 연구비 증액 등의 인센티브 지원이 가능함

○ 평가결과 보고

-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계획, 최종점수, **연구비 조정내용**을 종합한 평가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함

○ 제재처분 심의요청

-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결과 “극히 불량” 과제 또는 『단계보고서』 미제출 과제의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에 대해 참여제한 및 제재부가금 부과 등을 제재처분평가단에 심의요청 함

④ 최종확정

○ 확정주체 : 보건복지부장관

○ 확정방법

- 보건복지부장관은 평가결과와 전문위원회 회의결과를 바탕으로 지원대상과제와 연구비를 최종 확정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통보함

6. 과제 평가·관리

다. Q&A

Q1. 단계평가 항목 및 결과에 따른 조치는?

- (컨설팅 중심의 평가) 단계평가 시 다음 단계계획에 대한 컨설팅 중심으로 진행하고, 평가 결과 및 연구책임자 협의에 따라 과제목표지표 수정이 가능함
-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 연구개발성과 및 다음 단계 연구개발과제 수행 계획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과제의 계속 지원여부 및 연구비 규모등을 결정함
- 수행과정과 목표 달성 정도를 기준으로 우수-보통-미흡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이 부적절하고 연구개발성과가 그 수행계획에 비하여 매우 미흡한 경우 '극히 불량' 등급을 부여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과 결과가 모두 극히 불량한 과제의 경우, 참여제한 또는 제재부가금 부과(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제1호)

< 단계평가 항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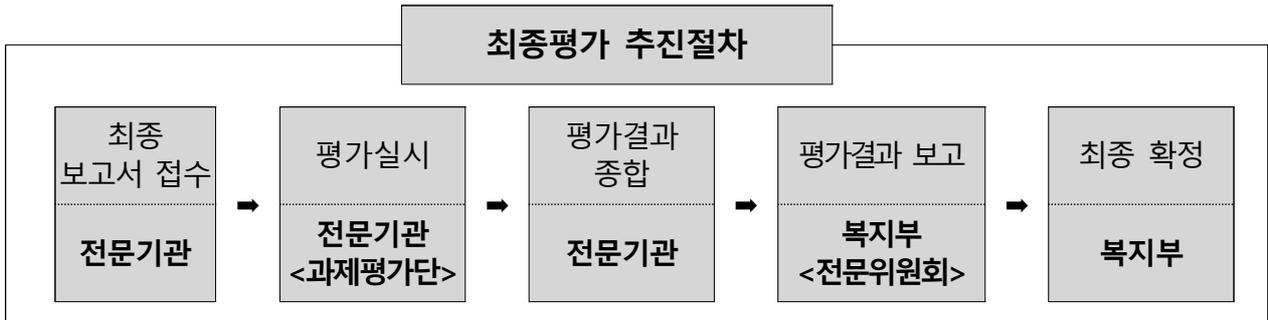
-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내용 및 과정
-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결과 및 목표 달성 정도
- 연구개발성과 및 관련 분야에 대한 기여
- 연구개발성과의 관리 및 활용 계획
- 향후 연구개발과제 수행계획

Q2. 단계평가 시기는 언제인지?

- 시행령 제18조제4항에 따라 단계평가는 각 단계가 끝나기 전에 수행해야 함
- 따라서 단계보고서를 사전에 제출해야 하며, 단계평가 이후 수정·보완된 단계보고서를 단계가 끝난 날까지 최종적으로 제출해야 함

6.4 최종평가

가. 추진절차



나. 평가방법

① 최종보고서 접수

○ 접수

- 전문기관의 장은 총 연구기간이 종료된 과제에 대하여 『최종보고서』를 연구개발과제 협약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 받음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총 연구기간 동안의 연구결과 및 성과를 과제선정 시 제출한 『연구개발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연구종료 시 예상연구성과와 비교하여 『최종보고서』를 작성함
- 『최종보고서』 제출 시 전문학술지 게재 논문 또는 특허출원/등록증의 사본, 기타 연구과제물 등 연구성과물을 함께 첨부해야 함. 다만, 전문학술지 게재 승인된 논문의 경우에는 게재예정증명서를 첨부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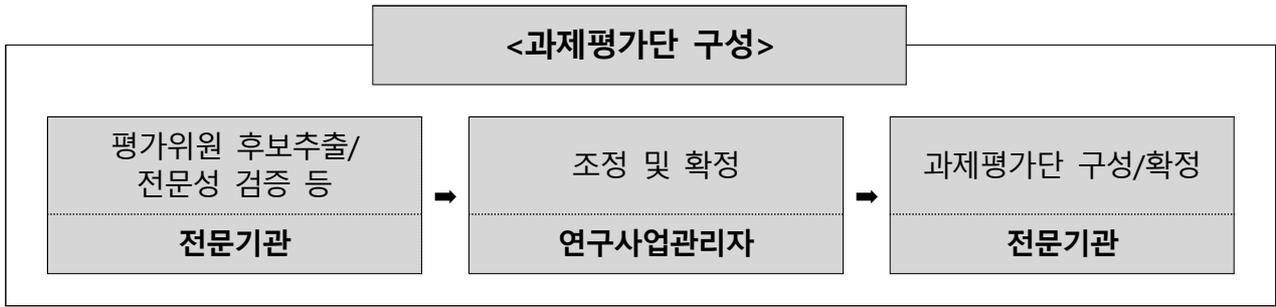
○ 최종평가 유예

- 전문기관의 장은 『최종보고서』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평가를 완료해야 함 (공고문, RFP 등에서 최종평가 유예를 정한 과제에 대하여 최종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유예할 수 있음)
- 전문기관의 장은 공고문, 제안요청서(RFP) 등에서 최종평가 유예를 정한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최종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최종평가를 유예할 수 있음
- 전문기관의 장은 기획과제에 한하여 연구주체의 사회적 민감도(정책활용 시기), 보안 유지 필요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일정기간 최종평가를 유예할 수 있음

6. 과제 평가·관리

② 전문가 평가

○ 평가주체 : 과제평가단



- 전문기관의 장은 과제평가단 구성을 위하여 평가위원 후보추출 및 전문성 검증 등을 실시함
 - 평가위원 후보추출은 자동추출, 키워드추출, 지정추출 등을 실시하고, 일부를 책임평가위원으로 구성함
 - 전문성 검증은 추출된 평가위원 후보목록에서 전공분야, 각종 실적 및 제재정보, 제척기준 등을 확인함
- 연구사업관리자는 평가위원 후보자 풀(pool)에 대한 조정을 실시하고 확정함
- 전문기관의 장은 위 각 절차를 거친 평가위원 후보자 풀(pool)로부터 관련분야 전문가로 과제평가단을 구성하고 최종 확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공정성이 우려되는 경우 또는 과제의 성격 및 규모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절차 및 과제평가단 구성의 요건, 인원을 평가계획에 달리 정할 수 있음

6. 과제 평가·관리

<연구개발과제 평가위원 선정기준>

1. 평가위원 선정 원칙

- 가. 평가위원은 혁신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평가위원 후보자 중에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나. 기술분야의 전문가 뿐 아니라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에 맞게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활용 할 수 있도록 한다.
 - 1) 사업화 중심의 과제는 산업계 또는 사업화 전문가 참여를 원칙
 - 2) 대형 연구개발과제 또는 국제 공동연구개발 과제의 경우에는 국외 전문가 참여를 권고

2. 평가위원 제외대상(제척기준)

구분	제척기준
필수 제척 대상	① 평가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자
선택적 제척 대상	① 평가대상 연구자와 「민법」에 따른 친족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사람 ② 서로 다른 두 건의 연구개발과제의 평가가 동시에 진행될 때 각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자가 그 서로 다른 연구개발과제를 평가하는 관계가 되는 경우의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자 ③ 평가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사람.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과, 학부(해당 학부에 학과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부서 등 최하위단위 부서에 같이 소속된 사람으로 한정하여 제외할 수 있다. 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에 따른 연구기관 ④ 해당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및 전문기관의 임직원(연구개발과제 기획·분석·평가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연구관리전문가는 제외한다) ⑤ 그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별도로 정하는 경우

<과제 규모에 따른 과제평가단 구성>

구분	소형 및 중형	대형 및 연합형
과제평가단 구성	5명 내외	8명 내외

<과제 규모에 따른 과제평가단 구성>

구분	지원규모 범위 (연간지원액)
소형	~ 2억원 미만
중형	2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대형	10억원 이상 ~ 20억원 미만
연합형	20억원 이상 ~

※ 지원 형태와 규모를 고려하여 과제를 분류(소형, 중형, 대형, 연합형)하며, 대상분야의 특성 등으로 상기 기준과 달리 적용되는 것은 공고 시 정한 계획 또는 평가계획에 따름

6. 과제 평가·관리

○ 평가방법

-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의 특성, 지원규모, 평가환경 등을 고려하여 서면평가, 발표(토론)평가, 현장평가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평가계획에 반영할 수 있음
- 전문기관의 장은 과제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과제평가단의 합의에 의한 평가결과(등급)를 도출하게 할 수 있음
 - ※ 과제평가단 합의방식으로 평가결과를 정하는 경우, 위에서 정한 과제평가단 구성 인원 수 보다 적게 구성할 수 있음
- 서면 및 발표평가는 비대면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발표평가 시에는 과제평가단 위원 중에서 과제별 책임위원 및 토론자를 지정할 수 있음
- 과제평가단은 평가점수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고, 평가위원장이 평가의견을 종합하여 작성함
- 최고점과 최저점 각 1인을 제외한 평가위원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최종점수를 산출함. 단, 평가를 실시한 평가위원이 5명 이하인 경우 최고·최저점을 제외하지 않음

③ 평가결과 종합 및 보고

○ 평가등급

- 평가등급은 우수-보통-미흡으로 구분함
(단, RFP상에서 제시한 목표(최소요구성과)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평가점수 및 비율에 상관없이 보통 이하의 등급을 부여함)

등급	절대평가지 점수	상대평가지 비율
우수	90점 이상	10%
보통	60점 이상~90점 미만	80%
미흡	40점 이상~60점 미만	10%
극히 불량	40점 미만	

- 평가 대상, 방법, 비율 등은 공고 시 정한 계획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담당과장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평가결과 보고

-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계획, 최종점수, 최종보고서 비공개 검토 등을 종합한 평가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함

○ 제재처분 심의요청

-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결과 “극히 불량” 과제 또는 『최종보고서』 미제출 과제의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에 대해 참여제한 및 제재부가금 부과 등을 제재처분평가단에 심의요청 함

6. 과제 평가·관리

④ 이의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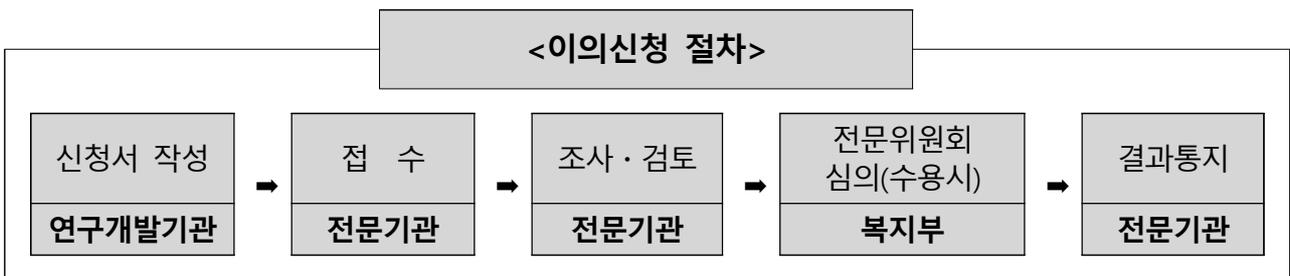
○ 이의신청 범위

－ 이의신청은 다음의 경우에 한함

- 평가결과 의견 중 평가자의 결정적 오류가 발견되어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 연구개발과제(연구업적 등)의 내용을 명백히 잘못 해석하여 평가한 경우
- 전문기관의 명백한 행정오류의 경우
- 기타 이의신청의 타당성이 높은 경우

－ 평가위원 선정, 연구비 결정, 평가규정 및 절차, 평가방식(상대·절대·혼합, 서면·발표(토론)·블라인드, 평가단계 등)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불가

○ 이의신청 절차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이의신청 범위 내에서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의 원인이 되는 평가결과를 통보 받은 날(선정평가의 경우, 예비선정 공고일)로부터 10일(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이내에 이의신청서 및 소명자료를 공문과 함께 제출함

－ 전문기관의 장은 이의신청 접수 후,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을 전문위원회 심의 전에 검토하여 수용 또는 반려 여부를 결정함

- 이의신청 내용이 전문위원회 심의결과를 반복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그 결과를 이의 신청자에게 통보함
-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한 경우, 재평가를 실시함

※ 재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불가

⑤ 최종확정

○ 확정주체 : 보건복지부장관

○ 확정방법

－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위원회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결과를 최종 확정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통보함

6. 과제 평가·관리

다. Q&A

Q1. 최종평가 항목 및 결과는?

- (연구수행과정과 성과를 동시에 평가) 최종평가 시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 연구개발성과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수행과정이 부적절하고 연구개발성과가 수행계획 대비 매우 미흡한 경우 극히 불량으로 분류함
 - 수행과정과 성과의 질적 우수성을 기준으로 우수-보통-미흡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평가지침),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이 부적절하고 연구개발성과가 그 수행계획에 비하여 매우 미흡한 경우 '극히 불량' 등급을 부여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과 결과가 모두 극히 불량한 과제의 경우, 참여제한 또는 제재부가금 부과(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제1호)
- < 최종평가 항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 및 수행 내용 • 연구개발성과 및 관련 분야에 대한 기여 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결과 및 목표 달성 정도 • 연구개발성과의 관리 및 활용 계획
---	--

Q2. 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에 제재처분을 한다면, 성실실패에 관한 규정은 사라지는 것인지? 과정의 극히 불량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 혁신법에서는 '연구개발과제의 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를 제재사유로 두어, 결과만 불량한 경우는 제재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종전의 성실실패 규정은 별도로 두지 않음
- '과정'의 극히 불량 여부는 연구개발과제의 단계·최종평가 시 '결과'의 극히 불량 여부와 함께 평가할 예정

Q3. 최종평가결과 '우수' 등급을 받았을 경우 혜택은?

- (신규 연구개발과제 신청시 가점 적용) 주관연구책임자 자격으로 단독과제 또는 연간 3억원 이하의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에 신청할 경우 0.5 가점 부여. 다만, 최종평가일이 과제 신청마감일 기준으로 3년 이내인 경우에 유효하며,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 주관연구책임자 자격으로 2개 이상의 과제에 신청한 경우 1개 과제에만 가점 신청 가능
- * [참고]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별표1.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의 우대·감점의 기준 및 방법
- (우수성과 홍보, 정부 포상 추천) 국가연구개발사업 우수성과 100선,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우수성과 선정 우선 추천 및 관련 성과 홍보, 우수연구성과 부문 정부 포상 추천

Q4. 최종보고서의 제출기한과 최종평가 시기 및 공개기한은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 시행령 제18조제4항에 따라 최종보고서는 과제협약 종료일 후 60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이때의 보고서는 최종평가를 위해 제출하는 최종보고서임
- 또한, 시행령 제35조제1항은 최종보고서 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음
-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 최종보고서 제출일 이후, 협약 종료일 기준으로 5개월 이내에 최종평가를 마치고 평가결과에 따라 수정·보완된 최종보고서를 공개해야 함

Q5. 연구개발성과 비공개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제한된 횟수는 있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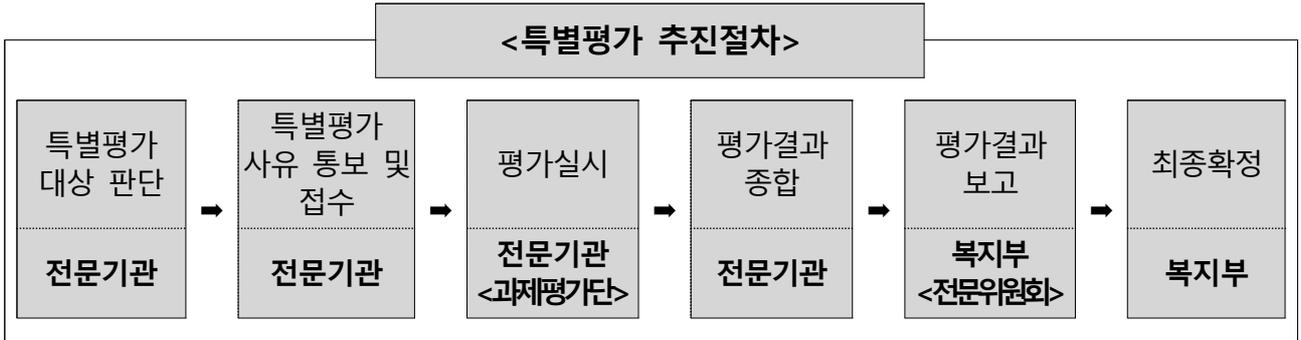
- 비공개 기간을 연장해야 할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그 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나 비공개 기간 종료 전에 반드시 연장 요청과 함께 추가승인 절차를 거쳐야 함
- 비공개 기간은 요청 사유에 따라 최대 3년 이내 연구개발성과의 비공개 승인

Q6. 연구성과의 비공개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비공개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요청하고, 승인은 비공개 기간이 지난 후 받아도 되는것인지?

- 비공개 기간이 끝나기 전 연장을 요청하고 승인도 비공개 기간 내에 받아야 함

6.5 특별평가

가. 추진절차



나. 평가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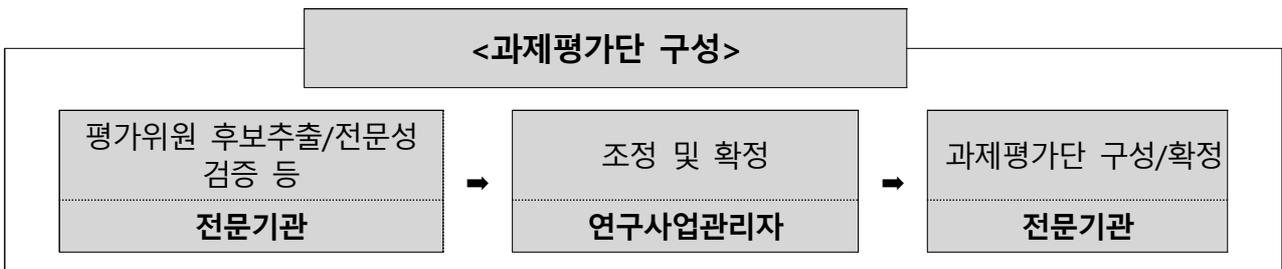
- (특별평가 대상 판단)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개발과제를 수행 중에 과제 중단이 필요한 경우와 참여제한 확정, 부정행위 발생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 15조에 해당하는 특별평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 특별평가를 통해 과제 변경 및 중단 가능
 -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 수행 과제에서 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 발생, 연구책임자의 참여제한 확정, 연구개발 환경변경으로 과제 계속수행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협약의무 불이행 또는 계속 과제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가 과제 중단 요청(환경변경 또는 목표조기달성으로 계속수행 불필요 판단, 과제 계속 수행 불가능 판단 시)시 전문기관이 인정한 경우
 - 연차보고서 점검 결과, 상시 수행관리 점검 결과 및 단계평가 결과를 확인하여 과제 변경 또는 중단이 필요한 경우

< 특별평가 실시 사유 >

구분	사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특별평가 실시	①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한 경우 ② 연구책임자의 국가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참여제한이 확정된 경우 ③ 연구개발 환경이 변경되어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이 법 또는 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가 특별평가 신청	① 연구개발 환경이 변경되었거나 연구개발과제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여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6. 과제 평가·관리

- (특별평가 사유 통보 및 접수) 전문기관은 특별평가 대상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에게 실시 시기와 사유를 통보(통보와 동시에 연구개발비 집행 중지)해야 함
 - 전문기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특별평가를 실시하려면 1) 특별평가 실시 시기, 2) 특별평가 실시 사유, 3) 소명자료의 제출 시한, 4) 특별평가에 따라 과제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다는 사실을 통보해야함(혁신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 전문기관은 혁신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변경이나 중단을 요청하려는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에게 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과제 변경 및 중단 요청서”에 혁신법제15조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을 안내(혁신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필요
 - 통보는 공문을 통해 안내하며 통보와 동시에 특별평가 대상과제는 연구개발비 집행 중지(혁신법제15조제1항)처리 필요
- (평가계획 수립 및 안내) 전문기관은 특별평가 대상자에게 특별평가 실시 통보 시 평가 장소와 방법 등 평가 계획과 평가 참여 준비 사항을 안내함
- (현장실태조사) 전문기관은 연구개발내용의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실태조사 대상과제를 설정할 수 있음
 - 조사위원 구성은 담당간사가 자체적으로 조사위원을 구성(소속전문기관 직원 및 외부 전문가)하거나 또는 선정평가 위원 구성 방식을 활용할 수 있음
 - 현장실태조사 결과는 필요시 특별 평가위원회에게 제공될 수 있고 실태조사에 참석한 위원 일부가 특별 평가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음
- (평가 실시) 전문기관은 해당분야 전문가로 과제평가단을 구성하여 발표평가를 실시하되, 평가방식은 외부상황(감염병 유행 등), 평가과제 수, 평가분야 특성(연구비 규모, 분야)을 반영하여 대면평가, 온라인 비대면 평가 등을 실시할 수 있음



- (과제평가단 구성) 과제평가단은 해당과제와 관련된 질환과 기술 분야의 전문가로 평가위원 후보를 추출하고, 전공분야, 연구 및 성과 실적과 평가 경력* 등을 확인하여 전문성을 검증한 후 확정 함

* 특별평가단 구성 시 선정평가위원(1인 이상)을 우선 선정(혁신법 시행령 제27조제5항)

구분	소형 및 중형	대형 및 연합형
과제평가단 구성	5명 내외	8명 내외

6. 과제 평가·관리

-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의 특성, 지원규모, 평가환경 등을 고려하여 발표(토론) 평가, 현장평가 등을 실시할 수 있음
-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시 평가 대상과제에 대해 전문적 사전 검토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검토결과를 위의 발표평가, 현장평가 등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평가결과 종합)
 - 평가사유에 따른 평가결과는 ‘계속지원’, ‘변경 계속지원’, ‘조기완료(목표 조기달성)’, ‘과제중단’으로 구분함
 - 과제평가단은 평가사유에 대한 타당성, 과제중단 등의 필요성, 연구수행 포기에 대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종합 검토하여 합의를 통한 평가결과를 결정하고, 그 사유를 종합평가의견에 작성함
 - ※ 특별평가를 통하여 연구수행 포기에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정당한 사유 예시

- 표준·법·제도·기술이나 시장 환경의 변화로 기술개발 필요성이 사라진 경우
- 홍수·지진 등의 천재지변
- 화재, 폭발, 파업, 전쟁의 위협 또는 존재, 유행병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평가결과 보고)

-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계획 등을 종합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해야함

평가결과	조치계획
계속지원	연구개발비 집행 중지를 해제하고 당초 연구개발 계획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수행
변경 계속지원	사안에 따라 협약 변경 절차(통보 또는 승인)를 거쳐 연구개발과제 변경사항을 반영 후 연구개발과제를 수행
조기완료	최종평가 대상과제로 통보하고 최종평가 준비, 향후 최종평가 결과로 등급 판정
과제 중단	연구개발 수행 중단 및 협약 해약 절차를 따르며, 협약 해약 및 중단 사유에 따른 제재처분 대상 통보 등을 보고

- (평가결과 통보)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위원회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결과를 최종 확정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통보함
- 이의신청 범위 및 절차는 혁신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를 따른다.

6. 과제 평가·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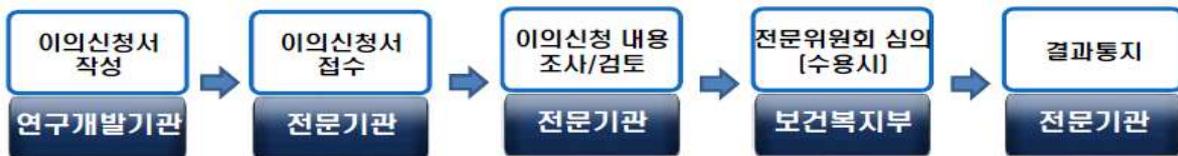
〈 이의신청 범위 및 절차 〉

1. 이의신청 범위

- 평가결과 의견 중 평가자의 결정적 오류가 발견되어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 연구개발과제(연구업적 등)의 내용을 명백히 잘못 해석하여 평가한 경우
 - 전문기관의 명백한 행정오류의 경우
 - 기타 이의신청의 타당성이 높은 경우
- ※ 연구개발과제평가단·평가위원 선정, 연구비 결정, 평가규정 및 사전에 확정되어 안내된 절차, 평가방식
(상대·절대·혼합, 서면·토론·발표, 블라인드, 평가단계 등)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불가

2. 이의신청 절차

-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 전문기관에서 우선 조사·검토하고,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전문위원회 심의를 실시함



※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하지 않을 경우 전문기관에서 접수 반려하고, 전문위원회에서 타당성이 인정된 경우는 재평가를 실시함

- (최종확정)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위원회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결과를 최종 확정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통보함

6. 과제 평가·관리

〈 특별평가 목적 및 대상 사유 〉

1. 제도의 목적

참여제한의 확정, 과제 목표의 조기 달성, 환경변화 등에 따라 과제를 중단·해약하거나 연구책임자 등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의 정당성 및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신설된 제도

2. 특별평가 대상 사유

①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한 경우

- 부처·전문기관의 직접 조사 또는 연구기관의 자체조사를 통해 부정행위 여부가 확인된 경우 특별평가를 통해 부정행위의 경중을 판단하여 과제 중단 및 연구책임자 변경 여부를 결정

② 연구책임자의 참여제한이 확정된 경우

- 참여제한이 확정된 연구책임자는 참여제한 기간 동안 모든 부처의 과제에 선정되지 못할 뿐 아니라, 현재 수행 중인 과제에서도 배제됨
- 부처·전문기관은 특별평가에서 참여제한이 확정된 연구책임자만 교체할지(협약 변경), 해당 연구책임자는 대체 불가능하다고 보아 해당 과제 자체를 중단·해약할지를 결정해야 함

③ 연구개발 환경이 변경되어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 불필요한 경우

④ 연구기관 또는 연구책임자가 환경 변화 등*을 이유로 목표, 연구책임자 등의 변경 및 과제의 중단을 요청하여 부처가 인정한 경우

* ① 연구개발 환경이 변경되었거나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여 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②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등

- 연구책임자를 변경하거나 과제를 중단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

⑤ 연구자 또는 연구기관이 협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 제재처분을 받지 않는 경우에도 과제의 중단·해약 또는 연구책임자 변경을 통한 불이익은 받을 수 있음

6. 과제 평가·관리

다. Q&A

Q1. 연구책임자의 참여제한(혁신법 시행 이후 부정행위 발생)이 확정된 경우 해당 연구자와 해당 연구자가 수행하고 있는 과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 혁신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은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 지체 없이 모든 국가연구개발활동(연구지원은 제외)에서 참여를 제한해야 하며, 이 경우의 국가연구개발활동에는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자가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도 포함됨
- 혁신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연구책임자가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중앙행정기관은 특별평가를 통해 과제의 특성, 수행단계, 진행정도 등을 고려하여 연구책임자를 변경하거나 과제를 중단할 수 있음

Q2. 연구책임자가 아닌 참여연구자의 참여제한(혁신법 시행 이후 부정행위 발생)이 확정된 경우 해당 연구자와 해당연구자가 수행하고 있는 과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 혁신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은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 지체 없이 수행하고 있는 과제를 포함하여 모든 국가연구개발활동(연구지원은 제외)에서 참여를 제한해야 함
- 참여연구자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이 특별평가 없이 해당 연구자를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서 배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협약의 변경은 협약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의 통보로 이루어질 수 있음

Q3. 단계평가 결과 극히 불량 등급 이외에 과제를 중단할 수 없는지?

-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서는 극히 불량 등급인 경우에 과제를 중단할 수 있음
- 다만 혁신법 제15조에 따라 특정 사유가 있는 경우 특별평가를 통해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평가 절차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단계평가 및 특별평가를 통합하여 운영 할 수 있음

Q4. 과제의 변경 및 중단을 결정하는 자체 소관 위원회가 있는 경우 동 자체 소관 위원회의 평가를 특별 평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 해당 위원회가 시행령 제27조의 평가단 구성 요건에 부합하고, 법 제15조의 특별평가 사유에 의한 과제의 변경 및 중단을 결정하는 기능을 한다면 명칭과 상관없이 법 제15조에 의한 특별평가로 인정할 수 있음

Q5. 3책5공 기준을 위반할 경우 제재사유가 되는가?

- 3책5공이 법령상 연구자의 의무로 규정된 것은 아니나, 협약으로 정한 경우 현행법상 제32조에 따라 협약에 따른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특별평가에 따라 과제가 변경·중단된 경우는 제재처분 대상이 될 수 있음

Q6. 연구개발비 부담 납입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부처가 취할 수 있는 대응방안은?

- 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특별평가를 통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중단할 수 있고 제재처분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음

7. 연구개발성과

7.1 개요

1. 연구성과

가. 정의·유형 및 소유

□ 연구성과 정의

-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에서 또는 그 결과로 인해 창출 또는 파생되는 제품, 시설·장비, 지식재산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무형의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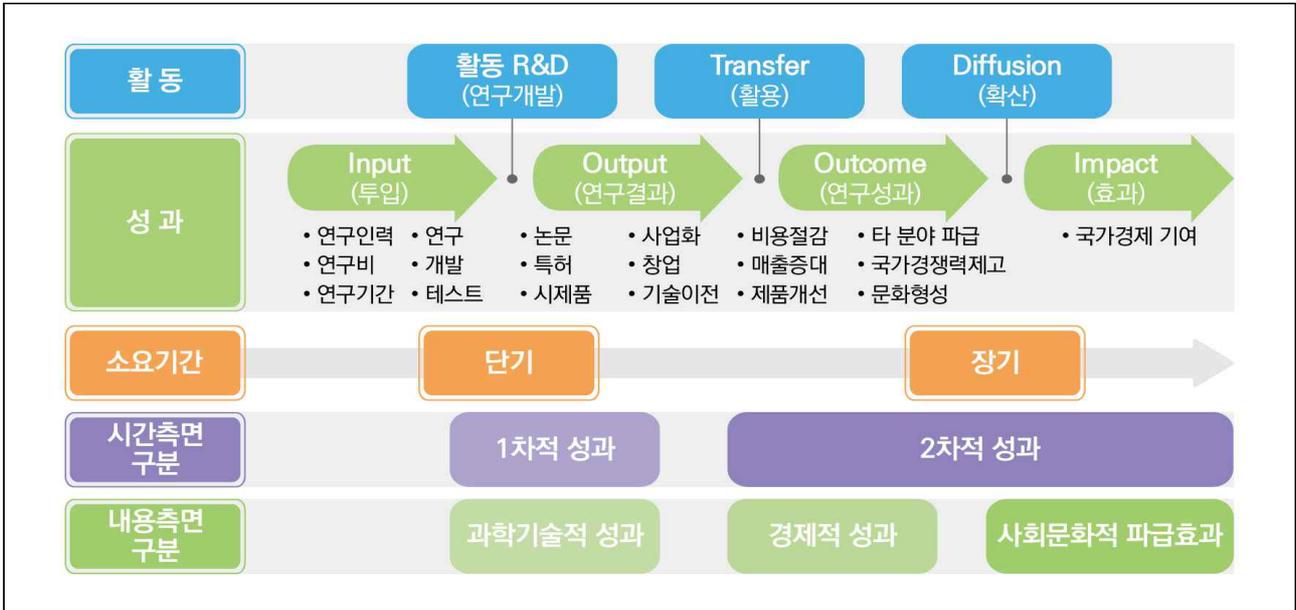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조

<보건의료R&D 주요 성과 지표>

주요성과		양적 성과	질적 성과
과학·기술적 성과	논문	연도별, 사업별 추세분석 정출금 10억원당 논문실적 분석	SCI(E) 논문실적 비율 분석 논문 IF ¹⁾ , mrnIF ²⁾
	특허	연도별, 사업별 추세분석 정출금 10억원당 특허성과 분석 특허 등록률 분석	특허 SMART분석 ³⁾ 특허 인용분석
사회·경제적 성과	기술이전	제3자 기술이전한 건수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로 제3자에게 기술이전한 건수
	사업화 매출액	-	과제 수행을 통해 창출한 기술개발을 적용하여 발생한 매출액
	공정개발 및 비용절감	건수	원가 및 비용절감액
	신규고용	추가 고용 규모	-
보건의료 R&D 고유성과	품목허가, 임상시험승인, 진료지침개발, 신의료기술 개발	-	각 고유성과 발생건수 임상시험단계

1) IF(Impact Factor; 저널영향력지수) : 해당연도를 제외한 최근 2년간 학술지에 수록된 논문의 평균 피인용 지수
 2) mrnIF(Modified Rank Normalized Impact Factor, 표준화 된 순위보정 영향력지수) : 분야 내 특정 학술지가 차지하는 위상을 최소 0, 최대 100으로 표준화한 값으로 지수 값이 큰 저널일수록 해당 분야 내에서의 위상이 높은 저널을 의미
 3) SMART(Systematic Measuring And Rating patent Technology) : 국내 등록 특허를 대상으로 평가 모형을 활용하여 평가 점수가 생성되고, 등급 분류 기준에 따라 최고 AAA부터 최하 C 등급까지 총 9등급으로 나누어 해당 성과의 질적 분석을 실시

7. 연구개발성과



나. 연구개발성과의 귀속 및 활용촉진

□ 법적근거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관리) ①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자로부터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여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성과의 유형, 연구개발과제에의 참여 유형과 비중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연구자가 소유하거나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1.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4. 그 밖에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국가 소유 연구개발성과를 전문기관 또는 연구개발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한 연구개발성과의 관리 기준 및 절차,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소유에 관한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2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그 연구개발성과의 소유에 관한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각자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다.
2.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을 정하되, 연구개발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비율 및 연구개발성과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

7. 연구개발성과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그 협의에 따른다.

3.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에 소재한 기관·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이들 기관이 우선적으로 연구개발성과실시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협약에 해당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④ 법 제16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연구개발과제협약을 체결한 후 법 제16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로서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국내에 출원하려면 특허출원서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연구개발과제의 명칭
2. 연구개발과제의 식별을 위하여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부여하는 연구개발과제 번호
3. 연구개발과제를 지원한 중앙행정기관

제33조(연구개발성과의 관리) ① <삭 제>

② <삭 제>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한 절차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전담기관에 등록·기탁해야 한다. 다만, 특허청이 해당 특허정보를 전담기관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등록·기탁 대상 및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⑤ <삭 제>

⑥ <삭 제>

⑦ <삭 제>

제35조(연구개발성과의 공개 등) ①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자는 법 제17조제2항 본문에 따라 최종보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성과의 특성상 출판이나 학술지 게재가 필요한 경우 등의 사유로 3개월 이내에 공개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여 공개기한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기한까지 공개할 수 있다.

1. 최종보고서

2. 제33조제3항 본문에 따라 전담기관에 등록·기탁한 연구개발성과 목록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성과 비공개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관련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경우

2.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핵심전략기술 관련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경우

3.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경우

4.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해당 연구개발성과에 대하여 지식재산권을 취득하려는 경우

5. 외국의 정부·기관·단체와의 협정·조약·양해각서 등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비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6.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이 연구개발성과를 임치한 경우

7. 그 밖에 영업비밀 보호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연구개발성과의 비공개를 승인할 수 있다.

1.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년 이내

2. 제2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년 6개월 이내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의 비공개 기간을 연장해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 제3항에 따라 승인된 비공개

7. 연구개발성과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그 기간이 끝나기 전날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비공개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사유를 검토하여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비공개 기간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 주요내용

- (연구개발성과의 소유 원칙) 연구개발성과는 연구자로부터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여 연구개발기관이 소유
 - 단, 성과의 유형, 과제 참여유형과 비중에 따라 성과를 연구자가 소유하거나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 가능
 - 국가안보, 공익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협약에 정하여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 (공동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성과를 각자 창출한 경우,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이 각각 소유하고, 공동으로 성과를 창출한 경우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
 - ※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성과는 주관연구기관이 소유
-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연구개발성과의 자율적인 활용을 원칙으로 하며,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은 성과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려는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실시
 - 기술실시계약은 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이 우선 실시
 - 연구개발성과를 실시를 위해 같은 과제에서 발생한 다른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한 성과의 실시가 필요한 경우, 실시를 요청하고, 실시를 요청받은 기관은 실시를 허락
 - 실시 기간과 조건은 합의하여 정하되, 다른 자보다 우대
 - 국내·외 출원·등록한 지식재산권을 포기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포기 전 연구개발성과 창출에 기여한 연구자나 중소기업에 양도하는 것을 우선 검토
- (연구개발성과 정보의 등록과 공개)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성과를 연구개발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에 등록·기탁
 - 과제 수행이 종료되면 최종보고서와 연구개발성과 정보를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
 - ※ 최종보고서 제출일 부터 3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 연구개발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에 등록·기탁한 성과 목록을 제출
 - 국가핵심기술연구, 보안과제 등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3년 이내의 기간의 범위 내에서 성과를 비공개 할 수 있음
 - ※ 비공개 연장 사유가 있는 경우 비공개 기간 종료 전 3개월부터 끝나기 전날까지 비공개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음
-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촉진을 위한 추적조사) 보건복지부 장관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에

7. 연구개발성과

계 성과활용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성과의 활용 등의 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추적조사를 실시 가능

- 성과활용보고서는 과제 종료 다음해부터 5년 동안 매월 2월 말까지 제출 가능

다. 연구개발성과의 등록 및 기탁

□ 법적근거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3조(연구개발성과의 관리) ① <삭 제>

② <삭 제>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한 절차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전담기관에 등록·기탁해야 한다. 다만, 특허청이 해당 특허정보를 전담기관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등록·기탁 대상 및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⑤ <삭 제>

⑥ <삭 제>

⑦ <삭 제>

□ 주요 내용

○ 연구성과를 분야별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동 활용하기 위해 연구개발성과 관리업무를 전담하는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운영

※ (근거)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지정 고시(고시 제2022-41호, 2022.6.29. 일부제정)

○ 각 연구성과물이 발생할 때에는, 아래의 해당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의 담당부서와 사전확인 후, 자원활용이 가능한 성과물을 등록·기탁하여야 함

- 다만, 논문, 특허, 보고서원문의 경우 연구자가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 (www.htdream.kr)에 등록하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전담기관으로 등록

7. 연구개발성과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지정 현황>

구분	연구 성과물	전담기관	관리대상(등록·기탁 기준)	
등록	논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http://paper.kisti.re.kr)	국내외 학술단체에서 발간하는 학술(대회)지에 수록된 학술논문(전자원문 포함)	
	특허	한국특허전략개발원 (http://www.ripis.or.kr)	국내외에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정보	
	보고서원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http://nrms.kisti.re.kr)	연구개발 연차보고서, 단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의 원문	
	연구시설·장비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http://www.zeus.go.kr)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3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 및 부대비용을 포함)의 연구시설·장비 또는 공동활용이 가능한 모든 연구시설·장비	
	기술요약 정보	한국산업기술진흥원 (https://www.ntb.kr)	연차보고, 단계보고 및 최종보고가 완료된 연구개발성과의 기술을 요약한 정보	
	생명 자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http://www.biodata.kr 또는 http://www.kobis.re.kr)	서열발현정보 등 유전체정보, 서열구조상호작용 등 단백질체 정보, 유전자(DNA)·칩·단백질칩 등 발현체 정보 및 그 밖의 생명정보	
	소프트웨어		한국저작권위원회 (https://www.cros.or.kr)	창작된 소프트웨어 및 등록에 필요한 관련 정보
			정보통신산업진흥원 (https://www.swbank.kr)	
	표준		한국표준협회 (www.rndstandard.or.kr)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표준, 국제표준으로 채택된 공식 표준정보[소관 기술위원회를 포함한 공식 국제표준화기구(ISO, IEC, ITU)가 공인한 단체 또는 사실 표준화기구에서 채택한 표준정보를 포함함]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rnd.tta.or.kr)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측정표준 : eshop.kriss.re.kr) (참조표준 : www.srd.re.kr)				
기탁	생명 자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https://biorp.kribb.re.kr)	세균, 곰팡이, 바이러스 등 미생물자원, 인간 또는 동물의 세포·수정란 등 동물자원, 식물세포·종자 등 식물자원, DNA, RNA, 플라스미드 등 유전체자원 및 그 밖의 생물자원	
	화합물	한국화학연구원 (https://chembank.org)	합성 또는 천연물에서 추출한 유기화합물 및 관련 정보	
	신품종	국립농업과학원 (http://genebank.rda.go.kr)	생물자원 중 국내외에 출원 또는 등록된 농업용 신품종 및 관련 정보	

* 생명자원의 관리·유통 전담기관은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자원법)」 제11조에 따라 범부처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가 지정되어 있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으로 하되, 생명자원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생명자원법 제8조에 의해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탁등록보존기관에 생명자원의 정보와 실물을 등록·기탁할 수 있음 (붙임 1 참고)

7. 연구개발성과

<붙임 1> 생명자원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각 부처별 책임기관 및 기탁등록 보존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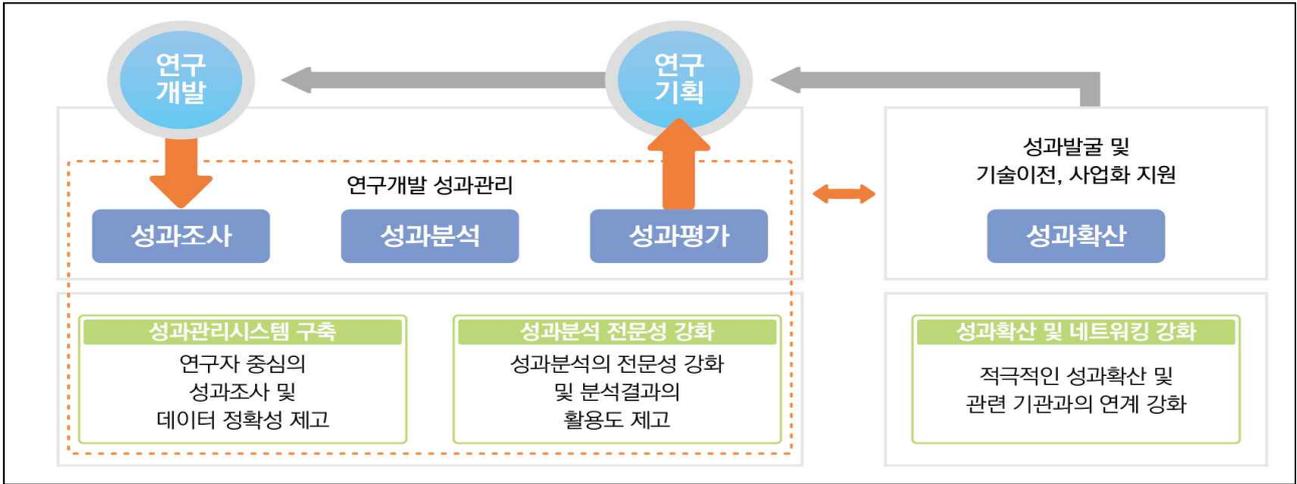
부처명	책임기관	기탁등록보존기관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바이오인프라 사업부 ■ (재)국가마우스표현형 분석사 업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중앙과학관 자연사연구실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바이오인프라사업부 ■ 서울대학교 한국세포주은행 ■ 한국뇌연구원 한국뇌은행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강릉분원 천연물연구소 ■ (재)국가마우스표현형분석사업단 ■ 한국화학연구원 한국화합물은행
농림축산 식품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농업과학원 ■ 국립축산과학원 ■ 국립수목원 ■ 국립산림과학원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 농림축산검역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진흥청 산하 92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농업과학원 지정 81개소 - 국립축산과학원 지정 11개소 ■ 산림청 산하 46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수목원 지정 28개소 - 국립산림과학원 지정 5개소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지정 13개소 ■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정 1개소
산업통상 자원부	미지정	미지정
보건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병관리청 바이오 뱅크과(국립중앙 인체자원은행) ■ 질병관리청 병원체 자원관리과(국가 병원체자원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병관리청 산하 28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지정 경북대 병원 등 17개소 - 국가병원체자원은행 11개소
환경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생물자원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생물자원관 지정 46개소
해양수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수산과학원 ■ 국립해양생물자원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수산과학원 지정 5개소 ■ 국립해양생물자원관 18개소
식품의약품 안전처	미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실험동물자원과

7. 연구개발성과

2. 성과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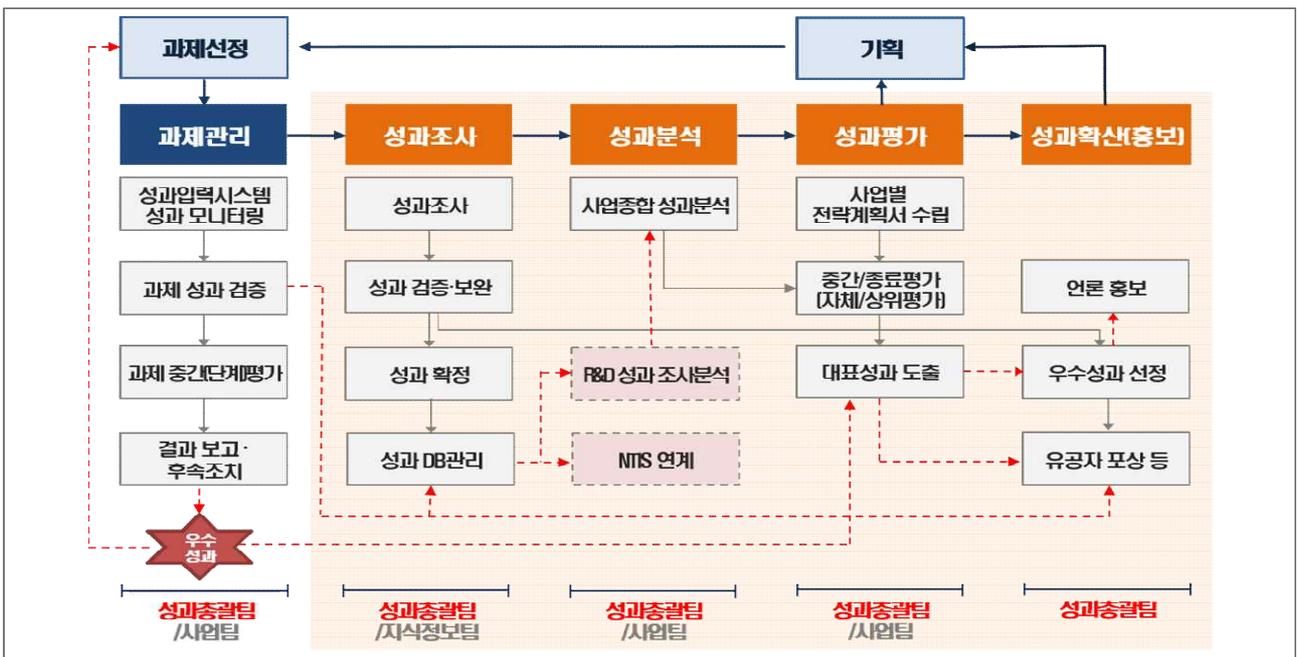
가. 성과관리 정의 및 주요내용

- (정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통해 달성할 전략목표, 단계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 활용방안 등을 경제성·능률성·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



□ 성과관리 체계

- 연구기획 → 과제 선정 및 관리 → 과제 평가(단계, 최종) → 성과조사·분석 → 성과확산으로 연계되는 연구개발 전주기적 성과관리를 실시
 -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HTDream)을 통해 성과를 수집하고 체계적인 성과관리 및 성과확산을 통해 R&D 투자의 효율성 제고



7. 연구개발성과

□ 성과관리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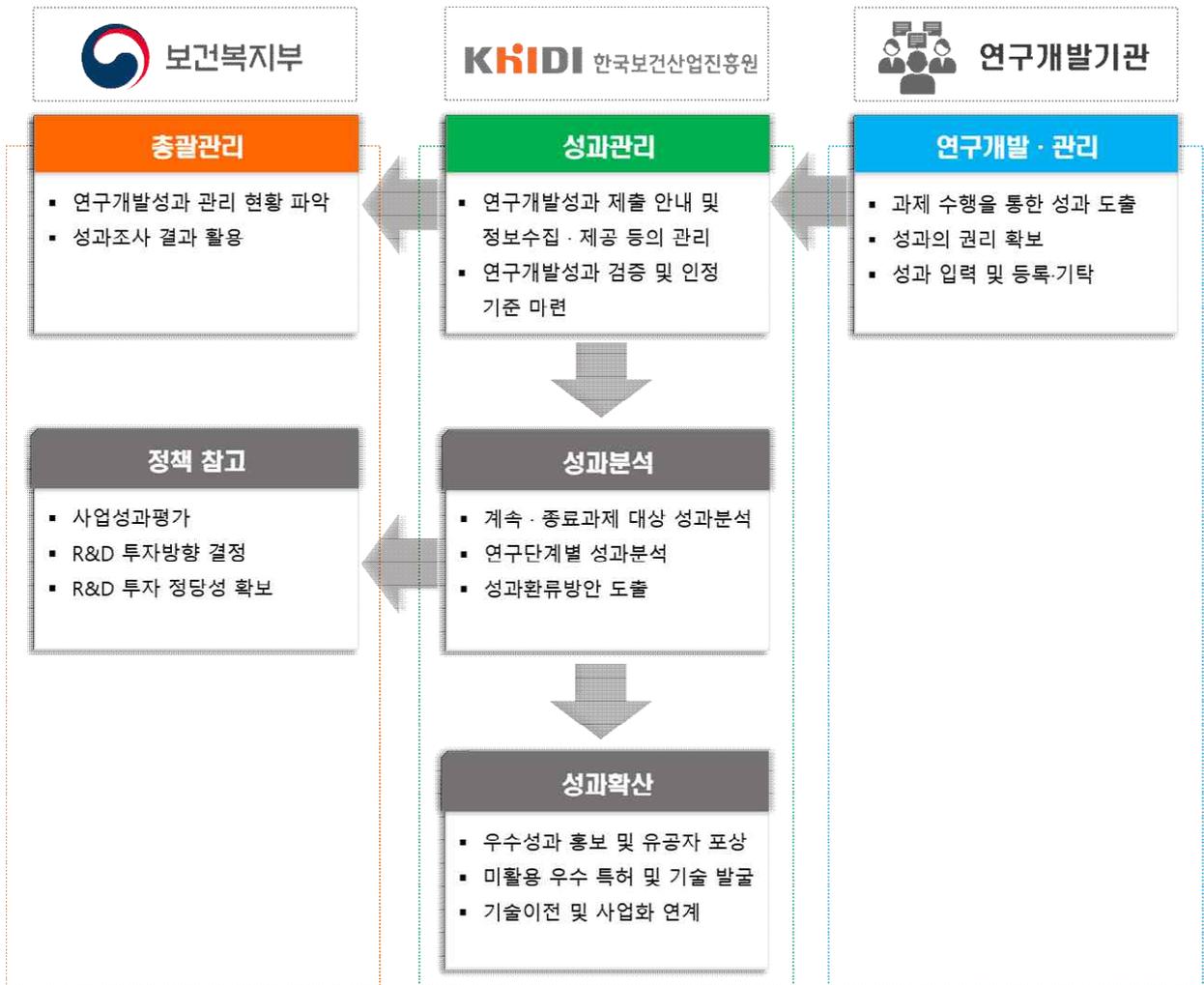
○ 성과관리 주요업무

구분	업무 추진사항	세부 사항
성과조사	• 성과조사 및 검증	• 신규/계속과제 및 종료과제(종료 후 5년)의 연구개발과제를 대상으로 매년 성과조사 실시
성과분석	• 연구성과에 대한 성과분석	• 양적 분석(연도별/사업별 기초통계분석, 정부출연금 10억 원당, 과제당) • 질적 분석(mrnIF, IF, SMART 분석 등)
성과평가	• 전략계획서 • 사업 중간평가 • 성과관리활용계획(종료평가) • 효과성 분석(추적평가)	• 성과분석을 통해 사업의 효율성, 효과성, 체계성 등의 평가 자료에 활용
성과 활용·확산	• 유공자 정부포상 개최 • 우수성과 발굴 및 사례집 발간 • 연구성과 홍보 • 미활용 우수특허(기술) 사업화 연계	• 우수성과 사례집 및 언론보도를 통해 대외적 홍보 •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후보 추천 및 유공자 포상 후보 추천 • 미활용 우수특허 발굴을 통해 기술사업화 프로그램 연계

- (성과조사) 보건의료 R&D 성과 현황 조사는 조사·분석 연도에 신규로 협약된 과제, 계속 지원 과제 및 조사년도 직전 5년간 종료된 연구개발과제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
- (성과분석) 논문, 특허 등 연구개발과제의 성과를 대상으로 양·질적 분석을 통해 연구개발비 투입대비 산출실적을 분석영향을 미치는지 분석
- (성과평가) 연구수행 주체가 사전에 성과목표와 지표를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성과달성 여부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성과중심 평가
- (성과 활용·확산) 우수성과 발굴을 통해 홍보, 포상, 사례집 발간 등을 통해 연구자의 연구의욕 고취하고 보건의료 R&D 성과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 제고

7. 연구개발성과

□ 성과관리 주체 및 역할



7. 연구개발성과

7.2 성과조사·분석

1. 개요

가. 목적 및 절차

□ 목적

-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입을 통해 발생한 산출물(성과)의 조사·분석을 통하여 보건의료 R&D 정책수립 및 사업기획 등 기초자료 제공
- 심층적인 성과활용 분석을 통하여 R&D 프로세스 개선 및 성과관리 강화

□ 조사·분석 절차 및 추진일정



구분	Y년			Y+1년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KISTEP	Y년 조사·분석 실시계획 수립				Y년 과제 및 성과 정보 검증							Y+1년 조사·분석 제도 개선사항 조사		
연구개발기관/연구자			성과 집중 입력											
	성과 상시 입력													
전문기관			성과정보 NTIS 입력	Y년 성과조사분석보고서						기술료, 사업화 실적 성과정보 NTIS 입력 마감			확정성과 이의신청	
	성과 상시 검증													

7. 연구개발성과

나. 법적근거

1)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분석·평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이하 "평가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에 관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0조(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분석·평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분석을 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계획(이하 이 조에서 "조사·분석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매년 11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3)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7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추적조사(제1항에 따른 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성과활용보고서 등을 통하여 조사·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할 수 있다.

4)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7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촉진을 위한 추적조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추적조사를 위하여 연구개발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 동안 매년 2월 말일까지 성과활용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7. 연구개발성과

2. 성과조사 및 성과수집·검증

가. 보건의료R&D 성과조사

□ 주요내용

- (조사대상) 당해연도 보건의료 R&D 사업 예산이 투입된 신규 및 계속과제
 - 예산체계 상 세부사업으로 집행된 연구개발과제를 최소 분석단위로 설정

<조사분석 단위>



- (조사시기) 당해연도 12월 ~ 익년도 1월까지 온라인 성과조사
- (조사항목) 기본적으로 과제 협약시 수집되는 사업정보, 과제정보, 성과정보로 구성
 -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업정보 2개, 세부과제 연구비, 기술분야, 연구인력 등 투입항목 13개, 논문, 특허 등 성과항목 6개 등 총 211개 항목

<보건의료R&D 성과조사 항목>

구 분	항 목		
1. 사업 정보	사업목적		
	사업내용(사업추진의 법적근거, 총사업비, 사업기획 형태 등)		
2. 과제 정보	기본정보 (과제명, 연구기간, 연구수행기관 등)	기술 분류	과학기술표준분류 : 연구분야, 적용분야
			연구개발성격
	실용화대상여부		
	6T관련기술		
	국가중점과학기술		
	기술수명주기		
	세부과제성격		
연구비(정부연구비, 대응자금(matching-fund 등))	연구 인력	연구책임자 정보	
		참여연구원 분포	
3. 성과	연구 개발 단계	연구 인력	사업화
	연구수행주체		인력양성
	지역		연수지원
과제요약서 정보	연구 인력	연구 인력	연구책임자 정보
			참여연구원 분포
논문	연구 인력	연구 인력	사업화
			인력양성
			연수지원
특허	연구 인력	연구 인력	사업화
			인력양성
			연수지원
기술료	연구 인력	연구 인력	사업화
			인력양성
			연수지원

7. 연구개발성과

- (성과수집·검증) 연구개발과제에서 발생한 성과를 수집하고 증빙자료 등을 활용하여 검증 실시



-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자)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성과를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HTDREAM)에 입력
- (전문기관) 입력된 성과를 보건의료 R&D 성과관리 매뉴얼에 따라 검증
- (성과제출) 검증된 성과와 사업 및 과제 정보를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시스템(NTIS)에 매년 1월에 제출
 - 성과정보 중 기술료 및 사업화 실적 정보는 매년 7월~9월까지 추가 제출

나. 보건의료R&D 성과활용조사

□ 조사목적

- 보건의료R&D 사업 종료과제의 성과활용현황을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여 활용 실태를 파악하고, 성과 홍보 및 후속 사업 기획 기초자료로 활용

□ 조사대상 및 방법

- (조사대상) 보건의료 R&D 사업의 과제 종료 후 5년 이내 과제
 - 최근 5년간 종료된 과제를 대상으로 종료된 다음해부터 성과활용조사를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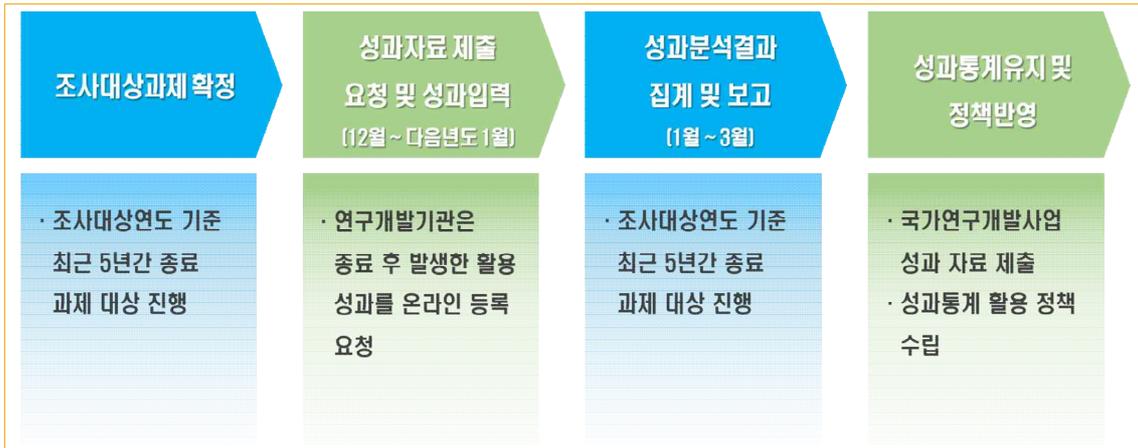
<성과활용조사 대상>



7. 연구개발성과

- (조사방법)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HTDream)을 통해 연구개발성과 활용보고서 제출
 - 일부 추가자료 확보 및 검증을 위한 현장방문 및 설문조사 병행 실시

<성과활용조사·분석 프로세스>



7. 연구개발성과

□ 주요 조사항목

- 보건의료 R&D 종합정보시스템(HTDream)을 통해 국가R&D 성과(NTIS), 보건복지부 성과, 기타 성과 항목으로 관리

<보건의료 R&D 성과조사 항목>

구분	성과항목		주요 조사내용
	NTIS	htdream	
국가R&D 성과관리 항목 (NTIS)	논문	논문게재	• 국내의 SCI급 학술지 및 비SCI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특허	특허 출원 및 등록	• 국내외 출원 및 등록된 특허
		기타 지식재산권	• 산업재산권 내 특허를 제외한 나머지 지식재산권 (디자인, 상표, 실용신안)
	기술료	기술이전	• 공동연구개발기관 또는 제3자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성과
		기술료 (정부납부기술료*)	• 민간 기술거래에서의 기술료(로열티, Royalty)와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출연금의 지원으로 개발한 성과물의 이용에 대한 대가로 정부에 납부하는 금액
	사업화	제품개발	• (제품개발) 시제품개발, 상품화 출시 등 제품개발 성과 및 당해 연도 발생 매출액 • (사업화) '상품화 출시' 성과만 NTIS 사업화 성과에 해당
		공정개발	• (공정개발) 개발된 공정기술의 현장적용 성과 및 이를 통한 당해 연도 생산비용 절감액 • (사업화) 대량생산 등 사업화를 위한 공정개발 성과만 NTIS 사업화 성과에 해당
		사업화 현황	• 창업 등 사업화 성과
	인력양성	인력양성	• 인력양성 발생 성과
	연수지원	학술 및 기술연수 지원	• 학술연수 및 기술연수를 목적으로 지원된 장단기 연수지원 성과
보건 복지부 성과관리	-	품목승인/인증/허가	• 국내외 제조품목허가 및 관련 승인/인증 성과
	-	임상시험승인	• 의약품 등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람을 대상으로 해당 약물의 약동, 약력, 약리, 임상적 효과를 확인하고 이상반응을 조사하는 시험으로, 임상시험 실시를 위한 IND, IDE 승인 성과 조사
	-	비임상시험 실시	• 비임상시험 실시기관의 시험계획서, 최종보고서 등
	-	진료지침개발	• 해당 질환을 보다 정확하게 진단하고 효과적인 치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검증된 진료지침 개발 또는 기존 진료지침 개정성과
	-	신의료기술 개발	• 신의료기술평가를 통해 안전성·유효성을 인증 받은 의료기술
	-	신규고용 창출	• 신규고용 창출 발생 성과
기타성과	-	생명자원	• 미생물자원(세균, 곰팡이, 바이러스 등), 동물자원(사람·동물세포, 수정란 등), 식물자원(식물세포, 종자 등), 유전체자원(DNA, RNA, 플라스미드 등)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생성된 생명정보 데이터
	-	화합물	• 유기합성 또는 조합화학 방법으로 합성된 분자량 1,000이하의 화합물 및 단일 성분 천연물
	-	소프트웨어	• 특정질환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 안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

* 정부납부기술료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별도 성과 수집 및 관리

* 사업별로 요구되는 기타 성과지표(생명연구자원의 기탁, 국제협력기반 등)가 조사시스템에 포함됨

7. 연구개발성과

3. 성과분석

가. 보건의료R&D 성과분석

□ 분석대상 및 시기

- (대상) 보건의료 R&D사업의 신규/계속과제 및 최근 5년 이내 종료과제
- (시기) 당해연도에 발생한 연구성과에 대하여 익년 1월말까지 성과조사 후 검증된 자료를 기반으로 성과분석 수행

□ 주요 분석 내용

- (분석방법) ①사업진단 및 기초분석, ②연구성과(현황) 분석, ③심층분석

	사업진단 및 기초분석	성과분석	사회·경제적 파급성과 분석
연구수행현황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비전 및 목표, 사업 구조, 사업수행형태, 과제수행기관 분석 등 사업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치 적정성 분석 사업의 목적과 성과목표에 부합되는 과제단위 성과 목표 및 지표의 문제점/개선점 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논문성과 특허성과 보건의료 고유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화 성과
사업추진체계적용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규과제 수요조사 체계분석 조사대상, 시점, 반영방법, 검토 방법 등 과제 중간 점검방법 사업추진 대표기관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출연금 10억 원당 성과/과제당 성과 연도별/사업별/기초통계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료비 절감분석 보건산업에 대한 파급효과 분석

① 사업진단 및 기초분석

- (사업비전 및 목표) 공익적 가치 중심의 R&D 투자 강화, 개방·연결·융합을 통한 R&D 혁신,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미래신산업 육성 등 사업비전 및 전략목표에 부합하는 성과지표 설정을 위한 분석
- (사업현황 분석) 과제 수 및 정부출연금 현황
- (사업수행 형태) 사업단, 연구단, 일반과제 등 연구 규모에 따른 연구수행 형태 분석
- (수행기관 분석) 출연(연), 대학, 대기업, 중·소기업 등 연구수행 주체 분석

② 연구성과(현황) 분석

- 다양한 성과지표를 활용하여 연구개발비 투입대비 산출실적을 분석
- 과학·기술적 성과(논문, 특허 등), 사회·경제적 성과(기술이전, 사업화 매출액 등), 보건의료 R&D 고유성과(품목허가, 임상시험승인, 진료지침 개발 등) 등의 양적 성과 및 질적 성과 분석

7. 연구개발성과

③ 심층분석

- (산업연관분석) 산업연관표를 바탕으로 하여 산업간 상호 연관관계를 수량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으로 보건의료R&D의 투입을 통한 산출액 추정
- (성과 영향요인 분석)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출연금, 과제수행기간 등을 투입요소로 보고 발생한 성과지표별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
- (시계열 추세 분석) 과제 수행 연차별 성과의 피크시점과 투입과 성과 간 시계열 분포 특성을 파악
- (사업 포트폴리오 분석) 효율성 분석모형으로 DEA(Data Envelopment Analysis) 방법에 의한 상대적 투자효율성을 분석하고, 투자 및 성과 간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SCI 논문, 등록특허, 사업화 매출액의 투자효율성을 가시화하여 보여줌

<심층 분석 항목>

구 분		내 용
파급효과	산업연관분석	• 산업연관표 활용 경제적 효과 분석
심층분석	성과 영향요인	• 경로분석, 회귀분석
	시계열 추세 분석	• 성과 피크시점, 성과의 시계열적 분포 특성
	사업포트폴리오	• 효율성 분석

7. 연구개발성과

4. 성과 활용·확산

가. 우수성과 발굴

□ 우수성과 선정 및 활용

- 매년 조사·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보건의료 R&D 우수성과를 선정하여 과기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우수성과 100선 후보에 추천하고 보건의료 R&D 우수성과 사례집 발간
 -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되 추천위원회를 통해 보건의료 R&D 우수성과 선정

조사·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우수성과 후보 pool 구성	우수성과 추천서식 작성	최종확정	서식 검토·보완 및 과기부 제출
전문기관	연구자	추천위원회	전문기관, 복지부

- 우수성과를 발굴한 연구자를 보건의료기술진흥 유공자 정부포상 후보자로 추천하고 우수성과를 카드 뉴스 등을 통해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HTDream) 및 SNS 등을 통해 홍보

나. 우수성과 홍보

□ 언론홍보

- 보건의료 R&D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를 대상으로 e-mail 등을 활용해 매달 우수성과 발굴시 언론보도 지원 안내
 -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우수성과 대상 여부를 판단하여 홍보 대상 결정

프로세스	주요 업무내용	수행주체
홍보 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 연구성과 언론홍보계획 조사 - 이메일 및 HTdream 홈페이지를 통한 언론홍보계획 접수 	연구자/ 연구기관
내부 검토 및 홍보 여부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검토1차(성과총괄팀↔사업담당팀) ■ 홍보 여부 결정(성과총괄팀) 	진흥원 (성과총괄팀/ 사업담당팀)
보도자료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자) 보도자료 초안 작성 ■ (진흥원) 보도일정 조정 및 보도자료 완성 	연구자/진흥원* *대외협력팀 협조
보도자료 배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성과 보도 	언론

다. 우수 특허(기술) 발굴 및 기술사업화 연계

□ 미활용 우수 특허(기술) 발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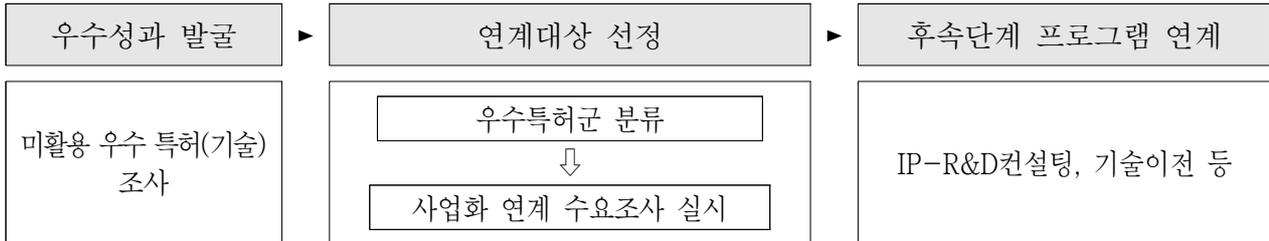
7. 연구개발성과

- 보건의료 R&D를 통해 발생한 국내 등록 특허 중 권리 소멸상태 이거나 이전된 특허 등을 제외하고 수요조사를 통해 활용 기회 마련
 - (수요조사 대상 특허 선정) 주변 환경요인, 법률적 무결성, 특허권 보호범위, 권리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요조사 대상 특허 선정

평가항목	평가내용	관련지표
주변환경 요인	시장 및 국내외 환경요인에 관한 기술적 속성의 충족 정도	사업별 출원건수, 출원인별 특허출원동향
법률적 무결성	취하, 거절, 포기되었는지 여부 / 등록여부 / 소멸여부	권리소멸, 존속기간만료여부 등
특허권의 보호 범위	청구항에 나타난 권리범위가 넓고 다면적인지 여부	청구항 수, 피인용회수 등
권리관계	특허의 경제적 가치 창출 가능성에 연관되는 권리자, 권리 관계에서 안정적이고 우월적이며 권리 행사와 처분에 제약이 없는 특허 여부	권리이전 이력존재 여부, 패밀리 특허 출원국 수 등
종합적인 충실도	권리로서의 우수한 특허권이 가져야 할 다양한 관점에서 긍정적 속성의 충족 정도	상기 지표 및 권리내용 기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우수 특허(기술) 실용화 지원

- 미활용 우수 특허(기술) 및 기술이전 희망 수요 파악 후 기술가치평가, 기술사업화 지원 사업 등과 연계하여 성과 확산 추진



7. 연구개발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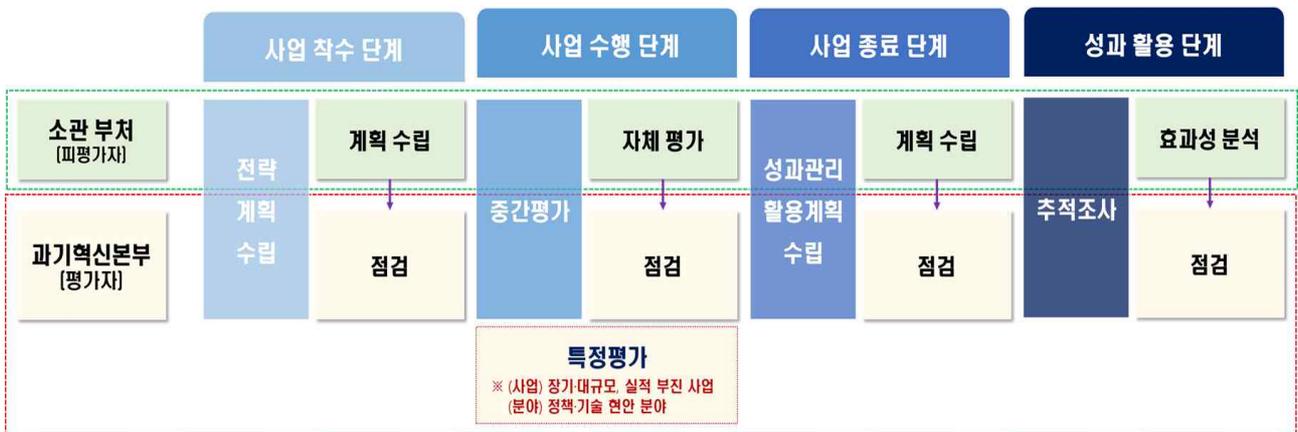
7.3 연구개발 성과평가

1. 개요

가. 목적 및 방법 등

- (목적)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 활동을 성과 중심으로 평가하고 연구성과를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함으로써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향상
- (대상) 연구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
- (주체) 과기정통부 주관으로 세부사업별 적절성 및 타당성 점검
- (체계) 전략계획서 수립 → 중간평가(특정평가) → 종료(성과관리·활용 계획) → 추적 (효과성 분석)평가 실시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 추진 체계 및 일정>



구분	Y-1년	Y년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전략계획 수립		대상사업 선정	(소관 부처) 전략계획서 설정					(과기부) 점검 실시			
중간평가	대상사업 선정	(소관 부처) 자체 평가 실시			(과기부) 점검 실시						
성과관리 활용계획						대상사업 선정	(소관 부처) 성과관리 활용계획 수립		(과기부) 점검 실시		
추적조사 (효과성 분석)		대상사업 선정	(소관 부처) 효과성 분석 실시					(과기부) 점검 실시			

- (방법) 부처별 자체평가(점검) 계획에 근거하여 자율적 평가(점검) 후, 과기정통부에서 자체평가 결과에 대한 적절성(적절/부적절)을 점검

7. 연구개발성과

나. 법적근거

1)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분석·평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이하 "평가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에 관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의 기본원칙) ① 정부는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평가를 성과 중심으로 실시하여 연구기관·대학 및 기업 등에 대한 연구개발투자의 효과성과 책임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성과평가를 실시할 때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연구자의 창의성을 존중하고 연구개발사업·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기관(이하 "연구개발사업등"이라 한다)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성과평가를 실시할 때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

④ 정부는 성과평가를 실시할 때 연구개발사업등에 대한 평가를 상호 연계하는 등 평가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정부는 성과평가를 실시할 때 질적 성과지표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등 연구개발사업의 질적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⑥ 정부는 성과평가를 실시할 때 연구개발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국내외 특허동향, 기술동향 및 표준화 동향을 조사하고 그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⑦ 정부는 성과평가를 실시할 때 연구개발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성별 등 특성을 반영하였는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⑧ 정부는 성과평가의 결과를 관련 정책의 수립, 사업의 추진 및 예산의 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⑨ 정부는 연구성과가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연구성과를 확산하고 기술이전 및 실용화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⑩ 정부는 성과평가의 과정과 결과, 연구성과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소관 정책, 사업, 업무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 전략계획의 수립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연구개발사업의 전략목표, 연차별·단계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등을 포함한 사업 전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전략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개발사업 개요
2. 연구개발사업이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전략목표
3.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차별·단계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4. 연구개발사업 평가계획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사업 전략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업 전략계획의 수립 및 제3항에 따른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과평가실시계획에 따라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중간 성과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체평가를 실시하기 전 매년 당해 연도 성과평가실시계획에 따라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자체평가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자체평가의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자체평가가 제6조제1항의 사업 전략계획과 제2항의 자체평가실

7. 연구개발성과

시계획에 따라 실시되었는지 여부 및 결과의 적절성을 점검할 수 있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체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현장방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거나 참여한 기관, 단체 또는 기업의 장은 현장방문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자체평가의 실시, 제2항에 따른 자체평가실시계획의 수립, 제4항에 따른 자체평가 점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특정평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정한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특정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장기간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2. 사업 간 중복조정 또는 연계가 필요한 사업
3. 다수 중앙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4. 국가적·사회적 현안으로 대두된 사업
5. 제7조제4항에 따른 점검 결과 심층적인 평가가 필요한 사업
6.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특정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정평가의 방향·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에게 특정평가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정평가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평가결과에 따른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정평가의 결과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⑥ 특정평가의 실시와 그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연구성과 관리·활용 계획의 마련)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구성과의 관리·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성과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연구성과 관리·활용의 기본방향
2. 특허, 논문, 표준 등 연구성과 유형별 관리·활용 방법에 관한 사항
3. 연구성과 데이터베이스의 종합적 관리에 관한 사항
4. 연구성과 관리·활용 관련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성과관리기본계획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성과관리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구성과의 관리·활용에 관한 세부적인 대상·방법 및 일정을 포함한 실시계획(이하 "성과관리실시계획"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성과관리기본계획 및 성과관리실시계획을 마련하는 경우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성과관리기본계획 및 성과관리실시계획을 공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에 알려주어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성과관리기본계획 및 성과관리실시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추진상황의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제5항에 따른 추진상황의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대학 등의 연구성과 관리·활용 계획 마련) ① 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은 연구성과의 관리·활용 계획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이전 및 사업화(연구성과를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생산·판매하거나 그 과정의 관련 기술의 향상에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정평가 시 제1항에 따른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의 연구성과의 관리·활용 계획의 마련 여부와 추진실적 등을 평가항목에 포함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연구성과의 관리·활용 계획을 마련하여야 하는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의 범위 및 마련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연구개발성과

제18조(연구성과 관리·활용 실태조사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성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연구성과 관리·활용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성과관리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연구개발사업등의 추진 성과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연감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성과 관리·활용 실태조사 및 제2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연감을 작성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업의 대표, 교육기관·연구기관의 장, 과학기술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7. 연구개발성과

2. 성과평가

구분	성과평가	내용
착수단계	전략계획서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사업기획-추진의 일관성을 제고</u>하고 성과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해 <u>사업목표, 추진방안, 성과목표·지표, 평가시기</u> 등 사업 전반에 대한 <u>계획서의 적절성 및 타당성 점검</u>
수행단계	중간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의 효율적 관리와 성과 제고를 위해 <u>사업 추진과정 및 관리체계, 목표달성 및 성과의 우수성, 환류계획</u> 등을 정성평가
	특정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과학기술 정책 이슈 및 사업 간 연계·조정</u> 등이 필요한 사업을 과기정통부가 직접 선정 후 <u>심층 평가</u> 하여 <u>평가결과 환류</u>
종료단계	종료평가 (성과관리·활용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종료된 사업을 대상으로 성과목표의 최종 달성도와 연구성과의 가치창출 연계</u>를 위해 <u>성과 활용·확산 계획</u>을 평가
활용단계	추적평가 (효과성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사업종료 후 일정기간 동안의 기술이전·사업화 실적</u> 등 <u>성과 활용·확산 결과</u> 및 <u>파급효과</u>에 대한 <u>조사·평가</u>

가. 전략계획서 점검

□ (개요) 사업기획-추진의 일관성을 제고하고 성과평가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해 사업 전략계획서*의 적절성 및 타당성 점검

* 사업목표, 추진방안, 성과목표·지표, 평가시기 등 사업 전반에 대한 기획을 국회 확정 예산규모에 맞춰 수정한 계획서

□ (점검대상) 당해연도 신규사업, 차년도 중간평가 대상사업, 계획 수정이 필요한 사업* 등을 대상으로 점검 실시

* 중간·특정평가 결과에 따라 계획 수정이 필요한 사업, 예산증감 2배 이상 사업, 환경변화로 계획 변경이 필요한 사업, 추가 계획수립 필요 사업 등

7. 연구개발성과

- (점검절차) 사업별 전략계획서 수립·제출(소관부처, 4~6월) → 점검(과기정통부, 7월~12월)
 - (전략계획서 제출) 부처는 작성지침을 바탕으로 사업별 전략계획서를 작성하여 관련자료*와 함께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에 등록(6월)
 - * 기획보고서, 예타보고서, 사업내용 변경 사유서, 확정예산 설명자료, 성과 목표 및 실적 관련 자료 등
 - (점검주체) 과기정통부 주관으로 사업별 전략계획서의 적절성과 타당성을 점검하고 필요시 분야별 전문가 자문 추진
- (점검방법) 사업개요, 성과목표·지표, 평가주기 등에 대해 점검
 - 사업기획 내용의 충실성*, 단계별 성과목표의 타당성 및 구체성, 성과지표의 성과목표와의 연계성 등 중점 검토
 - * 사업예산 심의과정의 사업내용 축소·변동은 참작, 주요 연구개발 내용 방향성에 변동이 있는 경우 개편 사유 함께 제출

<전략계획서 점검 항목 및 기준>

항 목	점검 기준
1.사업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내용의 충실성 및 부합성 • 사업 유형 구분의 타당성 • 기술분야(내역사업 또는 전략과제)별 로드맵 제시 여부 • 위험요인 및 극복방안, 타겟 수혜자 제시 여부
2.성과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략목표와 최종 성과목표의 연계성 • 단계별 성과목표의 타당성 및 구체성 • 단계별 성과목표와 사업 기간과 부합 여부 • 단계별 성과목표 가중치의 합리성
3.성과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목표(단계별 성과목표 포함)와의 연계성 • 질적 지표 중심 설정 여부 • 측정 방법의 타당성
4.평가지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기간·단계 고려한 평가 시기 설정 여부

- (결과활용) 전략계획서는 중간평가에서 평가기준으로 활용하고, 사업별 성과지표 달성률은 NTIS 내 달성도 모니터링 단계를 통해 입력·점검

나. 중간평가

- (개요) 사업의 효율적 관리와 성과 제고를 위해 사업추진 과정 및 관리체계, 목표달성 및 성과의 우수성, 환류계획 등을 정성평가
- (평가대상) 성과창출 기간을 고려하여 착수 후 3~4년 경과한 사업을 평가 대상으로 하고, 부처의 평가부담 완화를 위해 3년 주기로 실시
 - ※ 전략계획서 수립 시 평가지기 설정

7. 연구개발성과

- (평가절차) 지침통보 및 자체평가계획 수립(과기정통부, 11~12월) → 자체평가(부처별, 1~3월) → 상위평가(과기정통부, 4~5월)
 - (자체평가계획 수립) 부처는 소관사업에 대해 부처별 자체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NTIS에 등록하여 과기정통부에 제출(12월)
 - *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식, 절차 및 일정, 환류 이행체계, 지표 및 배점 설정, 종합적 성과분석을 통한 평가결과의 객관성 확보 등
 - (자체평가) 부처는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체평가를 실시(1~3월), 평가결과 및 관련자료**를 NTIS를 통하여 과기정통부에 제출(3월)
 - * 자체평가계획에 따라 분과위원회 구성, 필요시 성과우수성 검토를 위한 전문가 그룹 구성·운영 가능
 - ** 자체평가보고서, 성과분석보고서 등 자체평가 과정·근거·결과 자료
 - (상위평가) 과기정통부는 상위평가위원회 및 평가지원단(KISTEP)을 구성하여 평가등급에 따라 적절성 점검을 차별화하여 실시(4~5월)
- (평가방법) 자체평가(추진과정, 성과, 향후계획) → 상위평가(적절/부적절)
 - (자체평가) 자체평가계획에 근거하여 추진과정, 성과, 환류계획을 정성평가 하고, 사업특성에 따라 배점한도를 자율적으로 설정
 - * (가·감점) 우수성과 100선, 국제표준 채택, 표준특허 등록, 과거 평가결과 등

<'22년 자체평가 항목>

평가부문	평가지표	평가내용	배점
추진과정	①투입, ②과제관리, ③위험관리, ④수혜자, ⑤환류	• 투입-관리-환류체계 적절성 • 지표당 10점, 2개에서 4개까지 설정	20~40점
성과	①질적 우수성 ②성과목표 부합성	• 성과목표 가중치를 적용하고 정성평가	50~70점
환류계획	성과분석과 환류계획의 구체성	• 성과분석을 통한 개선사항 및 향후계획의 논리성, 구체성을 평가	10점
총합			100점

- 등급점수 및 등급부여 기준을 고려하여 3등급으로 결과를 도출
- 자체평가 결과의 관대화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흡' 등급 사업 수는 '우수' 등급 사업 수의 30% 이상이 되도록 등급부여
 - ※ 최근 3년간 상위평가 결과 우수 등급 이상 사업 수와 미흡 등급 이하 사업 수 비율 고려
- (상위평가) 자체평가 등급에 따라 점검수준을 차별화
 - '우수' 등급 사업 : 1차 점검(평가과정·근거·결과의 타당성 점검 → '부적절' 사업은 부처가 재평가) → 2차 점검(최종 '적/부' 확정)
 - '보통' 등급 사업 : 1차 점검(과정 및 결과 검토 → '부적절' 사업은 부처 소명) → 2차 점검(최종 '적/부' 확정)
 - NTIS에 성과지표 달성도 입력 여부, 목표 달성률 등을 점검하여 목표달성 미흡* 사업 확인

7. 연구개발성과

* (예) 지표달성도 2번 이상 미입력, 2년 연속 지표 달성률 60% 이하 등

- 자체평가 '미흡', 적절성 점검 결과 '부적절', 목표달성 미흡 사업 중 심층평가가 필요한 사업은 특정평가* 대상사업으로 관리

* 하반기에 2~3개 세부사업을 대상으로 개별사업 특정평가 실시

□ **(결과활용)** 차년도 예산 배분에 반영하여 평가-예산의 실질적 연계를 도모하고 구체적인 개선의견을 제시하여 사업의 효과성 제고

- (사업개선) 부처는 평가결과에 포함된 사업 개선 의견을 향후 사업 추진계획에 반영
- (결과공개) '22년부터 중간평가 결과(자체평가 포함)를 NTIS 성과평가 통합관리시스템에 공개
- (예산연계) 평가결과 '미흡 또는 부적절' 사업은 예산 삭감을 원칙으로 하고, '우수·적절' 사업은 예산 증액 요소로 고려
- (정부포상) 사업을 수행한 연구자, 사업을 관리한 전문기관 담당자 및 부처 연구개발 평가 담당자 등에 대한 포상

다. 특정평가

□ **(개요)** 과학기술 정책 이슈 및 사업 간 연계·조정 등이 필요한 사업을 과기정통부가 직접 선정 후 심층 평가하여 평가결과 환류

□ **(평가방향)** ①소재·부품·장비 관련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R&D 성과 제고를 위해 ②정책·기술분야 및 ③개별사업에 대한 특정평가 확대·강화

- (소부장 사업) 소부장 관련 사업(40개) 대상으로 주요성과 등을 매년* 점검하여 문제점 개선·보완

* 소재·부품·장비 기술특별위원회('19.12.5)에서 소부장 관련 사업은 '23년까지 매년 특정평가 실시하는 것으로 심의·의결

- (정책·기술 분야) 대안 제시 중심의 정책/기술 분야에 대한 특정평가를 실시하여 평가 결과 환류 강화
- (개별사업) 부처 자체평가 중심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특정평가가 필요한 사업을 평가대상으로 포함

* (예시) 부적절 사업 중 심층평가 필요 사업, 목표달성 미흡 사업(지표달성도 2번 이상 미입력, 2년 연속 지표 달성률 60% 이하) 등

□ **(주요 내용)** 평가 유형을 고려하여 각 유형에 맞는 평가이슈 도출, 평가방법 등을 활용하여 맞춤형 평가 실시

- (소부장 사업) 품목 중심의 R&D 계획 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 계획의 적정성, 주요 성과, 예산 집행률 등 점검
- (정책·기술 분야) 2~3개 분야를 선정하여 정책분석, 평가 이슈 등을 도출하고 추진

7. 연구개발성과

체계, 효율성 등을 심층 분석 후 결과 도출

구 분	1)분야 선정	⇒	2)정책분석 및 이슈도출	⇒	3)사업평가 및 결과도출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R&D 계획 검토 ○ 사업 R&D 성과 검토 ○ 수요조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 동향/성과 분석 ○ 평가이슈 발굴 ○ 대상사업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인진단 ○ 추진체계 분석 ○ 평가결과 도출
분석대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R&D투자 자료 ○ 성과관련 데이터 ○ 논리연계모형 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문조사, 사례분석 ○ 연구진 회의 등

○ (개별사업) 적절성, 효과성, 효율성, 체계성 등 평가기준을 고려하여 사업 특성에 맞는 평가를 실시하고 사업 개선사항 도출·환류

□ (결과 환류) 평가결과는 분야(사업)의 문제점 개선·보완, 예산 배분·조정, 유사 연구개발 사업의 기획, 유공자 정부포상 등에 활용

○ (정책연계) 정책·현안 분야에 대한 평가결과는 해당분야 정책수립 시 반영하여 신규사업 추진 및 사업 개편 등에 환류

○ (투자연계) 평가결과를 사업 간 유사·중복 조정, 구조 개편, 규모 조정 등 예산 배분·조정 에 활용

라. 종료·추적평가

□ (개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종료 이후 지속적 성과관리를 통해 국가연구개발의 파급효과를 분석

○ (성과 관리·활용 계획) 종료 사업을 대상으로 추진결과에 대한 종합 분석을 실시하고, 사업추진성과의 관리·활용 계획 수립

○ (효과성 분석) 사업 종료 후 일정기간(5년 이내)에 성과 관리·활용 결과, 파급효과(과학·기술·경제·사회적) 등 분석

□ 성과 관리·활용 계획 수립 및 효과성 분석 대상 사업(안)

○ (성과 관리·활용 계획) '19~'21년 종료된 18개 부처 115개 사업(18조 6,285억원)

○ (효과성 분석) '17년 종료된 9개 부처 21개 사업(1조 6,494억원)

※ 추후 사업 규모, 사업 특성 등을 고려하여 수립·분석 대상사업 확정·안내

□ (절차) 지침통보(과기정통부, '22.6월) → 수립 및 분석(소관부처, '22.7~9월) → 점검(과기부, '22.10~11월)

① (수립·분석 및 제출) 부처는 지침을 바탕으로 성과 관리·활용 계획 수립 및 효과성 분석을 실시하고, NTIS에 관련 자료 등록

② (점검) 과기정통부에서 점검하되 필요시 적절성 점검 수행

※ 국고지원이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점검대상사업 선정

7. 연구개발성과

□ (점검방법) 수립·분석 내용의 충실성, 계획의 타당성 등을 점검하고, 부처·사업별 우수성과와 효과 확인

○ 성과 관리·활용 계획 자체점검 항목·지표 및 기준

항목	점검지표	점검 기준	비고
성과목표 달성도	I. 사업목표 달성도	① 사업 전략목표 달성도	%
		② 성과목표지표 달성도	%
	II. 과정 및 성과의 우수성	① 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과정의 우수성	점수
		② 전반적 성과의 양적·질적 우수성	점수
		③ 대표사례의 우수성	점수
성과 관리·활용 계획 적절성	III. 성과 관리 방안 및 체계	① 성과 관리 항목의 적절성	체크리스트
		② 성과 관리 조직·인력·예산의 적절성	체크리스트
		③ 효과성 분석 계획의 적절성	체크리스트
	IV. 성과 활용·확산 계획의 구체성	① 성과 수요자 및 수혜자 분석 적절성	체크리스트
		② 성과 공급자와 수요자 연계 방안	체크리스트
		③ 파급효과 제고 방안	체크리스트
종합의견*			우수/보통

* 성과목표 달성도의 I.사업목표 달성도 90% 이상, II.과정 및 성과의 우수성 90점 이상이면, 성과 관리·활용 계획의 모든 체크리스트 항목이 이행되었으면 우수 등급 부여, 나머지는 보통

○ 효과성 분석 자체점검 항목·지표 및 기준

항목	점검지표	점검 기준	비고
전략목표 관리	I. 전략목표 달성과정·기여도	① 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 과정	체크리스트
		② 사업의 전략목표 기여도	체크리스트
성과 관리·활용 활동	II. 성과 관리·활용 계획 추진과정	① 성과 관리·활용 계획 이행도	체크리스트
		② 성과 관리 항목의 타당성 및 적실성	체크리스트
		③ 성과 관리 조직·인력·예산의 적절성	체크리스트
	III. 성과 관리·활용 계획 추진결과	① 성과 공급자와 수요자 연계 활동	체크리스트
		② 파급효과 제고를 위한 업무추진 실적	체크리스트
성과 활용·확산	IV. 성과 활용·확산 효과	① 성과 관리·활용 활동 결과 및 효과성	체크리스트
		② 성과 활용·확산 대표사례	체크리스트
		③ 성과 관리·활용 활동 성공·실패 요인	체크리스트
종합의견			우수/보통

* 모든 체크리스트 항목이 이행되었으면 우수 등급 부여, 나머지는 보통

□ (결과활용) 지속적 성과관리·활용을 통해 사업 효과 제고

○ 성과 관리·활용 계획 및 효과성 분석 결과를 NTIS를 통해 등록·공개

7. 연구개발성과

7.4 지식재산권 포기 승인

1. 개요

가. 취지

-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창출된 국내·외 출원·등록한 지식재산권을 포기하려는 경우 검토기준, 승인기관, 신청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이 포기 승인을 신청한 국내·외 출원·등록 지식재산권에 대해 요건 검토 여부 등을 확인하여 승인하는 업무에 활용

나. 법적근거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7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①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연구개발기관(이하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라 한다)은 연구개발성과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성과의 유지·관리·공동활용, 연구개발성과와 관련된 정보의 공개·연계, 연구개발성과와 관련된 추가적인 연구개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4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④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국내외에 등록된 지식재산권을 포기하려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지식재산권 창출에 기여한 연구자 또는 중소기업에 양도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 경우 그 양도로 발생한 수입의 사용에 관하여는 제41조를 준용한다.

3)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식재산권 포기 승인 업무 매뉴얼(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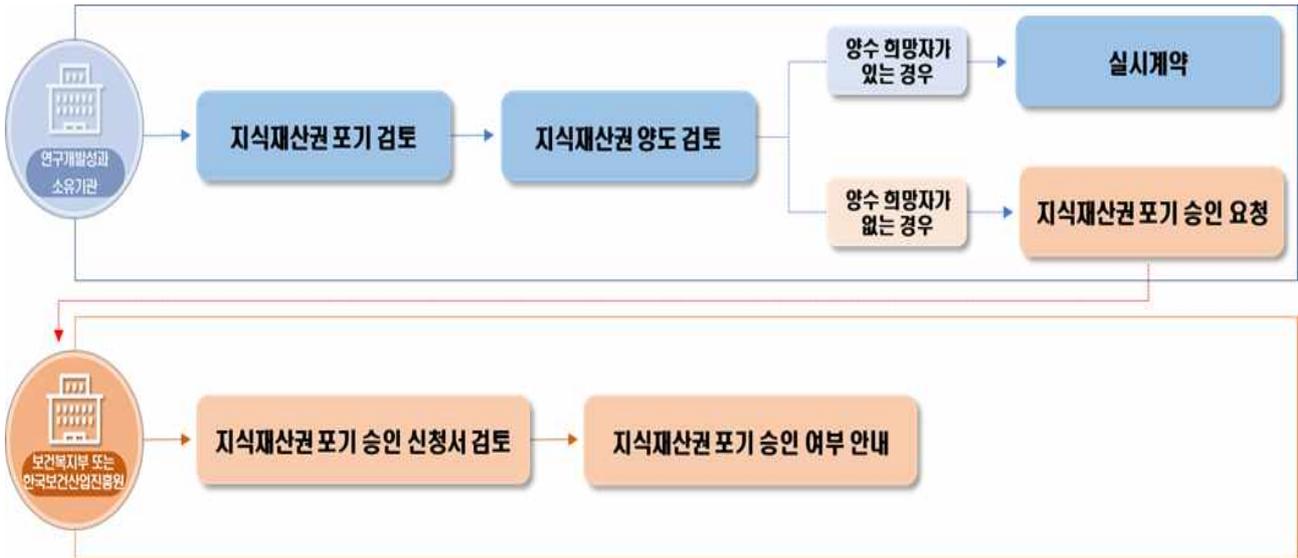
다. 적용 범위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을 받아 국내·외 등록된 특허와 실용신안, 디자인 등의 지식재산권 중 미활용 되거나, 정상적인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
 - 공동명의로 국내·외 등록된 지식재산권은 권리를 공유한 주관 및 공동연구기관 모두 해당 지식재산권을 포기하는 데 동의한 경우, 공동권리자의 폐업·연락 두절 등 정상적인 지식재산권의 권리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 포기 승인 신청 가능
 - 전용·통상실시권이 설정된 지식재산권을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실시권자의 동의를 받은 이후 해당 지식재산권의 포기 승인의 신청 가능. 단 실시기간의 종료 및 추가 실시 의사가 없음을 확인한 경우 포기 승인 신청 가능

7. 연구개발성과

- 등록된 지식재산권 지원에 정부와 민간의 재원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정부의 자금지원이 포함되어 국가연구개발성과에 해당 되는 경우 포기 승인 신청 필요

라. 지식재산권 포기 승인 절차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국내·외 등록된 지식재산권 중 미활용 되거나 정상적인 유지가 불가능한 지식재산권을 포기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에게 포기 승인 신청
 - 지식재산권 창출에 기여한 연구자 또는 중소기업에 양도 검토 우선 실시
 - 양수 의사가 있는 경우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양수 의사가 없는 경우 지식재산권 포기 승인 신청을 실시
-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은 지식재산권 포기 승인 신청에 대해 검토 후 승인 여부를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에게 안내

7. 연구개발성과

2.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

가. 지식재산권 포기 검토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국내·외 **등록한** 지식재산권 중 미활용 지식재산권을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에게 포기 승인 신청
 - 기술실시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특허나 기술이 쇠퇴되었거나 낙후된 등록특허, 사업성이 부족하여 권리유지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등록특허 등
 - <삭 제>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국내·외 **등록한** 지식재산권의 정상적인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에게 포기 승인 신청
 - 공동권리자가 소유권의 유지 의사가 없는 지식재산권이나 공동권리자가 폐업·연락 두절 등으로 정상적인 지식재산권의 권리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 그밖에 국내·외 **등록한** 지식재산권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등

나. 지식재산권 양도 검토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국내·외 **등록한** 지식재산권을 포기하기 이전에 양도를 검토
 - 연구책임자를 포함하여 ‘지식재산권의 창출에 기여한 연구자’ 또는 ‘중소기업’에 대한 양도를 우선적으로 검토함
 - 양수 의사가 있는 연구자나 중소기업이 존재할 경우 혁신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양도계약을 체결
 - 이때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필요 시 국내기업 보호를 위한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 시킬 수 있음
 - * (예시)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제3자 실시를 허락할 수 있는 통상실시권 보유, 양수인은 국내기업에 대해 해당 지식재산권을 행사하려는 경우 양도한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과 사전 협의 등
 - 양도 검토 시 연구자와 중소기업 간에 별도의 우선순위는 존재하지 않음
 - 양수인 또는 양수기관이 없는 경우,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에게 포기 승인을 신청

7. 연구개발성과

다. 지식재산권 포기 승인 신청

□ 신청양식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이 국내외 **등록한** 지식재산권을 포기 신청 하려는 경우 [별지1]을 참고 및 활용 가능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이 [부록1]에 따라 국내외 **등록한** 지식재산권을 포기 승인 신청 시 출처를 명확히 기재 하여야 함
 - 출처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에서 연구개발기관 내부 특허발명자(연구자)나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특허정보검색서비스(KIPRIS) 등을 통한 확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은 또는 중앙행정기관, 전문기관 등에 문의하여 해당 출처를 기재를 하여야 함

□ 신청기한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국내외 **등록한** 지식재산권의 포기 승인신청을 하려는 경우 그 지식재산권의 권리가 소멸되기 90일 전까지 신청하고, 소멸되기 전까지 승인을 받아야 함
- <삭 제>
- (등록된 지식재산권)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이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연차료를 납부하지 않기로 결정한다면,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포기하려는 지식재산권의 효력이 소멸되기 전*에 포기 승인을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함
 - * 특허법 상 지식재산권의 유지에 관한 연차료를 납부하지 않기로 결정하더라도 납부기간 경과 후 6개월까지는 지식재산권의 효력이 유지됨. 이 6개월의 연차료 추가 납부기간이 경과 되면 해당 연차료의 만료기간 다음날로 소급해서 지식재산권의 효력이 소멸됨

□ 지식재산권이 복수의 국가연구개발과제를 통해 창출된 경우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지식재산권이 복수의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창출된 경우에는 그 중 기여율이 가장 큰 연구개발과제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 등에게 지식재산권의 포기 승인을 신청할 수 있음
- 연구개발과제 기여율이 동일한 경우, 특허출원서에서 맨 처음 우선 출처기재 된 연구개발과제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 등에 신청
 - 지식재산권이 중앙행정기관의 기여율이 동일하고 공동명의라면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주관연구기관과 공동연구기관 등) 간 지식재산권의 포기를 상호 간 합의한 경우에만 사업 주관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 등에 해당 지식재산권의 포기를 신청할 수 있음
 - 이때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 중 해당 지식재산권을 주도적으로 관리해오거나 기관 간 별도 협약에 의한 대표기관이 있는경우 해당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이 국내외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포기 승인 신청

7. 연구개발성과

3.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가. 지식재산권 포기 승인 신청서 검토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으로부터 지식재산권의 포기 승인을 신청 받은 후 [별지1]의 포기 승인 신청 점검항목 등을 참고하여 신청의 적절성 등을 검토
 -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은 지식재산권 포기 승인 신청과 관련된 증빙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요청할 수 있음
- 지식재산권 포기 승인 신청에 대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연구사업관리자* 검토를 통해 승인 여부 결정.
 -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연구개발혁신본부의 본부장 및 연구개발 사업별 담당 부서의 장(단장)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이 제출한 지식재산권 포기 승인 신청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승인 여부를 판단
 - 지식재산권 포기를 승인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

나. 지식재산권 포기 승인 여부 안내

- 지식재산권의 포기 승인 신청에 대해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검토결과를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에게 공문 등을 통해 승인의 여부 등을 안내

7. 연구개발성과

[별지] 서식

[별지 제1호서식]

지식재산권 포기 승인의 신청양식 예시

1. 지식재산권의 포기 승인 신청 연구개발과제

발명의 명칭				
출원인 (특허권자)			발명자	
출원 국가		출원일 (등록일)	출원번호 (등록번호)	
과제고유번호 (NTIS)		중앙부처명	관리기관명 (전문기관 등)	
연구사업명 (기여율)		주관연구기관명		
연구과제명 (기여율)		연구기간		

※ 포기를 신청하려는 지식재산권이 복수인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엑셀(Microsoft Excel) 등의 전자파일 형태로도 처리 가능

2. 지식재산권의 포기 승인 신청 점검항목

구분	점검항목(체크 리스트)	해당 여부 (√ 표시)	
1	기술성과 사업성 등이 낮아서 향후에도 활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지식재산권	예	아니오
2	포기하더라도 국내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는 지식재산권	예	아니오
3	법령과 연구과제협약서 등에 의해 포기의 제한이 없는 지식재산권	예	아니오
4	제3자에 대한 기술실시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지식재산권	예	아니오
5	기술 수명주기(Life Cycle)가 쇠퇴되었거나 낙후된 지식재산권 <i>ex) 특허의 등록 이후 3년 이상 경과된 특허 권을 양도포기가 가능으로 특허로 분류(최초 등록시점 기준으로 3년 경과 이후에는 기술이전율이 현저히 급감함을 고려)</i>	예	아니오
6	지식재산권 창출에 기여한 연구자 또는 중소기업에 양도가능성을 검토 결과 양수의사자나 기관이 없는 등 양도가 불가한 지식재산권	예	아니오
7	(해당 시에만 체크) 공동권리자 모두가 포기를 동의한 지식재산권	예	아니오
8	(해당 시에만 체크) 공동권리자가 폐업, 연락두절 등으로 정상적인 지식재산권의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	예	아니오

※ 지식재산권의 포기를 신청하려는 연구개발소유성과기관의 장이 상기 점검항목의 해당 여부(√) 표시

상기 지식재산권의 포기과 관련된 점검항목은 사실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된 문제로 해당 자료를 요청받을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관 귀하
(사업 관리기관(전문기관)장 귀하

8. 연구윤리 및 제재처분

8.1 연구윤리

1. 개요

가. 규정의 취지

- 연구부정(위조·변조·표절, 부당한 저자 표시 등) 외 책임있는 연구수행을 위해 연구 과정 전반에서 고려하고 지켜야 할 사항을 명시
 - 학문교류에 관한 윤리, 이해 충돌 관리, 인간·동물연구 윤리, 건전한 연구실 문화 조성 등을 포함
-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을 추진·관리하거나 수행하는 기관들의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 확보를 위함

나. 법적근거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① 올바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연구자 및 연구개발기관은 국가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변조·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와 제13조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위반한 행위
3.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거나 제3자에게 소유하게 한 행위
4. 제21조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을 위반하거나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사항을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행위
6.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활동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소속 연구자 또는 연구지원인력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검증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다수이면 공동으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의 자체적인 검증·조치가 불가능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보고 내용의 합리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연구개발기관은 소속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⑤ 부정행위의 세부기준, 제2항에 따른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조치·보고의 내용·절차, 제3항에 따른 조사의 내용·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

8. 연구윤리 및 제재처분

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자, 연구지원인력 또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가 연구개발활동(연구지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거나 이미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의 5배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

3.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6조, 제57조, 제59조, 제60조, 제61조, 제62조, 제63조)

제56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 ① 법 제3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 제보자에 대한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증·조치 및 조사의 공정성·객관성을 해치는 다음 각 목의 행위
 - 가.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
 - 나. 위협·협박
2. 연구개발비 사용의 건전성을 해치는 다음 각 목의 행위
 - 가. 제24조제3항에 따른 증명자료의 위조·변조
 - 나. 제25조제1항에 따른 사용내역의 거짓 보고
3.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
4.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해당하는 행위

② 법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정행위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 존재하지 않는 연구개발자료 및 연구개발성과를 거짓으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2. 변조: 연구시설·장비, 연구재료 및 연구개발과정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개발자료 및 연구개발성과를 임의로 변형·추가·삭제함으로써 연구개발 수행의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 일반적인 지식이 아닌 연구자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적절한 출처의 표시 없이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에 사용하는 행위
4.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 연구개발과제 수행의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저자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저자의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제57조(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등)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부정행위의 검증·조치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규정(이하 이 조에서 “자체규정”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운영해야 한다.

1. 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방법
2. 부정행위 증명을 위한 조사의 절차 및 방법
3. 부정행위 증명을 위한 조사의 결과 통보·보고에 관한 사항
4. 부정행위 제보자에 대한 신변보호 및 조사대상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부정행위로 의심되는 행위를 자체규정에 따라 검증하여 부정행위로 판단한 경우로서 부정행위자가 그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경우에는 그 부정행위자를 징계할 수 있으며, 부정행위자가 그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부정행위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검증·조치의 결과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문서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법 제31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행위를 조사하는 경우
2.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연구자 또는 연구지원인력의 부정행위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기한 내에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검증 등을 하지 않은 경우

제59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이하 “참여제한”이라 한다)의 처분기준은

8. 연구윤리 및 제재처분

별표 6과 같다.

②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이하 "제재부가금"이라 한다)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이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경우 해당 연구개발기관을 대상으로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금액만큼 환수(이하 "연구개발비환수"라 한다)할 수 있다.

3)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제22조, 제23조)

제22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검증) ①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소속 연구자 또는 연구지원인력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이를 검증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증·조치 절차 등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7조를 따른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을 대행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조사를 종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문서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의 자체적인 검증·조치결과 보고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직접조사 결과를 심의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연구윤리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연구윤리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전담조직의 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단,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3명 이내로 한다.

1. 보건의료기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5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

⑤ 제4항제1호에 따른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연구윤리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⑦ 위원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검증·조치결과 보고 또는 같은 조제3항에 따른 직접조사 결과가 통보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제31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검증·조치결과에 대한 전문기관의 사전 검토가 필요한 경우 30일의 범위 내에서 한 차례 회의의 소집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⑧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위원장은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기관 또는 전문기관에게 추가적인 검증·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⑩ 위원장은 연구윤리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제재처분평가단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한다.

1.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검증결과
2. 부정행위의 제재처분 필요성에 대한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권고의견

⑪ 이 고시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8. 연구윤리 및 제재처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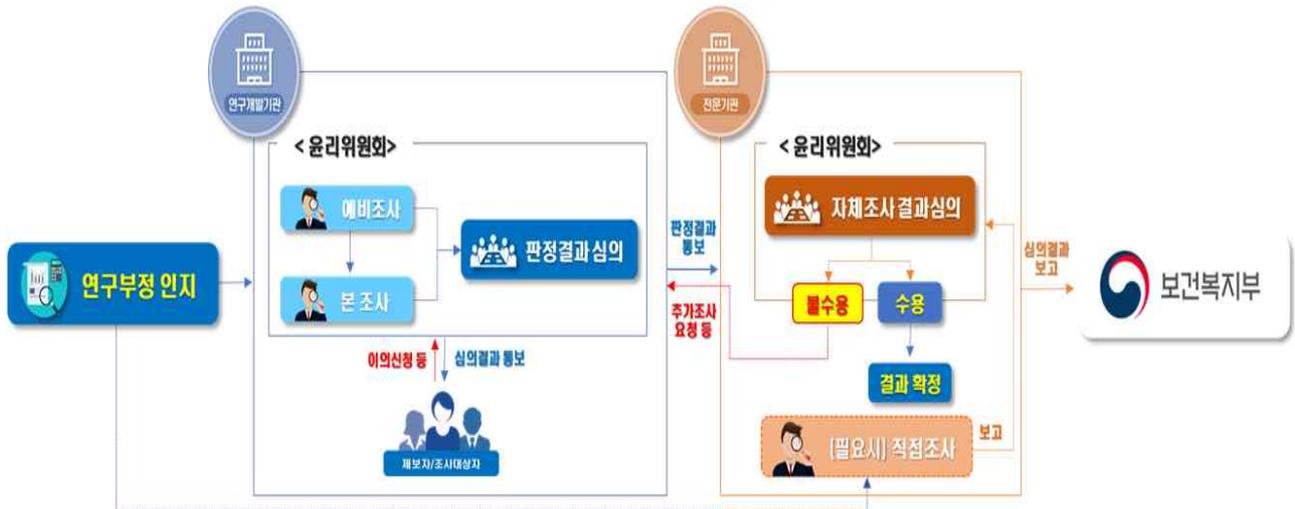
다.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연번	분류	정의
1	위조·변조·표절·저자부당표시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변조·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
2	연구비 사용용도와 사용기준 위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위반한 행위
3	성과소유 위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거나 제3자에게 소유하게 한 행위
4	보안대책 위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을 위반
5	(국내) 누설·유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사항을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
6	(국외) 누설·유출	
7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행위
8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	
9	기타	조사방해 행위(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른 신분상 불이익 조치, 위협·협박)
		연구개발비 사용 건전성 저해행위(시행령 제24조제3항에 따른 증명자료 위조·변조,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른 사용내역 거짓 보고)
		생명윤리 위반(「생명윤리법」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 규정된 죄를 범하는 행위)
		연구실 안전 위반(「연구실안전법」 제22조 또는 제23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는 행위)

라. 연구부정행위 검증절차

- 연구부정행위의 1차 검증주체인 연구개발기관에서 자체조사(예비조사, 본조사) 실시 및 판정결과를 전문기관에 보고하고, 이를 전문기관 연구윤리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
 - 연구개발기관 자체조사결과의 이상 없음으로 심의 시 종료
 - 연구개발기관 자체조사 결과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①연구개발기관에 본조사(재조사 또는 추가조사)실시 또는 ②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③전문기관 직접조사 실시

8. 연구윤리 및 제재처분



마. 주요용어

용어	설명	비고
1 부정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제1항 각호 및 혁신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각호에 따른 행위 - 연구개발자로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한 행위, 성과 소유 위반, 보안대책 위반, 국내외 유출, 거짓, 부정한방법으로 신청, 수행하는 행위, 검증·조치 및 조사의 공정성·객관성을 해치는 다음 각 목의 행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6조
2 위조	○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3 변조	○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4 표절	○ 연구자 자신 또는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	
5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6 제보자	○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해당 연구기관 또는 전문기관에 알린 자	
7 조사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보 또는 연구기관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 -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않음 	
8 조사기관	○ 제보된 부정행위의 검증을 위해 동조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조사를 담당하는 기관(해당 연구기관 또는 전문기관)	
9 예비조사	○ 연구기관에서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	
10 본조사	○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공식조사 절차	

8. 연구윤리 및 제재처분

11 판정	○ 조사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
12 자체조사	○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해당 연구기관에서 수행한 예비조사, 본조사(재조사 및 추가조사를 포함한다) 및 판정까지의 절차
13 직접조사	○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전문기관에서 수행한 조사(재조사를 포함한다) 및 판정까지의 절차
14 재조사	○ 본조사(전문기관의 경우 직접조사) 결과에 대한 제보자 또는 조사대상자의 이의신청을 수용하는 경우에 수행하는 조사 절차
15 추가조사	○ 전문기관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가 연구기관에서 수행한 조사 결과에 대하여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연구기관이 추가적으로 수행하는 조사 절차

2. 추진 절차

구분	추진 절차	주요내용
연구개발기관 / 전문기관	① 제보/인지	○ 사업에 대한 부정행위 제보 또는 외부기관(감사원, 수사기관, 권위 등) 및 내부고발 등을 통한 부정행위 인지
연구개발기관	② 조사 실시	○ 연구개발기관에 자체조사를 요청하고, 연구개발기관이 조사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전문기관이 직접조사 실시 ※ (자체조사 절차) 연구개발기관 연구윤리위원회 예비조사 → (필요시) 연구개발기관 조사위원회 본조사
	③ 판정 및 보고	○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자체조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예비조사 또는 본조사 판정 결과를 보고하고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에게 통보
전문기관	④ 심의	○ 연구개발기관의 자체조사(본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연구윤리심의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여 심의 ○ 연구개발기관의 자체조사 내용 및 판정 결과의 합리성과 타당성에 대해 검토
	⑤ 심의결과 보고/통보	○ (수용) 연구윤리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연구개발기관(제보자/조사대상자)에 통보 ○ (불수용) 연구윤리심의위원회에서 추가조사(본조사 등)를 요청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기관에서 추가조사(본조사 등)를 실시하고 판정 결과를 전문기관에 보고 ※ (불수용시) 추가조사 → 전문기관 보고 → 연구윤리심의위원회 심의
	⑥ 후속조치 요청	○ 연구부정으로 확정된 경우 제재처분평가단에 보고

8. 연구윤리 및 제재처분

3. 절차 별 주요사항

가. 부정행위 제보/인지

※ 2. 추진절차 상 '① 부정행위 제보/인지' 관련

□ 부정행위 제보 접수

○ (제보)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통하여 제보를 접수

- 제보자가 부정행위를 제보했다는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함
- 접수기관 및 조사기관은 조사대상자에 대해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조사대상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부정행위와 무관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조사대상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는 부정행위 조사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음

- (접수) 연구개발기관 내부고발 또는 외부기관(감사원, 수사기관, 권익위 등)을 통한 부정행위 접수
- 전문기관은 부정행위의 규모·범위에 따라 후속조치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해당과제의 연구비 지원 및 집행 일시 중단 가능

□ 조사 요청

- 전문기관이 부정행위의 발생을 인지하거나 제보를 접수한 경우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의해 자체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이관
 -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조사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직접조사를 실시

나. 조사실시 및 보고

※ 2. 추진절차 상 '① 부정행위 제보/인지, ② 조사결과 판정 및 보고, ⑥ 추가조사' 관련

□ 조사 절차

구분	조사기관	조사기간	조사내용	결과보고
예비조사	연구기관 윤리위원회	- 제보/인지일로부터 30일 이내 착수, 30일 이내 조 사완료	① 부정행위 해당 여부 ② 본조사 실시 필요성 여부 ③ 검증시효 경과여부 등	10일 이내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
본조사	연구개발 조사위원회	- 본조사 실시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조사착수, 90일 이내 판정까지 완료	① 제보자, 조사대상자에게 의 견진술 등을 통한 부정행위 해당여부 확인	
직접조사	전문기관 조사위원회	- 조사 실시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조사착수, 90일 이내 판정까지 완료	① 제보자, 조사대상자에게 의 견진술 등을 통한 부정행위 해당여부 확인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

8. 연구윤리 및 제재처분

① 예비조사

- (조사 기간) 연구기관윤리위원회는 부정행위를 인지하거나 제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사를 착수하고, 조사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예비조사 완료

※ 다만, 기간 내 완료가 어려운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기간을 30일 이내로 1회 연장 가능

○ 조사 내용

- 제보내용이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제보내용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 조사대상자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음
- 제보내용의 검증시효가 경과하였는지 여부 등

- 예비조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 또는 조사대상자에게 통보하고, 이의 신청 기간동안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불수용으로 결정된 경우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

② 본조사

- (조사 기간) 연구개발기관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하며, 본조사 실시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사에 착수하고 조사 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판정까지의 절차를 완료

※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연구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고 연구기관의 장의 기간연장 승인을 거쳐 연장할 수 있음

○ 조사위원회 구성

- 해당 연구 분야의 전문가 50% 이상 및 해당 연구기관 소속이 아닌 외부인 20% 이상이 포함되어 구성
- 조사위원회 제척사유
 - 제보자 또는 조사대상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
 - 제보자 또는 조사대상자와 사제관계에 있거나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거나 하였던 자
 - 기타 조사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본조사 결과보고서를 확정하기 이전에 이의제기 및 변론의 기회를 주어야 함
- 연구기관조사위원회는 이의제기 및 변론 내용을 포함하여 본조사 결과보고서를 연구기관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기관윤리위원회는 본조사 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심의·의결
-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기관윤리위원회가 심의·의결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제보자 또는 조사대상자에게 통보하고, 이의신청 기간동안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불수용으로 결정된 경우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

③ 이의신청

- 예비조사(또는 본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제보자 또는 조사대상자는 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연구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

8. 연구윤리 및 제재처분

-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연구기관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의 수용 여부 등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 처리결과 통지서로 제보자 또는 조사대상자에게 통보
- 연구기관윤리위원회는 이의신청 검토 결과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이의신청을 수용하여 본조사(또는 재조사)에 착수

- 제보자 또는 조사대상자의 이의신청 내용에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어 본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예비조사의 판정 또는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

- 제보자 또는 조사대상자는 연구기관의 이의신청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직접조사 요청 가능

④ 직접조사

- 직접조사 사유

- 연구기관이 보고한 자체조사 결과(이의신청 처리결과를 포함)에 대한 전문기관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합리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직접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 제보자 또는 조사대상자가 전문기관 직접조사를 요청하여 전문기관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연구기관의 자체조사 결과 및 이의신청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어 요청한 경우를 포함한다)
- 연구개발기관이 검증 전문가 확보가 어려운 경우, 공정하고 합리적 자체조사가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2개 이상의 연구기관이 참여한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등으로 조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인해 자체조사가 어려워 전문기관의 직접조사를 요청한 경우
- 그밖에 전문기관의 장이 해당 연구기관의 장이 조사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 (조사 실시) 전문기관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하며, 본조사 실시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사에 착수하고 조사 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판정까지의 절차를 완료

※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을 경우 전문기관의 장이 기간연장 가능

- 조사위원회 구성

-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으로 구성
- 해당 연구 분야의 전문가 50% 이상으로 구성
- 조사위원회 제척사유
 - 제보자 또는 조사대상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
 - 제보자 또는 조사대상자와 사제관계에 있거나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거나 하였던 자
 - 기타 조사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 전문기관의 직접조사 결과를 통보하고, 제보자 또는 조사대상자는 판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10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 이의신청
 - 이의신청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의 수용여부 등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 처리결과통지서로 제보자 또는 조사대상자에게 통보
- 이의신청 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불수용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판정결과가 그대로 확정되며, 전문기관의 장은 최종 확정된 판정결과를 직접조사 판정결과보고서로 장관에게 보고

8. 연구윤리 및 제재처분

⑤ 추가조사

- 전문기관 연구윤리심의위원회에서 추가조사를 요청한 경우 실시하며, 조사 실시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사에 착수하고 조사 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판정까지의 절차를 완료
 - ※ 다만,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연구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고 연구기관의 장의 기간연장 승인을 거쳐 연장할 수 있음
- 조사위원회 구성, 결과보고는 본조사 방법을 준용하여 실시

다. 연구윤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2. 추진절차 상 '⑤ 연구윤리심의위원회 심의, ⑥ 심의결과 보고/통보, ⑦ 후속조치 요청' 관련

□ 사전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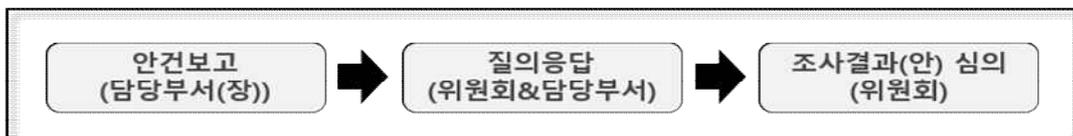
- 연구개발기관 조사결과 보고, 직접조사 결과에 따라 심의 대상이 결정되면 진흥원 담당자는 심의자료 작성
 - 연구기관 조사위원회 적절성, 증빙자료 제출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자체조사 결과 수용, 추가조사/ 직접조사 실시에 대한 의견 포함

□ 연구윤리심의위원회 구성

- 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은 전담조직의 장(R&D업무를 총괄하는 본부의 본부장)으로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하게 위원장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그 직무를 대행할 사람을 지명

구분	구성	임기
당연직위원	① 진흥원 연구개발혁신본부장(이하 '본부장') ② 보건복지부 담당 5급 이상 공무원 3명 이내	소속 직위의 재임기간
민간위원	① 보건의료기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촉한 자	2년(연임가능)

□ 연구윤리심의위원회 운영



- 연구개발기관의 자체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심의
 - ※ 위원장은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검증·조치결과에 대한 전문기관의 사전 검토가 필요한 경우 30일의 범위 내에서 한차례회의의 소집기간을 연장 가능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8. 연구윤리 및 제재처분

○ 심의·의결 사항

- 전문기관 직접조사의 착수에 관한 사항
- 연구개발기관 자체조사 결과 심의에 관한 사항
-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본조사, 추가조사 요구에 관한 사항
- 전문기관 직접조사 수행을 위한 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전문기관 직접조사 결과 심의에 관한 사항
- 제보자 또는 조사대상자의 이의신청 수용에 관한 사항
- 전문기관의 재조사 착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 연구윤리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과 제재처분평가단에 보고하고, 연구개발기관에 통보

1.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검증결과
2. 부정행위의 제재처분 필요성에 대한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권고의견

[별지] 서식

[별지서식 목록]

- 별지 제1호 서식 연구부정행위 제보서
- 별지 제2호 서식 예비조사 결과통지서
- 별지 제3호 서식 이의신청서
- 별지 제4호 서식 이의신청 처리결과통지서
- 별지 제5호 서식 (연구기관) 예비조사 결과보고서
- 별지 제6호 서식 (연구기관/전문기관) 본(직접)조사 결과보고서
- 별지 제7호 서식 (연구기관/전문기관) 본(직접)조사 (판정)결과통지서
- 별지 제8호 서식 (연구기관/전문기관) 본(직접)조사 (판정)결과보고서
- 별지 제9호 서식 전문기관 연구윤리심의위원회 심의결과보고서
- 별지 제10호 서식 전문기관 연구윤리심의위원회 심의결과통지서

8. 연구윤리 및 제재처분

[별지 제2호서식]

예비조사 결과통지서

조사대상 과제	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기관				
	연구개발비		연구기간				
제보 내용							
심의 결과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style="width: 30%;">본조사 실시 여부</td> <td style="width: 35%;">실시()</td> <td style="width: 35%;">미실시()</td> </tr> </table>			본조사 실시 여부	실시()	미실시()
본조사 실시 여부	실시()	미실시()					

8. 연구윤리 및 제재처분

[별지 제3호서식]

이 의 신 청 서

조사대상 과제	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기관	
	연구개발비		연구기간	
예비조사/본조사 결과 통보 일시				
예비조사/본조사 결과				
이 의 신 청 사 유				

8. 연구윤리 및 제재처분

[별지 제4호서식]

이의신청 처리결과통지서

조사대상 과제	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기관				
	연구개발비		연구기간				
이의신청 내용							
이의신청 처리결과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30%;">이의신청 수용여부</td> <td style="width: 35%;">수용()</td> <td style="width: 35%;">불수용()</td> </tr> </table>			이의신청 수용여부	수용()	불수용()
이의신청 수용여부	수용()	불수용()					

8. 연구윤리 및 제재처분

[별지 제5호서식]

(연구기관) 예비조사 결과보고서

조사대상 과제	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기관					
	연구개발비		연구기간					
조사 시작일			조사 종료일					
제보 내용								
부정행위 해당여부								
관련자 징계처분 요구 결과								
검증시효 경과여부								
본조사 실시 여부		실시() 미실시()						
본조사 실시 여부 판단 근거								
증거 자료								
연구기관윤리위원회 명단								
해당 조사결과에 따른 이의신청 내용								
이의신청 심의 결과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style="width: 30%;">이의신청 수용여부</td> <td style="width: 30%;">수용()</td> <td style="width: 30%;">불수용()</td> <td style="width: 10%;"></td> </tr> </table>			이의신청 수용여부	수용()	불수용()	
이의신청 수용여부	수용()	불수용()						

8. 연구윤리 및 제재처분

[별지 제6호서식]

(연구기관/전문기관) 본(직접)조사 결과보고서

조사대상 과제	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기관	
	연구개발비		연구기간	
조사 시작일			조사 종료일	
제보 내용				
조사 결과				
해당 연구에서의 조사대상자의 역할과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				
(제보자/조사대상자 등) 진술내용				
증거 자료				
증인, 참고인 명단				
조사위원 명단				

8. 연구윤리 및 제재처분

[별지 제7호서식]

(연구기관/전문기관) 본(직접)조사 (판정)결과통지서

조사대상 과제	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기관	
	연구개발비		연구기간	
제보 내용				
판정 결과				
	부정행위 사실 여부		해당()	미해당()

8. 연구윤리 및 제재처분

[별지 제8호서식]

(연구기관/전문기관) 본(직접)조사 (판정)결과보고서

조사대상 과제	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기관					
	연구개발비		연구기간					
조사 시작일			조사 종료일					
제보 내용								
조사 결과								
판정 결과								
관련자 징계처분 요구 결과								
연구기관윤리위원회 위원 명단								
해당 조사결과에 따른 이의신청 내용								
이의신청 심의 결과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style="width: 30%;">이의신청 수용여부</td> <td style="width: 30%;">수용()</td> <td style="width: 30%;">불수용()</td> <td style="width: 10%;"></td> </tr> </table>			이의신청 수용여부	수용()	불수용()	
이의신청 수용여부	수용()	불수용()						
(이의신청 수용시) 재조사 및 판정결과 (이의신청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8. 연구윤리 및 제재처분

[별지 제9호서식]

전문기관 연구윤리심의위원회 심의결과보고서

조사대상 과제	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기관	
	연구개발비		연구기간	
제보 내용				
연구기관 자체조사 결과				
심의 일시				
심의 결과				
참석위원 명단				

8. 연구윤리 및 제재처분

[별지 제10호서식]

전문기관 연구윤리심의위원회 결과통지서

조사대상 과제	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기관				
	연구개발비		연구기간				
제보 내용							
연구기관 자체조사 결과		<table border="1"> <tr> <td>부정행위 사실 여부</td> <td>해당()</td> <td>미해당()</td> </tr> </table>			부정행위 사실 여부	해당()	미해당()
부정행위 사실 여부	해당()	미해당()					
심의 일시							
심의 결과							

8.2 제재처분

1. 개요

가. 규정의 취지

□ 제재처분 평가단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라 참여제한 및 제재부가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제재처분 평가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적용범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의 제재처분 평가단 구성·운영 등 업무처리에 관하여 적용
 - ※ 본 가이드라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나. 법적근거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자, 연구지원인력 또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활동(연구지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거나 이미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의 5배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12조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2.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이 법 또는 협약에 따른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가 변경 또는 중단된 경우
3.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
4.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5.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제2항에 따른 기술료의 일부 또는 수익의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6.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제7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회수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처분이나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은 병과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재처분과 별도로 이미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 중 제재사유와 관련된 연구개발비를 환수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재처분을 하거나 연구개발비를 환수하는 때에는 제재사유의 중대성, 위반행위의 고의 유무, 위반 횟수,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단계 및 진행 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제재처분은 그 제재사유가 발생한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일 또는 그 제재사유가 발생한 국가연구개발활동의 종료일부터 10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⑥ 제1항에 따른 제재사유별 참여제한의 기준 및 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 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환수의 기준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제재처분의 절차 및 재검토 요청 등) 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2조에 따라 제재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제재대상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제재처분평가단(이하 이 조에서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제재처분의 필요성, 제재처분의 종류·수준 등 제재처분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과제가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경우에는 평가단을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단이 검토한 결과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제재처분의 내용 등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8. 연구윤리 및 제재처분

1. 제재대상자
2. 제재대상자의 소속 기관의 장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된 제재처분의 내용(이하 이 조에서 "통지내용"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제재대상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내용의 재검토를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라 의견을 받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자 권익보호·연구 부정방지 및 제재처분의 적절성 검토 등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에 의견의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재검토를 요청한 자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재검토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
- ⑤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검토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3항의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재처분의 종류와 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 ⑥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제2항 각 호의 사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⑦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결정의 내용을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통합정보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6.>
- ⑧ 평가단과 위원회의 구성·운영, 제4항에 따른 검토의 절차, 제7항에 따른 등록 및 공개의 내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4조(제재처분의 사후관리)** 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제33조제6항에 따라 결정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모든 국가연구개발활동(연구지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여야 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2조에 따라 연구개발비 환수처분 및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환수금 또는 제재부가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 내에 환수금 또는 제재부가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독촉의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 제59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이하 "참여제한"이라 한다)의 처분기준은 별표 6과 같다.
- ②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이하 "제재부가금"이라 한다)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이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경우 해당 연구개발기관을 대상으로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금액만큼 환수(이하 "연구개발비환수"라 한다)할 수 있다.

- 제60조(제재처분평가단의 구성)**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제재처분평가단을 구성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1. 제재대상자와 「민법」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2. 제재 대상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자
 3. 제재대상자와 같은 기관·단체에 소속된 사람
 4.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61조(연구자 권익보호 등을 검토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연구자 권익보호, 연구 부정방지 및 제재처분의 적절성 검토 등을 위하여 설치되는 위원회(이하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과학기술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사람
 2.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사람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사람

8. 연구윤리 및 제재처분

4.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되는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④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 ⑤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의 회의는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장 및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⑥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의 회의는 제5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⑦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재검토요청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 ⑧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민법」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이 해당 사건에 대하여 자문·연구·증언·진술·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재직했던 기업 등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자문·연구·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 ⑨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심의 안건의 당사자는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에게 제8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⑩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이 제8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제62조(제재처분 정보의 등록 및 공개) ① 법 제33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제재처분 결정을 말한다.

1. 기간이 5년 이상인 참여제한
 2. 부과금액이 이미 지급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3배 이상인 제재부가금
- ② 법 제33조제7항에 따라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 및 공개해야 하는 제재처분 결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재처분의 사유 및 처분의 내용
 2. 제재처분을 받은 연구개발기관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3. 제재처분을 받은 제재대상자의 성명 및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연구자 식별을 위하여 발부하는 국가연구자번호
 4. 제재대상자 소속기관의 명칭 및 주소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동된 사항을 통합정보시스템에 반영해야 한다.

제63조(제재처분 등의 사후관리) ① 제재부가금 또는 연구개발비환수를 통보받은 납부의무자는 해당 처분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1. 12. 31.>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납부의무자에게 경영악화, 천재지변, 재해 또는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제재부가금 또는 연구개발비환수의 부과금액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과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재부가금 또는 연구개발비 환수를 독촉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독촉장을 발급하여 납부의무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1. 체납액
 2. 납부기한(독촉장을 발급한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3. 납부장소
 4.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는 내용

8. 연구윤리 및 제재처분

3)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제2조(서식)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0. 영 제61조제7항에 따른 재검토요청서: 별지 제10호서식

4)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3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등) 부정행위 등의 제재처분과 연구개발비 환수에 관하여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6조·제57조,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제22조·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다. 주요용어

용어	설명	비고
1 국가연구개발사업	○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	「혁신법」 제2조제1호
2 연구개발과제	○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선정하는 과제	「혁신법」 제2조제2호
3 참여제한	○ 제재사유에 귀책사유가 있는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지원인력 또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사안의 경중을 고려하여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활동(연구지원은 제외)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는 행정처분	「혁신법」 제32조제1항
4 제재부가금	○ 제재사유에 귀책사유가 있는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자, 연구지원인력 또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사안의 경중을 고려하여 이미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의 5배 범위에서 부과되는 금액	「혁신법」 제32조제1항
5 회수	○ 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실시되는 정산 결과 혁신법 제13조제7항, 시행령 제26조제5항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는 것	「혁신법」 제13조제7항 「시행령」 제26조제5항
제재처분 대상자	○ 제재처분 사유가 발생하여 제재처분 대상이 되는 연구사업 과제에 참여한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자, 연구지원인력 또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	「혁신법」 제32조제1항
6 연구개발비 환수	○ 참여제한, 제재부가금과 별개로 연구개발기관이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경우 해당 연구개발기관을 대상으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중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금액만큼 환수	「혁신법」 제32조제3항 「시행령」 제59조제3항
제재처분 평가단 (이하 '평가단')	○ 연구사업 관련 제재처분의 필요성, 제재처분의 종류·수준 등 제재처분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진흥원 소속으로 구성된 심의기구	「혁신법」 제33조제1항
7 연구개발비 사용의 건전성 저해행위	○ 증명자료의 위조·변조, 사용내역의 거짓보고를 의미	「시행령」 제56조제1항제2호
8 부정행위	○ 혁신법 제31조제1항 각호 및 혁신법 시행령 제56조제1항각호에 명시된 행위로, 이는 곧 제재사유임	「혁신법」 제31조제1항 「시행령」 제56조제1항

8. 연구윤리 및 제재처분

2. 추진 절차

추진 절차	주요내용
제재사유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관리전문기관의 과제관리 과정(평가단계, 정산단계 등)에서 적발, 외부기관(감사원, 수사기관, 권익위 등) 및 내부고발 등을 통해 적발
제재처분 해당여부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정행위의 경우 조사 결과를 진흥원 연구윤리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부정으로 확정된 경우 제재 안건으로 확정
① 사전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재처분 검토보고서를 작성(진흥원 담당자)
② 제재처분 평가단 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제재대상자를 선정하고, 제재사유의 중대성, 위반행위의 고의 유무, 위반 횟수,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단계 및 진행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제재처분의 필요성, 제재처분의 종류·수준 등 제재처분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
③ 제재처분 사전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재처분 평가단이 검토한 결과를 고려하여 관련자에게 각각 개별적으로 제재처분의 내용 등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미리 통지하여야 함
④ 재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재대상자가 제재처분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사유를 갖추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통지받은 내용의 재검토 요청 *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재대상자가 위원회 검토를 요청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에 검토를 요청하여야함
⑤ 제재처분 확정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복지부 장관은 재검토 요청이 있었던 경우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의 재검토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재대상자로부터 재검토 요청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제재처분의 종류와 수준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관련자에게 각각 통보
⑥ 제재정보 등록 및 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복지부 장관은 확정통보한 내용을 모두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이 중 5년 이상의 참여제한 또는 3배 이상의 제재부가금 처분에 대해서는 이를 공개
⑦ 납부 및 사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개발비 환수금 납부 또는 제재부가금 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 또는 제재부가금을 납부 ○ 보건복지부 장관은 연구개발비 환수 처분 및 제재부가금 처분을 받은 자가 환수금 또는 제재부가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제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

8. 연구윤리 및 제재처분

3. 절차 별 주요사항

가. 사전검토

※ 2. 추진절차 상 '① 사전검토' 관련

□ 제재처분의 대상

-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자, 연구지원 인력 또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이며, 평가단은 사안에 따라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제재처분 대상자를 선정

-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한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모두 이때 귀책사유를 고려해 제재대상을 선정해야함
-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준으로 참여제한 할 수 있음
- 제재처분을 받은 연구자나 제재처분을 받았던 기관 소속 연구책임자가 신규법인을 설립하여 대표이사 혹은 실소유주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신규설립법인에 대해 참여제한 처분을 할 수는 없으나
 - 만약, 어떤 회사가 신규법인을 설립하면서, 이전 회사의 주요자산, 시설, 거래처 등을 그대로 사용하여 사실상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관을 설립한 경우라면 '법인격부인'의 법리에 따라 기존법인 대한 제재처분의 효력은 신규법인에 미칠 수 있음
- 제재처분 대상자 선택 시 귀책사유의 입증책임은 보건복지부장관(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에게 있음

□ 사전검토(검토보고서) 작성

- 제재사유(별표 1)에 따라 심의 대상이 결정되면 진흥원 담당자는 제재처분 검토보고서(별지 2호 서식) 작성
 - 심의대상으로 결정되기까지의 단계에서 검토된 다양한 사항(제출자료, 현장방문, 전문가 자문 등) 및 이전 유사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 참여제한 기간, 제재부가금 등에 대한 의견을 포함

나. 제재처분평가단 구성

※ 2. 추진절차 상 '② 제재처분 평가단 심의' 관련

□ 제재처분 평가단 구성·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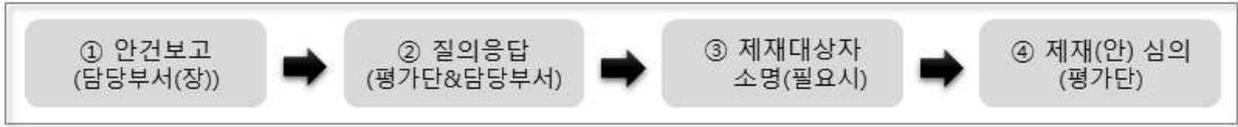
- 제재처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가단을 구성·운영하며, 평가단 위원은 법률전문가, 회계전문가를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
 - 위원장은 진흥원 R&D업무를 총괄하는 본부의 본부장으로 하며, 본부장이 부득이하게 위원장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그 직무를 대행할 사람을 지명

구분	구성	임기	비고
당연직 위원	① 진흥원 연구개발혁신본부장(이하 '본부장') ② 보건복지부 담당 5급 이상 공무원	소속 직위의 재임기간	
민간 위원	①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가진 법률·회계 전문가(변호사 및 회계사)로서 진흥원장이 위촉한 자 ② 전문위원회 위원 ③ 기타 진흥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전문가	2년 (연임가능)	심의 안전에 따라 매번 적합한 위원을 선정하여 구성 가능

※ 평가단 구성의 제척기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0조의 각호를 따름

8. 연구윤리 및 제재처분

□ 제재처분 평가단 운영



- 평가단 심의는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복수의 안전을 심의할 수 있음
 -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진흥원 내 심의 대상 연구사업의 담당 부서장을 간사로 지정하며, 부서장이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담당 팀장이 대신할 수 있음
 - 심의 안전이 복수인 경우, 안전별로 간사를 변경하여 지정할 수 있음
- 평가단의 의사결정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서면결의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음
- 제재처분 심의 전에 제재처분 검토보고서를 검토한 위원이 제재처분 대상자의 참석을 요청하는 경우 위원장은 평가단 위원 간 합의를 거쳐 제재처분 대상자에게 대면으로 진술기회를 부여할 수 있음
- 심의 회의 운영에 따른 전문가 수당, 자문료, 여비, 회의비 등 필요 경비를 회의 참석자에게 지급할 수 있음

다. 제재처분 심의 및 사전통지

※ 2. 추진절차 상 '② 제재처분 평가단 심의' 및 '③ 제재처분 사전통지' 관련

□ 제재처분 심의

- 평가단 간사는 제재처분 검토보고서를 위원에서 보고하고, 위원장은 심의자료, 제재처분 검토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토론으로 주관하며, 위원별 의견을 종합하여 합의된 의견 수렴
 - 위원별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다수결로 정하고, 가부동수의 경우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지며, 다만 추가로 확인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 간 합의에 따라 결론을 차기 회의로 연기할 수 있음
- 위원장은 심의결과에 대해 제재처분 종합심의서(별지 3호 서식)를 작성하여 진흥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장 및 출석위원 전원을 서명날인하여 보존함
- 심의결과 추가로 확인할 사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제재처분 대상자에게 추가 자료 또는 현장 방문을 요청할 수 있으며, 평가위원 외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 검토보고서를 보완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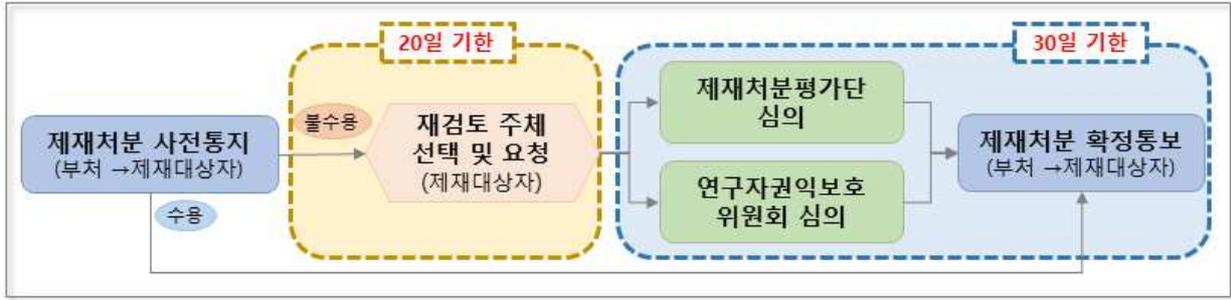
□ 심의결과 보고

- 진흥원장은 심의결과를 1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보고를 받은 장관은 이를 제재처분 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함

8. 연구윤리 및 제재처분

라. 재검토 및 확정통보

※ 2. 추진절차 상 '④ 재검토' 및 '⑤ 제재처분 확정통지' 관련



□ 제재처분 재검토

- 제재처분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제재대상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통지내용의 재검토를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 재검토 기한 내 재검토 요청이 없는 경우, 장관은 재검토 기한 이후 즉시 제재처분 결과를 확정하고, 제재처분 대상자에게 제재처분 확정사실을 통보(별지 8호 서식)
- 재검토 요청을 받은 장관은 제재대상자가 위원회 검토를 요청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에 검토를 요청하여야 함
 - 다만, 재검토를 요청한 제재대상자가 평가단 재검토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평가단 재검토를 실시할 수 있음

□ 확정통지

- 장관은 재검토 요청이 있었던 경우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의 재검토 결과 등을 고려하여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제재처분의 종류와 수준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관련자에게 각각 통지해야 함
 - 다만, 제재대상자가 권익보호위원회 재검토를 희망한 경우에는 권익보호위원회의 결과를 평가단에서 재검토할 수 있음

마. 제재정보 등록 및 사후관리

※ 2. 추진절차 상 '⑥ 제재정보 등록 및 공개' 및 '⑦ 납부 및 사후관리' 관련

□ 제재정보 등록 및 공개

- 진흥원장은 확정통보한 내용을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정보가 변동되는 경우에도 변동된 사항을 반영해야 함
 - 제재대상자에 대한 단일처분에 대해 5년 이상의 참여제한 또는 3배 이상의 제재부가금 처분의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함

8. 연구윤리 및 제재처분

□ 납부 및 사후관리

- 진흥원장은 제재처분 대상자에게 제재처분 확정통보가 도달한 것이 확인되면, 연구개발비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등 후속조치를 개시하여야 함
 - 제재대상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전문기관에 납부하여야 함
 - ※ 경영악화, 천재지변, 재해 또는 그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제재부가금 또는 연구개발비 환수금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할하여 납부하거나 납부기한 연장 가능
 - 연구개발비 환수처분 및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 내에 환수금 또는 제재부가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제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 조치함

마. Q&A

Q1. 혁신법에 따른 제재처분 기준 적용은?

- 혁신법 부칙 제5조에 따라, 법 시행일('21.1.1) 이후부터 발생하는 부정행위에 대해 혁신법에 따른 제재처분을 적용
- 단, 혁신법으로 달라진 제재처분의 절차(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절차 신설)에 관하여는 법 시행일('21.1.1) 이후 부처에서 사전통지하는 제재처분부터 적용

Q2. 제재처분 상한의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연구자 1인을 기준으로 참여제한 총 10년, 제재부가금 500% 이상의 처분은 할 수 없는지?)

- 제재처분의 상한은 '1회 처분 시'를 기준으로 적용함. 동일한 연구자에 대하여도 각 개별 처분을 기준으로 상한 기준을 준수하면 됨

Q3. 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에 제재처분을 한다면, 성실실패에 관한 규정은 사라지는 것인지? 과정의 극히 불량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 혁신법에서는 '연구개발과제의 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를 제재사유로 두어, 결과만 불량한 경우는 제재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종전의 성실실패 규정은 별도로 두지 않음
- '과정'의 극히 불량 여부는 연구개발과제의 단계·최종평가 시 '결과'의 극히 불량 여부와 함께 평가할 예정

Q4. '기술료 미납', '회수금 미납' 의 경우 참여제한 기간이 '납부 시까지' 인데, 이 경우에는 참여제한 기간을 어떻게 합산하는지?

- 참여제한 기간의 합산 시, '기술료 미납', '회수금 미납'에 따른 '납부 시까지'는 합산에 포함하지 않음

Q5. 제재부가금 또는 환수금의 분할납부, 납부기한 연장 등이 가능한 것인지?

- 혁신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에 따라 제재부가금 또는 환수금의 분할납부 및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

Q6. 참여제한 처분을 받으면, 기존에 수행 중이었던 과제에도 참여할 수 없는지?

- 참여할 수 없음. 혁신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 이후 모든 국가연구개발활동 (연구지원은 제외)에서 참여를 제한함

8. 연구윤리 및 제재처분

Q7. 혁신법 시행에 따라 제재 감경 및 가중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 가이드라인의 제재처분 가중·감경 세부기준(안)에서 제재처분 사례별 가중·감경 요소 및 제재 정도를 명시하고 있음
- ※ 제재의 감경 또는 가중의 경우 제재사유별 최대 2분의 1 범위에서 가능

8. 연구윤리 및 제재처분

[별표 1] 혁신법 제31조제1항 각호, 제32조제1항 각호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각호

제 재 사 유

제재사유		요약		
1호	제12조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과정결과불량		
2호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이 법 또는 협약에 따른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가 변경 또는 중단된 경우	협약불이행 & 변경, 중단		
3호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	부정행위		
	< 혁신법 제31조11항 각호 >		-	
	1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변조·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	위조변조표절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와 제13조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위반한 행위	사용용도와 사용기준 위반	
	3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거나 제3자에게 소유하게 한 행위	성과소유 위반	
	4	제21조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을 위반하거나		보안대책 위반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사항을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	국내 국외	국내 누설유출 국외 누설유출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행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선정된 경우	신청 부정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한 경우	수행 부정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활동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그 밖의 연구부정 (포괄규정)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 혁신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각호			
	1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 제보자에 대한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증·조치 및 조사의 공정성·객관성을 해치는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 나. 위협·협박	조사방해행위	
	2	연구개발비 사용의 건전성을 해치는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제24조제3항에 따른 증명자료의 위조·변조 나. 제25조제1항에 따른 사용내역의 거짓 보고	연구개발비 사용 건전성 저해행위	
	2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하는 행위	생명윤리 위반	
3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2조 또는 제23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는 행위	연구실 안전위반		
4호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포기		
5호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제2항에 따른 기술료의 일부 또는 수익의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기술료 미납		
6호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제7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회수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회수금 미납		

8. 연구윤리 및 제재처분

[별지 제2호 서식]

제재처분 검토보고서

일자 : 20

사업명			과제번호		
과제명*					
연구기간	20 ~ 20(총 년, 현재 년차)				
총 연구개발비(천원)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	4차 년도	
정부출연금					
기업부담금					

* 정보유출에 따라 심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과제명 삭제

1. 종합

제재처분 심의대상 :

제재처분 사유 :

제재처분 경위

제재처분 심의 요청사항

2. 세부내용

그 간의 과제 수행정도 및 결과

8. 연구윤리 및 제재처분

제재사유가 발생하게 된 이유

-
-
-

평가결과 및 평가의견

-
-
-

기타

8. 연구윤리 및 제재처분

[별지 제3호 서식]

제재처분 종합심의서

심의일자 : 20 . . .

사업명			
과제번호			
과제명			
종합결과			
심의대상	심의사유	제재여부	심의결과
		필요/불필요/ 재검토	참여제한: 출연금환수: 제재부가금:
			참여제한: 출연금환수: 제재부가금:
			참여제한: 출연금환수: 제재부가금:

참여제한

심의대상			
심의결과	<input type="checkbox"/> 필요(참여제한 기간 :) <input type="checkbox"/> 불필요		
<p>*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6에서 명확히 제시된 경우에는 명시된 기간만을 작성하고 일정기간으로 제시된 경우에는 제시된 기간 중에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기간과 사유작성</p> <p>* 의원별 의견을 취합한 후 합의된 내용 기재</p>			
심의대상			
심의결과	<input type="checkbox"/> 필요(참여제한 기간 :) <input type="checkbox"/> 불필요		

8. 연구윤리 및 제재처분

제재부가금 부과

심의대상	
심의결과	<input type="checkbox"/> 필요(제재부가금 원) <input type="checkbox"/> 불필요
<p>*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7에에서 제시된 금액의 범위내에서 부과 금액과 사유작성</p> <p>* 위원별 의견을 취합한 후 합의된 내용 기재</p>	
심의대상	
심의결과	<input type="checkbox"/> 필요(제재부가금 원) <input type="checkbox"/> 불필요

정부출연금 환수

심의대상	
심의결과	<input type="checkbox"/> 필요(정부출연금 환수 원) <input type="checkbox"/> 불필요
<p>*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9조제3항에 따라 정부연구개발비 중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금액을 작성</p> <p>* 위원별 의견을 취합한 후 합의된 내용 기재</p>	
심의대상	
심의결과	<input type="checkbox"/> 필요(정부출연금 환수 원) <input type="checkbox"/> 불필요

8. 연구윤리 및 제재처분

위의 내용과 같이 제재처분 평가단의 제재처분 종합심의서를 제출합니다.

위 원 장 : (인)

위 원 : (인)

8. 연구윤리 및 제재처분

[별지 제4호 서식]

제재처분 사전통지서

처분 제목						
당사자	참여제한	성명(명칭)				
		주소				
	제재 부가금	성명(명칭)				
		주소				
	연구비 환수	성명(명칭)				
		주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의견제출	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담당자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팩스번호	
	제출기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8. 연구윤리 및 제재처분

[별지 제5호 서식]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4쪽 중 1쪽)

재검토요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 접수번호관과 접수일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제출인	성명 또는 기관명		
	주소(직장 또는 자택)		
	국가연구자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및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 대표자 [] 관리인 [] 선정대표자 [] 대리인 (해당 시 작성)	성명		
	주소(직장 또는 자택)		
	소속		
	전화번호		
소관 중앙행정기관명	보건복지부		
사전통지 문서명			
사전통지를 통보받은 날	0000. 00. 00.		
증거 서류			
재검토 희망 기관(택일)	<input type="checkbox"/>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input type="checkbox"/> 소관 중앙행정기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재처분 및 환수 사전통지 내용의 재검토를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인 또는 직인)

중앙행정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대표자, 관리인, 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류(대표자, 관리인, 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만 제출) 2. 재검토 요청 의견제출 취지 및 이유(별지), 그 밖에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서류나 증거물
------	--

처리 절차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1. 제출인
 - 1) 성명 또는 기관명: 재검토 요청 의견을 제출하는 당사자의 성명 또는 연구개발기관명을 기재합니다.
 - 2) 주소: 제출인의 거주지(주택, 직장 모두 가능) 또는 소재지 주소를 기재합니다.
 - 3) 국가연구자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및 법인등록번호: 제출인의 국가연구자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2. 대표자, 관리인, 선정대표자, 대리인(해당 시 작성)
 - 1) 대표자: 제출인이 연구개발기관일 경우 기관의 대표자 정보를 기재합니다.
 - 2) 관리인: 제출인이 연구개발기관이고 관리인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 관리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 3) 선정대표자: 여러 명의 제출인이 공동으로 재검토 요청 의견을 제출하면서 대표자를 선정한 경우 대표자의 정보를 기재합니다.
 - 4) 대리인: 제출인이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대리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3. 소관 중앙행정기관명: 제재처분을 사전통지 한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4. 사전통지 문서명: 제재처분 사전통지 문서의 제목을 기재합니다.
 5. 사전통지를 통보받은 날: 제재처분 사전통지 문서가 제출인에게 도달한 날을 기재합니다.
 6. 증거 서류: 재검토 요청 의견 및 사유를 뒷받침하는 증거서류, 증거물 등의 제목 또는 명칭을 나열하여 작성합니다.
 7. 재검토 희망 기관: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와 소관 중앙행정기관 중 재검토 요청 의견을 제출하는 자가 재검토를 희망하는 기관을 선택합니다.
-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1. 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사업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2.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3.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부여된 번호를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4. 연구개발기관명: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중 재검토 요청 의견을 제출하는 당사자가 제재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할 당시에 소속한 연구개발기관명 또는 재검토 요청 의견을 제출하는 연구개발기관명을 기재합니다.
5. 연구개발기간
 - 1) 전체: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으로서 협약기간을 기재합니다.
 - 2) 해당 단계: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 해당 단계의 연구개발기간을 기재합니다.
6. 연구개발비
 - 1) 전체: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 지원받는 연구개발비를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2) 해당 단계: 해당 단계 연구개발기간 동안 지원받는 연구개발비를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7. 제재처분 및 환수 구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사전통지 받은 제재처분의 종류를 선택하고, 참여제한일 경우 사전통지 받은 처분 기간을, 제재부가금 또는 환수일 경우 사전통지 받은 처분 금액을 기재합니다.
8. 사전통지 문서명: 제재처분 사전통지 문서의 제목을 기재합니다.
9. 제재처분 개요: 제재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이에 대해 적용된 제재사유, 이에 따라 사전통지 받은 제재처분의 내용 등을 간략히 요약하여 기재합니다.
10. 제재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의 경위: 제재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 혹은 사건에 대한 내용 및 발생 경위를 기재합니다.
11. 재검토 요청 의견 요지: 사전통지된 제재처분에 대한 재검토 요청 사항을 기재합니다.
12. 의견 제출사유: 사전통지된 제재처분에 대하여 재검토 요청 의견을 제출하게 된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합니다.

8. 연구윤리 및 제재처분

[별지 제6호 서식]

재검토 요청에 따른 검토보고서

일자 : 20 . . .

1. 신청인

2. 관련 과제

(단위 : 천원)

과제번호	과제명	주관기관 (책임자)	이의신청인	연구기간
				출연금('00년)

3.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처분

○

-

4. 이의신청 내용

○

-

8. 연구윤리 및 제재처분

[별지 제7호 서식]

재검토 종합심의서

심의일자: 20 . .

1. 과제 개요

사 업 명			과제번호	
과 제 명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책임자	
연 구 기 간	~ (년)		연 구 년 차	
구 분	소 속	직 위	성 명	서 명
위 원 장				
위 원				

2. 종합심의결과

재검토 신청자			
개별 심의결과(위원수)		종합심의 결과	
재검토 수용	재검토 기각		
종합심의 의견			
* 재검토의 수용/기각 이유 제시			

8. 연구윤리 및 제재처분

제재심의결과 조정		
* 재검토 수용 시 합의된 제재 조정결과와 사유 제시		
재검토 신청자		
개별 심의결과(위원수)		종합심의 결과
재검토 수용	재검토 기각	
종합심의 의견		
* 재검토의 수용/기각 이유 제시		
제재심의결과 조정		
* 재검토 수용 시 합의된 제재 조정결과와 사유 제시		

8. 연구윤리 및 제재처분

[별지 제8호 서식]

제재처분 확정통지서

처분 제목						
당사자	참여제한	성명(명칭)				
		주소				
	제재부가금	성명(명칭)				
		주소				
	연구비환수	성명(명칭)				
		주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처분청	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정부세종청사 10동)			담당자	
	전자우편 주소	00000@korea.kr			전화번호	044-202-0000
				팩스번호	044-202-0000	

< 행정처분에 대한 구체적 절차 안내 >

1.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3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동 처분이 있음을 알게된 날부터 90일, 동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동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동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9. 연구개발사업단

9.1 개요

가. 주요목적

- 본 가이드라인은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사업단에서 개별적으로 다르게 운영하고 있는 관리규정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장(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5조(연구개발사업단), 제 6조(사업단장)에 따라 통합하고, 사업단 운영 관리의 일관성 및 체계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업단 구성, 운영, 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적용범위

- 보건복지부 소관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의 모든 사업단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단과 사업단장의 선정, 사업단장의 권한·임무, 사업단의 관리 및 운영, 연구개발과제의 기획·선정·평가 및 관리 등과 관련되는 사항에 적용
 - 단, 사업단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본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기준과 절차를 탄력적으로 적용 가능
 - 본 가이드라인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규 및 관리규정 지침 등 복지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다. 주요용어

- “사업단”이라 함은 「보건의료기술진흥법」(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라 장기간 대규모로 집중 지원하여 성과의 효율성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는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으로 연구책임자에게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조직을 말함
- “운영위원회”는 연구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사업단 상위에 두는 위원회를 말함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5조(연구개발사업단)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사업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업단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전문기관”이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2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및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7조(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의 지정)에 따른 전문기관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관리·평가 등의 업무를 위탁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말함
- “사업단장”이란 사업단을 대표하는 자로 연구개발과제의 총괄적 관리하는자를 말함

9. 연구개발사업단

- “사업단 사무국”이라 함은 사업단에 관련된 연구관리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부서를 말함
- “사업단 본부과제(이하 “본부과제”라 한다)”라 함은 사업단 전체 목표에 부합되는 것으로 사업단장이 주관하는 핵심연구과제를 말함
- “사업단 연구개발과제(이하 “연구개발과제”라 한다)”라 함은 사업단이 자체적으로 기획·공모·선정하여 각 세부기관별로 수행하는 과제를 말한다.

9.2 사업단 구성 및 운영

1. 운영위원회 구성 및 역할

가. 운영위원회 구성

- 보건복지부는 사업단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함
-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단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 경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되, 위원장은 아래에 따른 위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함
 1. 보건복지부 소속 4급 이상의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
 2. 해당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사업단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추천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으며, 다만 소속 및 추천기관에서의 직책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또한 위원 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함
- 운영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사업단의 사무국장으로 함
- 위원장 유고시에는 운영위원 중 호선에 의해 선출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함
-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의 사업단 관련 사항은 동 규정 부칙 제3조에 따라 시행일(2022.1.1.)이후 설치하는 사업단부터 적용
 - 그 외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가이드라인 개정 이후(23.2)설치하는 사업단부터 적용

나. 운영위원회 역할

-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함
 1. 사업단의 기본 사업계획과 연차별 운영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사업단 연구개발과제의 기획·공모·선정 평가 및 연구 성과의 종합평가 등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3. 사업단 조직,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사업단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제규정의 제정·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6. 사업단의 사업과 관련한 각종 위원회의 설립·폐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사업단 운영에 관한 것으로서 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사업단장이 요청하는 사항

9. 연구개발사업단

- 위원장은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등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위원의 해당 안건 심의 참여를 제한하여야함
-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1/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1/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짐
- 운영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서면결의 또는 비대면 회의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음
- 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 인정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간사는 운영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그 결과를 차기 운영위원회에 보고토록 해야함

2. 사업단 구성

가. 사업단장의 선정

-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분야 산·학·연 전문가 중에서 연구수행능력·경영관리능력·사업단 총괄연구계획 등 사업단 연구·운영계획을 평가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전문위원회를 거쳐 사업단장을 확정함
- 전문기관의 장은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및 사업단의 특성에 따라 사업단장의 선정 및 사업단의 구성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절차를 정할 수 있음

나. 사업단장의 권한 및 의무

- 사업단장은 사업단을 대표하며 해당 분야 연구개발사업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고, 사업단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짐

1. 보건복지부장관, 전문기관의 장 또는 연구개발기관의 장과의 협약 체결
 2. 연구개발과제의 총괄적 관리
 3. 연도별 자체평가 계획수립 및 평가결과 보고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위임한 사항
-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업단장의 업무수행 과정 전반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추후 사업단장의 수당 산정, 재선임 등에 활용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사업단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단장을 해임 할 수 있음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사업단장이 외국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체류하거나, 국내외 기관에 6개월 이상 파견(교육훈련, 출장, 연수 등을 포함한다)되는 등 사업단장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해당 사업단의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사업단장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3항에 따른 사업단장의 평가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6. 사업단장이 스스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7. 사업단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체결한 협약에서 정한 해임사유가 있는 경우

다. 사업단장의 근무조건 및 사업참여 절차

- (사업단장의 업무 전담) 사업단장은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이

9. 연구개발사업단

하 “운영·관리규정”이라 한다.) 및 보건복지부장관과 체결하는 협약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및 연구개발사업단의 운영·관리 등 자신의 업무에 전념하여야 함

- 사업단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사업단장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여야 함
- (사업단장의 타연구개발과제 등 수행방법 및 절차) 사업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5조제4항에 따른 사업단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함

1. 사업단장 선임 이전부터 종사하고 있던 업무 또는 연구개발과제를 계속 수행하고자 할 경우
2. 사업단장 선임 이후에도 자신의 고도로 전문화된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다른 연구개발사업이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할 경우

* (불승인 사유 예시) 사업단장이 6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거나 다른 기관에 파견되는 경우, 사업단장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한 업무수행 저해가 우려될 경우 등

- 보건복지부장관은 사업단장이 사업단 운영위원회 심의 및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상기 업무를 수행 할 경우에는 보건의료기술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라 사업단장을 해임할 수 있음

라. 사업단의 조직

- 사업단장은 사업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무국장 및 사무국직원을 임명하여 사무국을 구성·운영하여야 함

3. 사업단 운영

가. (사업단장) 사업단 운영관리

- 사업단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집행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해당년도 연구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운영비 집행에 관한 사항을 진흥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사업단장은 사업단 운영에 필요한 제반 경비에 대한 예산을 가이드라인 5. 연구개발비관리 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해야 함
- 사업단장은 이 지침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단 운영·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사업단장은 사업단의 연구개발과제 선정 및 관리·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 해당년도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을 따라야 함

나. (전문기관의 장) 사업단 점검·관리

- 전문기관의 장은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현장조사 또는 평가 등을 통해 사업단의 업무를 점검·관리하여야 함
 1. 사업단 과제기획 및 과제관리 객관성·공정성 등에 관한 사항

9. 연구개발사업단

- 2. 평가 계획 및 절차의 타당성 검토 등 평가에 관한 사항
 - 3. 관련규정 준수여부, 사무국 및 각종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단 업무 점검 관리를 위한 현장조사 또는 평가 결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제재조치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재조치를 요청할 수 있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3조(제재처분의 절차 및 재검토 요청 등) 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2조에 따라 제재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제재대상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제재처분평가단(이하 이 조에서 "평가단"이라한다)을 구성하여 제재처분의 필요성, 제재처분의 종류·수준 등 제재처분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과제가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경우에는 평가단을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전문기관의 장) 사업단의 진도관리 및 최종평가

- 사업단의 단계 및 최종평가는 본 가이드라인의 6. 과제 평가·관리 내용을 따름
-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단에 대한 단계평가 및 최종평가를 위하여 사업단의 연구실적과 목표달성도를 심층 분석한 성과분석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활용함
 - 단,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성과분석보고서의 작성을 외부기관에 위탁 할 수 있음
- 사업단에 대한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연구 성과가 불량할 경우 사업단장에 대하여 보건 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경질 또는 제재를 할 수 있음

9.3 사업(단) 평가·(성과)관리

1. 사업관리

가.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 사업단장은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관련 법령 및 사업단의 제반 규정에 따라 평가를 진행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단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위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나.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단 확정 후 사업단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과 운영·관리규정 제14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함

<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

제14조(협약의 체결 및 변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할 경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연구개발기관의 장 또는 사업단장에게 협약의 체결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5조제2항에 따른 협약의 표준 서식은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별표 2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제5조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업무를 대행하는 사업단장을 포함한다)은 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을 대행하여 협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해당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보건복지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해당 협약을 변경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협약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되거나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안과제에 준하는 과제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의 협약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사업단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선정결과 및 향후 사업단 세부 운영계획에 관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에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과 개별협약을 체결하여야 함

다. 연구개발과제의 평가

- 사업단장은 사업단 자체 평가지침에 따라 평가방법, 평가절차, 평가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계획 등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마련하여야 함
- 사업단장은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단계평가 및 최종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9. 연구개발사업단

라. 연구비산정

- 사업단장은 본부과제에 대한 연구비 산정 시 가이드라인 5.연구개발비관리를 준용함
- 단, 본부과제에서 과제관리비나 간접비는 계상할 수 없음
- 사업단장은 본부과제에서 사업단장의 인건비를 계상할 수 없으나, 단 사업단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해서는 계상할 수 있음
- 사업단장은 가이드라인 5.연구개발비관리를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관연구과제에 대한 연구비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마.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협약기간 종료 후 사업비 사용실적(전년도 이월액 사용실적 및 당해연도 과제 사용실적 포함)을 사업단장이 지정한 기일 내에 사업단장 또는 사업단장이 지정하는 위탁정산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함
- 사업단장은 연구개발과제 사용실적 및 사업단 운영비 사용실적을 사업단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함
- 사업단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사업단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위탁정산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함
- 사업단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위탁정산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정산 결과에 따라 집행 잔액을 회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함
-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사업단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연구개발비 사용 실적에 대하여 정밀검증을 실시할 수 있음

9. 연구개발사업단

[별지]

운영위원회 관리지침 표준안

제1조(목적) 이 지침은「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제5조 제4항에 따라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사업단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되, 위원장은 제 나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한다.

가. 보건복지부 소속 4급 이상의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

나. 해당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사업단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추천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소속 및 추천기관에서의 직책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또한 위원 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③ 운영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사업단의 사무국장으로 한다.

④ 위원장 유고시에는 운영위원 중 호선에 의해 선출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심의의결)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가. 사업단의 기본 사업계획과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나. 사업단 연구개발과제의 기획·공모·선정 평가 및 연구성과의 종합평가 등 사업 추진에 관한사항

다. 사업단 조직,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라. 사업단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마. 제규정의 제정·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바. 사업단의 사업과 관련한 각종 위원회의 설립·폐지에 관한 사항

사. 기타 사업단 운영에 관한 것으로서 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사업단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4조(회의소집)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 또는 사업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에 일시, 장소 및 회의 안건을 서면 및 이메일로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인정한 때에는 회의개최 전일까지 제3항에 규정한 내용을 통지하고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5조(의결정족수 등) ①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1/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1/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6조(서면의결) ① 제3조에 의한 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위원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및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② 서면으로 의결할 경우 재적위원 1/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③ 위원장은 서면의결의 결과를 차기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록) 간사는 운영위원회의 경과를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장 및 출석위원 전원의 서명 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차기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진흥원장의 승인을 받아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이전에 시행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별표]

사업단 업무별 운영위원회 심의 및 보고사항

업무구분	세부 구분	내용	심의/보고
사업단운영	제규정	사업단 자체 규정 및 지침의 제정·변경에 관한 사항	심의
	사업단장	사업단장 선정 이후, 타 사업 참여사항	심의
		사업단 특성에 따른 사업단장 인건비 계상 관련 사항	심의
	연구협력	유관기관과의 연구협력에 관한 사항	보고
	운영비	사업단 운영비 집행에 관한 사항	보고
	결산	사업단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사업시행계획		사업단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안)(사업단 운영계획(안) 등) ※ 사업단 1차년도 연구계획서 수정·보완 시 제출하여야 함	심의
연구개발과제 평가	선정평가	선정평가 계획(안)	보고
		선정평가 결과 및 그에 따른 후속조치(이의신청 포함)	심의
	단계평가	단계평가 계획(안)	보고
		단계평가 결과 및 그에 따른 후속조치	보고
	최종평가	최종평가 계획(안)	보고
		최종평가 결과 및 그에 따른 후속조치	보고
연구개발과제 관리	협약변경	협약변경 처리 결과	보고
	성과	사업단 성과 홍보 전 해당 내용 보고	보고
	제재요청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3조제1항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사항 ※ 진흥원은 보고된 사안을 검토하여 타당할 경우 보건복지부에 보고하여 전문위원회 심의를 요청함	보고

※ 운영위원회 안건 상정 시 전문기관의 검토 의견서를 필수로 포함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 결과를 전문기관 및 사업단에 통보하여 함